

월간

재정포럼

1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7년 1월호 제127호

현안분석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 박노욱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시사점/ 원종학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 김우철

정책토론티포트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정책흐름 • 2007년 경제운용방향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혁의 필요성 · 최용선
현안분석	06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 · 박노옥
	26	일본의 저출산 · 고령화대책과 시사점 · 원종학
	42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 · 김우철
정책토론포트	62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87	2007년 中 수출입관세를 어떻게 달라지나 외
정책흐름	104	2007년 경제운용방향
	139	내년도 예산 국회 통과
	142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148	건물기준시가
재정통계	150	OECD 국가의 GDP,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이런의견 저런생각	157	2007 부동산 시장에 가는 기대 외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혁의 필요성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2007년은 우리가 1997년의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결코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 불과 10년 ’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와 경제에는 매우 큰 변화들이 급격하게 일어났다. 사실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초에 시작된 개발연대 이후로 놀라운 경제성장과 그에 수반된 사회의 변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의 최근 10년간의 변화가 이토록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그 변화가 어떤 노선을 따라가면서 큰 폭으로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노선이나 방향 자체의 급격한 선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는 외환위기 발발 직후 국민의 정부가 시동을 건 4대 부문의 개혁, 즉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구조조정으로 시작되어 외환위기의 초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어서 참여정부에서도 혁신의 기치 아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추진되어온 구조조정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추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 운용의 모든 측면에서 합리적 기준의 설

정과 존중을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 체계 및 권한의 분권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개발연대 당시 우리 사회의 성장의 원동력인 ‘ 하면 된다 ’로 요약되던 획일적 저돌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경제의 수준이 이전의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제사회나 세계경제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비싼 교훈을 얻은 것이 외환위기라고 생각하면, 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생각된다.

구조조정이 실제로 추진된 경과를 보면 다시 두 가지 특성이 눈에 띈다. 우선 구조조정의 초기에는 인원 및 조직의 조정 등 대체로 비교적 빨리 구현이 가능한 ‘ 하드웨어 ’ 적인 측면에 주력한 반면, 후반으로 올수록 ‘ 소프트웨어 ’ 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문화, 사고방식,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사회의 여러 부문 중에서 구조조정의 진척을 보면 금융과 기업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빠른 변모를 경험하였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겪은 다른 국가에서도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단순히 정부가 지난 2~3년간 추진하여온 재정 혁신의 첫 단계를 마무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를

.....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추진되어온 구조조정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추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 운용의 모든 측면에서 합리적 기준의 설정과 존중을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 체계 및 권한의 분권화를 들 수 있다.

.....

부여할 수 있다. 즉, 재정제도 혁신의 마무리 작업은 재정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그 동안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매우 힘든 구조조정을 통한 체제 재정비를 일단 마무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토록 힘든 과정을 완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축하면서 숨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대내외 여건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 침체, 양극화 현상,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의 활력 감퇴 및 장기적인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의 난제들은 우리에게 잠시의 실 틈도 없이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큰 변화를 일단락 지은 시점에서 잠시라도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되새겨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성과 분권화를 강조하는 최근의 사고방식에 맞추어, 여기서는 경제나 사회의 모든 부문에 대하여 논평하지 않고, 재정부문의 소프트웨어 개혁에 논의를 국한하여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재정부문에서도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이 있었으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혁신까지 일단 마무리한 것은 4대 재정혁신과 이를 반영한 국가재정법이다. 기존 예산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획예산처에서는 4대 재정혁신 과제로 국가재정 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하향식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

스템 등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4대 재정혁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예산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예산회계법을 대체하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단년도 예산 중심에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심으로 예산제도가 전면 개편됨으로써 국가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視界에서 재원을 배분하고, 통제와 투입위주의 재정운용방식이 자율과 성과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 중 중기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또는 하향식 예산) 제도의 실시를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품목별 분류체계로부터 프로그램 예산분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재원을 상호 전출입할 수 있는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칸막이식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가전체적인 시각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재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이다.

국가재정법에 반영된 4대 재정혁신 과제는 각 과제별로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입단계를 마쳤다고 보이며, 상호 연계된 하나의 혁신 패키지로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할 수 있다. 다만 이중 하향식 예산제도는 제도도입 초기단계에서 기존의 상향식 예산편성 방식과 아직도 병존하는 과도

.....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현주소를 평가하면, 전반적으로는 4대 재정혁신의 결과로 현재 우리 예산제도는 OECD 회원국 간의 비교에서도 상당히 잘 정비된 선진체계를 갖추었다고 사료된다.

.....

기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하향식 제도의 본래의 취지처럼 지출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아직은 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 개혁이 어느 정도 구현된 현 시점에서, 아직도 사전통제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일선 실무자의 판단과 재량권을 수용하되 사후적 통제와 책임을 묻는 문화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소프트웨어 개혁이 아직도 더 나아가 여지는 다른 곳에서도 보인다. OECD 등의 선진국의 예산제도와 비교하면 4대 재정혁신 이후에도 우리 예산제도가 아직도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보수적인 경제 가정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구비와 재정위험 요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재정위험 요인 관리의 필요성은 최근 예산당국에서도 인식하여 관련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재정위험의 판단에도 궁극적으로 일선 실무진의 주관적 전문성이 상당히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역시 재량권이 얼마나 존중되는가하는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보수적 경제가정의 제도화, 보다 넓게는 규칙이나 공식에 따른 사전 의사결정 등 재정준칙의 설정 및 준수는 우리 예산당국이나 국민이 수용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으며, 경제 및 재정 운용에 대한 우리 생각이 더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 이외에 OECD의 다른 회원국의 예

산제도 개혁에서 거론되는 요소로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들 수가 있다. 발생주의 회계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영연방의 3개 국가에서만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들 국가에서 도입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지금은 조심스러운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즉 뉴질랜드에서는 발생주의를 1991년에 도입한 이후 중장기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도움이 되나,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지출의 효율성 제고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또한 호주의 사례에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산정된 각종 지표를 해석함에 있어 기술적 난이도와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여지 때문에 오히려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이에 비추어 향후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함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현주소를 평가하면, 전반적으로는 4대 재정혁신의 결과로 현재 우리 예산제도는 OECD 회원국 간의 비교에서도 상당히 잘 정비된 선진체계를 갖추었다고 사료된다. 다만 추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재정위험 요인의 체계적 관리 및 재정준칙에 따른 거시·중기 재정운용의 확립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가치체계와 사고방식에 합리성과 전문화·분권화를 보다 더 수용하는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개혁이 필요하다. **KIP**

| 현안분석 |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
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일본의 저출산 · 고령화대책과 시사점**
원종학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
김우철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



박노옥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npark@kipf.re.kr)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발산업화 국가로서 집중을 통한 불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이러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다.

1. 들어가는 말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전하는 지역과 낙후되는 지역이 분리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지역발전의 불균 등이라는 보편적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각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발산업화 국가로서 집중을 통한 불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이러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현재 인구 7만명 이하인 시군을 대상으로 1980년과 2005년 사이의 인구 변화율을 보면 모든 시군에서 인구가 연평균 1% 이상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4% 가량의 인구가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부표 1〉 참조).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인구가 3,700여만명에서 4,700여만명으로 26.3%가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낙후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는 더욱 두드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감소뿐 아니라 소득격차의 크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군단위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가 없기는 하지만, 대리변수로 활용되고 있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기준으로 보면,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된 70개 시군의 비중이 2002년 현재 전국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의 2.5%에 그치고 있다. 이들 지역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8%이고 인구가 7.4%임을 감안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읍지역과 낙후지역의 개발은 행자부, 면단위 이하의 농촌지역은 농림부가 담당하고, 그 외 산촌지역은 산림청, 어촌지역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는 형식으로 공간적으로 구분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 부처들이 본격적으로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역 구분을 넘어서거나 사업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기존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과연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지역이 면단위나 마을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도로, 상하수도, 시설 건설 등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이 새로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신활력사업도 기존 사업의 정비 없이 추가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지금까지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분산되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행자부와 농림부에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기획예산처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통합을 어느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인가? 현재 낙후지역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처가 농림부와 행자부인데, 과연 어느 부처가 중심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부처 간의 정치적인 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사업의 통합에 진전이 부진한 주요 이유가 되어 왔다. 둘째, 각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데, 과연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인가? 사업이 실제 공간적으로 중복이 있는가? 각 부처가 유사하고 중복성이 강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기획과 조정 역량이 있다면,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가 되는가?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의 추세는 분권화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는가?

이러한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 이전에 낙후지역 개발사업들의 성과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

기존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지금까지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분산되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후지역 개발사업 중에서도 종합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11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서의 성과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마을이나 면 단위가 아니더라도 시군단위 수준에서의 소득수준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가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부재와 더불어 낙후 지역개발 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화도 필요하다. 사업의 목표가 기본적인 생활여건의 충족인지, 이차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성과 자체에 대한 평가는 향후 과제로 미루고, 사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낙후지역 개발사업 중에서도 종합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11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문제점의 파악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된 논점과 실제 현장조사와 시군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논의함으로써 보고를 마무리짓는다.

2. 낙후지역 개발사업 현황

낙후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분류하기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개발의 목적을 가진 사업만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종합개발의 성격을 가진 사업의 연혁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오지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소도읍육성사업 그리고 신활력사업이 있다. 오지, 도서, 그리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정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최근에 낙후지역 일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신활력사업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반면에 소도읍육성사업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의 연결고리로서의 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낙후지역 자체의 개발보다는 도시와 농촌의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정주기반 확충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행자부의 오지개발사업 대상이 아닌 일반 면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며,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것을 돕기 위한 사업이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최근에 시작된 사업으로 종합개발의 성격을 강조

하며 3~5개의 마을을 소권역으로 설정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 이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는 산촌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중이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시군이나 시도단위의 개발촉진지구를 선정하여 생활환경 및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연혁

소관	사업명	사업기간	연혁	추진근거
행정부	소도읍육성 지원사업	2001~2013	· 72년 도읍가꾸기사업으로 시작 · 90년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확대추진 · 01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 · 02년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오지종합 개발사업	1990~2009	· 88년 오지개발촉진법 제정 · 90년 오지종합개발10개년계획 확정 · 99년 법의 유효기간 연장(04년까지) · 04년 법의 유효기간 연장(09년까지)	오지개발촉진법
	도서종합 개발사업	1988~2007	· 86년 도서개발촉진법 제정 · 88년 도서종합개발 10개년 · 95년 도서개발촉진법 개정(한시법 철폐)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 지원사업	2003~2012	· 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 03년 접경지역 종합계획 확정	접경지역지원법
	신활력사업	2004~2007	· 04년 사업선정 및 계획수립 · 05년 심의·의결, 배분방안 확정 · 06년 사업추진자침 시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림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04~2017	· 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수립	농림어업인삶의질법
	전원마을 조성사업	1990~2013		농어촌정비법
	정주기반 확충사업	1990~2013	· 90년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 94년 농어촌정비법 제정	농어촌정비법
해수부	어촌종합 개발사업	1994~2013	· 94년 어촌종합개발장기계획수립 · 03년 어촌종합개발투자방향수립	어촌어항법
건교부	개발촉진지구	1995~2008	· 94년 지역균형중소기업법 제정	지역균형중소기업법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사업	1998~		임업산촌진흥법



각 사업의 국비지원
예산 현황의 증가율로 보면
소도읍사업과
산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가
크고, 신활력사업의 경우는
2006년에 소폭 감소했다.

각 사업의 국비지원 예산 현황은 <표 2>와 같다. 증가율로 보면 소도읍사업
과 산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가 크고, 신활력사업의 경우는 2006년에 소폭 감
소했다.

<표 2>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연도별 국비지원예산 및 예산증감률

(단위 : 억원, %)

소관	사업명	연도별 예산 및 증감률				
		2004	2005		2006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행자부	산림청 소도읍육성지원사업	300	437	45.7	617	41.2
	오지종합개발사업	824	1,100	33.5	1,083	-1.5
	도서종합개발사업	850	900	5.9	900	0.0
	접경지역지원사업	300	400	33.3	480	20.0
	신활력사업	-	2,000	-	1,900	-5.0
농림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60	428	167.5	434	1.4
	전원마을조성사업	244	277	13.5	260	-6.1
	정주기반확충사업	1,289	1,639	27.2	1,900	15.9
해수부	어촌종합개발사업	272	254	-6.6	309	21.7
건교부	개발촉진지구	1,485	1,602	7.9	1,753	9.4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사업	116	146	25.8	255	74.6

각 사업의 추진체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소도
읍육성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
촌정주기반확충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체계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중앙부처가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하면,
시장·군수가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
가 이를 승인·보완하여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중앙부처와 시장·군수에 의해 수행되며, 시·도지사는 주로
중앙부처와 시·군·구간의 연락 및 시·군·구 계획의 조정·승인 등 제한적
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표 3〉 사업별 추진체계 1

소관	해당주체	내 용	비 고
1단계	중앙부처	종합계획수립 개발범위선정 기본지침시달	-오지개발지구확정, 도서종합개발지구확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신청을 토대로 이루어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사업타당성조사는 한국농촌공사가 시행.
2단계	시장·군수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시·도에 제출	
3단계	시·도지사	시·군계획 심사후 보완·추천	
4단계	중앙부처	최종확정	-소도읍육성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행자부장관 간에 소도읍육성협약을 체결함.
5단계	시장·군수	사업집행	
6단계	중앙부처	결산 및 사업평가	

세부사업계획 및 집행에 시·도와 시·군이 병행적으로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앞의 유형과의 차이점이다.

다음으로 점경지역지원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의 경우의 사업추진체계는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세부사업계획 및 집행에 시·도와 시·군이 병행적으로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앞의 유형과의 차이점이다.

〈표 4〉 사업별 추진체계 2

소관	해당주체	내 용	비 고
1단계	중앙부처	종합계획수립 개발범위선정 기본지침시달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시·도지사의 요청을 토대로 이루어짐.
2단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3단계	중앙부처	최종확정	
4단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집행	-점경지역지원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만 사업 집행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소득기반사업의 경우는 어촌계에 의해 사업집행
5단계	중앙부처	결산 및 사업평가	



신활력사업의 특징은
자문위원회의 컨설팅 기능과
사업평가 기능이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도입된 신활력사업의 경우가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신활력사업의 경우는, 시군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자부 및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위원회에 평가의뢰를 하게 된다. 자문위원회의 사업별 지도와 컨설팅을 받은 계획을 공동추진단이 예산을 요구하여 배정받은 뒤, 시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사업평가를 자문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공동추진단에서 최종심의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신활력사업의 특징은 자문위원회의 컨설팅 기능과 사업평가 기능이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이 차별화된 부분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표 5> 사업별 추진체계 3

소관	해당주	내 용
1단계	중앙부처 (행자부)	종합계획수립 신활력지역 선정·고시 기본지침시달
2단계	시장·군수	시·도지사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행자부에 제출
3단계	중앙부처 (행자부, 균형위)	관계부처 의견수렴, 자문위원회로 평가의뢰
4단계	중앙부처 (자문위원회)	신청사업별 지도 및 컨설팅
5단계	시장·군수	사업집행,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사업추진실적 제출
6단계	중앙부처 (행자부, 균형위)	시·군의 추진실적 취합
7단계	중앙부처 (자문위원회)	추진실적 평가
8단계	중앙부처 (공동추진단)	평가결과 최종 심의의결

3.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운영 평가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운영체계 평가를 위해 기존의 문헌과 현장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논점을 정리하고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군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각 논점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기로 하자. 설문조사는 2006년 11월 말에 158개 시군구의 예산담당자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예산담당자에게는 전체 사업의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사업담당자에게는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동일한 시군에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로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동일한 공간에서 과연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진행되고 있다면 그로 인해 과연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게 된다.

일단 공간적으로 중복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낭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기획 능력이 있다면 중앙정부의 유사한 사업을 동시에 유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일 사업 예산으로 진행시키기 어려운 사업을 다수 부처로부터 지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지역이 다수 부처의 유사한 성격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낭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이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적 중복성과 그로 인한 낭비적 요소에 대한 확인을 해보자. 현장조사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간적 중복성은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종합개발 성격의 낙후지역 개발 사업으로 지목한 사업들이 특정 군에서 동시에 6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자¹⁾.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공간적으로 중복이 거의 없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다수가 동시에 진행되는 여덟 개 지역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시군단위에서는 다수의 사업이지만, 사업의 시행대상이 읍, 면, 마을이기 때문에 공간의 중복성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주요한 이유는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

동일한 지역이 다수 부처의 유사한 성격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낭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이다.

1) 실제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사업의 중복성을 제기하는 주요한 근거가 동일한 시군에서 다수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같은 시군 내에서의 하위 행정단위 간의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공간에 일방적으로 집중되어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공간적인 중복성 자체에 대한 논란의 근거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업의 내용이 지역주민의 민원성 또는 숙원성 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정 면이나 마을에 집중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한 지역에 계속해서 지원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의 불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와 반응이 기존의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시군단위에서는 다수의 사업이 진행되지만, 실제 사업단위인 하위 행정단위에서 공간적인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 외에도, 기존의 사업 중 일부는 공간적으로 부처별로 구분되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부처가 같은 공간에 지원을 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읍은 행자부, 일반 면은 농림부, 오지 및 도서 면은 행자부가 담당하고, 마을 중 농촌마을은 농림부, 어촌마을은 해수부, 산촌마을은 산림청이 담당하는 형태로 공간적으로 분담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도읍개발사업, 정주권확충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개발사업 사업 간에는 공간적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마을단위의 개발사업 간에도 공간적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은 미약하다. 물론 면단위 사업과 마을단위 사업이 같은 마을에서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 외에 신활력사업이나 개축지구사업의 경우는 사업대상의 구분 기준이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과 다르므로 공간적 중복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같은 시군 내에서의 하위 행정단위 간의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공간에 일방적으로 집중되어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공간적인 중복성 자체에 대한 논란의 근거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²⁾.

그러면, 공간적인 중복성이 거의 없으므로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없는가? 공간적 중복성 외에 내용상의 중복성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다양한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부처의 고유 기능이 분명히 분리되어, 동일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다른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용상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종합개발 성격의 사업은 사업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 생활여건 개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소득창출 사업까지 망라하는 사업이 포함되고 있다. 최근에 도입된 신활력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다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기존 사업과 다른 사업이 추진될지에 대해 의문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³⁾. 중복성 문제를 논한

2) 중복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추가적인 논거로서, 관점에 따라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공간적 중복이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송미령(2004) 「신활력지역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도시문제』, 10월호.

다면 내용적 중복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할지도 모른다. 각 부처가 다른 메뉴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상황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유사한 메뉴가 다른 부처에 의해 동시에 제시된다면, 각 부처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추진하는 행정비용이 클 것이다. 행정비용과 더불어 부처별 예산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민원성 사업만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주어지고 예산의 규모도 크다면 행정비용의 절감과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재량권이 지자체에 부여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주어지고 예산의 규모도 크다면 행정비용의 절감과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재량권이 지자체에 부여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사업의 중복성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개별사업 간에 중복성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분포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60.5%의 응답자(48.4% +12.1%)가 사업 간의 중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중복 자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7.2%였다. 이는 유사한 성격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자체 실무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사업 간의 연계효과에 대한 대답은 긍정의 비율이 높지만, 이 질문이 사업 담당자들에게 주어진 점을 감안할 때,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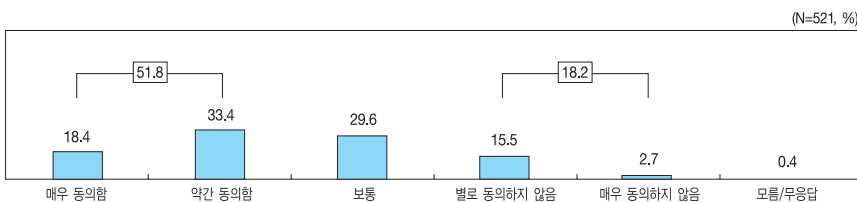
<표 6> 개별사업 간에 중복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소관	항목	
1	사업 간의 중복이 있지만, 사업 간의 연계효과가 커서 성과가 제고되고 있음	48.4
2	사업 간의 연계가 거의 없이 따로 추진되지만 중복의 문제는 없음	37.2
3	사업 간의 중복이 있고 연계가 없어 사업의 효과가 투자에 비해 반감되고 있음	12.1
4	기타 응답 및 무응답	2.4

실제 또 다른 질문으로 “중양 부처의 분산 다기화된 사업추진으로 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라는 항목에 대해 51.8%가 동의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중양 부처의 분산 다기화된 사업추진으로 사업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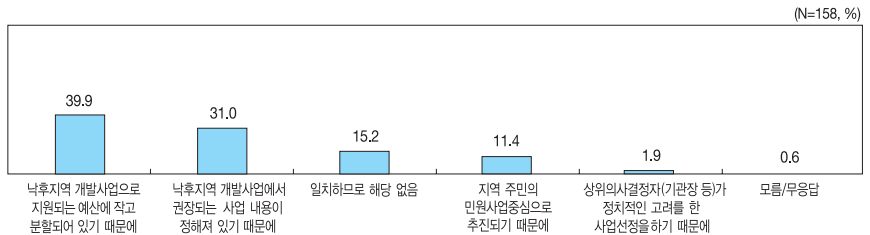




낙후지역개발사업이 다양한 부처에 의해 분산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선 실무자들이 느끼는 행정비용과 비효율성이 상당히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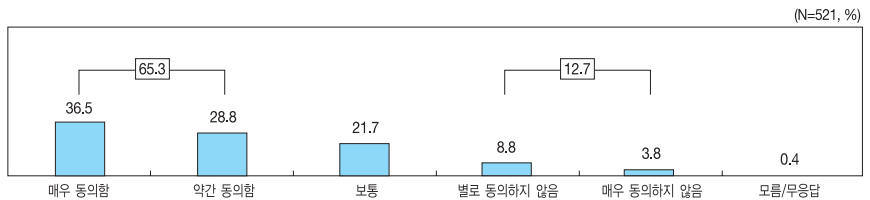
그리고 희망사업과 실제 추진사업이 불일치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가장 많은 이유가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작고 분할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림 2] 시행중인 사업과 희망 사업의 불일치 이유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분산되고 중복된 사업 추진체계가 비효율성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선 지자체 실무자들 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각 부처의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5.3%의 응답자가 찬성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질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찬성률로서, 낙후지역개발사업이 다양한 부처에 의해 분산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선 실무자들이 느끼는 행정비용과 비효율성이 상당히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다.

[그림 3] 각 부처 사업의 추진체계를 통합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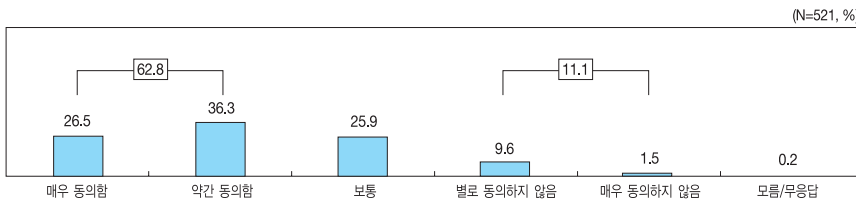
이러한 분산과 중복성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 실무자들이 겪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번거로움에 대한 불만 외에, 사업의 내용과 지원 조건에 신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로서 사업 지원기간이 일률적이라는 데 대해 55.7%의 실무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원금액이 일률적이라는 데 대해서도

54.1%가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추진단위를 읍 면 마을 등의 정해진 행정 구역이 아니라 유연하게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설정되도록 원하는 비율이 53.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의 유연성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지자체의 사업기획과 추진 능력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서, 62.8%의 응답자가 자문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들이 지역 형편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를 원하지만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준비는 되어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지자체에의 위임이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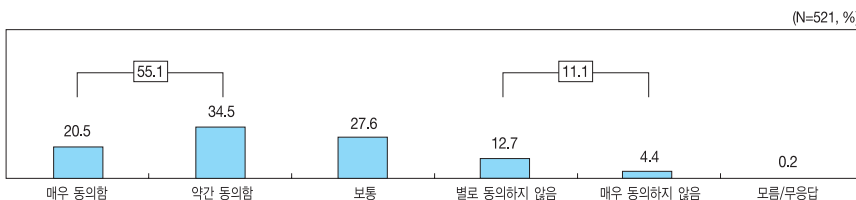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며, 문제는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보여진다.

[그림 4]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돕는 자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조금은 놀랍게도, 사업의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실무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55.1%의 응답자가 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하여 성과가 양호한 지역에 차등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것은 이미 성과에 근거한 차등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담당자의 찬성비율이 44.1%로 다른 사업 담당자보다 낮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활력사업의 경우도 찬성비율이 반대비율보다 높다. 그러므로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며, 문제는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보여진다.

[그림 5] 사업 성과에 따른 지원 차등화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는, 사업의 통합 필요성은 인정하고, 주무 부처가 어디로 정해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4.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자.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는, 사업의 통합 필요성은 인정하고, 주무 부처가 어디로 정해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낙후지역과 농촌지역 사업이 많은 행자부와 농림부 사이의 입장 차이 때문에 사업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행자부의 입장은 마을 단위 사업인 정주기반 확충,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산촌종합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농촌마을 대상의 사업은 전부 지방에 이양하고, 그 이외의 신활력, 오지,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농림부의 경우는 사업을 일반농촌 개발사업과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일반농촌 개발사업은 담당 부처가 진행하고,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장기적으로 한 부처에서 종합해서 관할하자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표 7〉 기존 개편안의 내용

소관	농특위, 농촌경제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일반농촌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도읍 → 현행 유지 • 정주기반 확충, 도서, 오지, 농촌마을종합개발 → 면 종합개발로 통합 • 농촌녹색체험, 전통테마마을, 산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 → 도농교류마을정비로 통합 • 어촌종합개발 →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도읍 → 현행 유지 • 정주기반 확충,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 산촌 종합개발 → 통합 • 농촌녹색체험, 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 → 체험마을로 통합
낙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활력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 낙후지역종합개발로 통합 • 접경지역지원 →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지, 도서 → 통합지침 • 신활력사업 → 현행 유지 • 접경지역지원 → 현행 유지 • 개발촉진지구 → 현행 유지 • 접경지역지원 → 현행 유지 ※ 장기적으로 낙후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통합

주: 농특위(이재준·윤원근 외, 2004), 농촌경제연구원(송미령·박주영, 2004), 지방행정연구원(김현호·한표환, 2005)

그러나 최근에 기획예산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통합 및 조정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기본 원칙은 행자부의 역할은 직접 사업 시행보다는 사업의 조정기구의 역할을 하고 직접 사업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이 담당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다. 그 결과 신활력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업은 농림부로 2007년부터 이관되고, 농림부는 기존의 사업과 이관된 사업을 적절한 방식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논의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업의 시행주체를 조정하고 통폐합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낙후지역 사업의 성격과 목표 자체를 명확히 하고 개편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성격과 목표와 관련하여서, 연구 대상사업인 11개의 종합개발사업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향이 있다. 지역에 최소 수준의 생활여건(minimum standard)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 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경제적 효과에 관계없이 낙후지역에 최소 수준의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면, 성과 달성 여부는 지역의 생활환경 수준이 기준치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비교적 산출에 가까운 성과지표로서 평가의 방법이나 사업관리방식도 명확하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과 추진절차도 비교적 단순하며 중앙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반면에 소득 수준의 향상까지도 바라보는 사업이라면, 평가의 기준이 소득 수준 향상이라는 결과지표이므로, 사업의 추진방식이나 사업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다. 최근에 시작된 신활력사업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이런 목적을 지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종합개발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출발한 신활력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소득창출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고 있으나, 그 이외 사업은 생활여건 조성과 SOC 사업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다. 생활여건 조성과 SOC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사업의 경우는, 지역의 최소 수준의 생활여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통합 또는 공간적으로 나누어 사업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소득창출 중심의 사업은 경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지역의 전략계획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통합 또는 공간적으로 나누어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 수준의 생활여건을 충족시키는 사업과 소득창출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는 방안의 장점은 지역의 사전 선정 및 사업의 사후 평가시의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한층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업의 시행주체를 조정하고 통폐합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낙후지역 사업의 성격과 목표 자체를 명확히 하고 개편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제 활용되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지역
선정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실제 성과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형태의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종합개발 성격 사업의 개편방향을 논의할 때,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은 종합개발 성격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이다. 일부 학자들은 메뉴 방식으로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한다⁴⁾. 그러나 메뉴 방식은 사업 개발에 대한 지침의 역할로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메뉴에 대응하여 개별 사업을 만들어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사업 추진의 유연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최소 생활여건의 제공이 목표가 아닌 소득창출이 목표인 사업인 경우는 종합개발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내용은 지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기존 사업의 개편방향은, 최소 생활여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낙후 지역 사업과 사회 경제적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개발사업을 분류하는 문제와 이러한 사업들을 각 부처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낙후지역 사업으로 추구할 기초적인 생활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에 미달한 지역을 대상으로 낙후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개발사업의 경우는 지역에 주도권을 부여하여 포괄 보조하는 방식의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지역 공간이 지나치게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농촌, 어촌, 산촌, 도서, 오지 그리고 읍면의 공간 구분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기존의 공간별 영역 분담이 지나치게 지역 공간을 분할시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사업 선정시 공간 설정의 유연성을 선호하는 응답이 다수였다. 공간의 지나친 세분화에 대한 대안으로는 외국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공간을 도시의 저개발(슬럼화 지역) 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두 부처(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와 Department for Agriculture)가 EZ/EC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도 낙후지역과 농촌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실제적 공간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나친 세분화는 피한다는 원칙하에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개편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사업추진체계의 강화이다. 종합적인 낙후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개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의 경우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해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많으며, 수립이 되어도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⁵⁾. 추상적인 계

4) 박 경(2006),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체계 및 개편 방향」, 농정 연구센터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5) 박 경(2006)

획이 아니라 실제 활용되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지역 선정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실제 성과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형태의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향식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의 기획 역량과 부패의 억제 장치가 필요하다. 실제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은, 포괄보조금을 선호하지만, 선결조건으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기획 및 사업 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고 포괄보조금의 활용에 정치적 영향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사업추진체계의 개편방향을 생각하면, 지방정부 내에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실제 일부 시군에서는 제한적으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고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외국과 같이 민간 중심의 사업단을 구성하거나 선출직을 포함한 이사회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사업을 사업의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부처의 기능을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상향식 사업 추진을 통해 지자체의 필요를 충족시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IPF**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사업을 사업의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부처의 기능을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김현호 · 한표환,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12.
- 박 경,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체계 및 개편방향』, 농정연구센터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2006. 6.
- 송미령, 「신활력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도시문제』, 2004. 10.
- 송미령 · 박주영,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이재준 · 윤원근 외, 『농어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4.

〈부표 1〉 시군구 인구감소 현황
(2005년 기준, 인구 7만명 이하 시군구 대상)

(단위: 명, %)

지역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인구감소율 (1980~2005년간)	1980~2005년간의 총인구감소율
경기								
가평	62,007	57,231	50,957	49,627	52,147	49,581	0.80	20.04
연천	67,054	64,863	61,287	52,116	49,483	41,561	1.52	38.02
강원								
고성	49,225	46,460	40,901	36,587	32,245	29,157	1.63	40.77
철원	64,375	59,599	52,591	49,691	48,008	43,548	1.29	32.35
홍천	101,006	90,133	77,799	67,892	67,210	66,837	1.35	33.83
영월	95,506	81,869	64,600	47,722	43,767	37,085	2.45	61.17
정선	133,843	128,696	88,377	53,833	46,080	41,129	2.77	69.27
화천	38,541	33,701	28,883	25,170	22,761	21,718	1.75	43.65
황성	71,483	60,517	48,489	42,865	40,990	38,821	1.83	45.69
평창	78,699	68,594	53,259	45,173	41,210	38,591	2.04	50.96
인제	47,766	44,200	36,603	32,828	30,807	30,469	1.45	36.21
양구	33,689	30,836	28,495	23,191	21,165	19,460	1.69	42.24
양양	42,220	36,487	35,643	28,199	29,130	29,617	1.19	29.85
충북								
보은	80,929	68,167	52,271	42,700	38,332	32,516	2.39	59.82
영동	95,073	84,759	76,818	62,002	60,488	49,563	1.91	47.87
진천	64,130	56,778	49,259	52,492	57,559	58,681	0.34	8.50
단양	72,905	62,961	49,634	40,088.3	6,094	30,528	2.33	58.13

〈부표 1〉의 계속

(단위: 명, %)

지역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인구감소를 (1980~2005년간)	1980~2005년간의 총인구감소율
충북								
옥천	91,289	83,491	70,130	61,474	57,586	51,922	1.72	43.12
괴산	117,642	108,731	93,071	42,924	38,336	32,304	2.90	72.54
충남								
금산	103,989	95,229	84,064	63,099	57,929	53,570	1.94	48.48
청양	72,697	61,410	53,750	40,441	38,601	31,316	2.28	56.92
서천	129,512	109,837	100,545	79,510	66,929	57,875	2.21	55.31
전북								
임실	83,973	68,478	48,338	37,201	30,799	25,757	2.77	69.33
장수	57,820	47,390	34,172	26,887	23,316	20,567	2.58	64.43
진안	78,485	63,232	44,755	32,105	30,276	23,992	2.78	69.43
무주	56,660	47,338	37,188	29,432	27,462	22,393	2.42	60.48
순창	73,635	60,562	45,466	35,337	30,515	26,331	2.57	64.24
고창	144,961	125,223	95,732	76,778	64,936	56,182	2.45	61.24
부안	131,013	114,291	102,823	72,448	64,691	55,333	2.31	57.77
전남								
보성	127,531	121,608	106,742	65,645	55,924	45,964	2.56	63.96
진흥	112,961	89,626	68,284	52,209	48,305	40,044	2.58	64.55
강진	91,811	79,120	70,592	49,151	44,055	36,648	2.40	60.08
무안	115,327	102,691	90,498	67,757	62,352	54,468	2.11	52.78
영광	119,600	114,097	86,483	68,641	65,529	60,462	1.98	49.45



〈부표 1〉의 계속

(단위:명, %)

지역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인구감소를 (1980~2005년간)	1980~2005년간의 총인구감소율
전남								
원도	126,762	111,205	85,751	64,764	61,517	51,325	2.38	59.51
진도	83,424	72,797	54,609	42,371	38,459	32,091	2.46	61.53
신안	130,979	115,025	102,409	62,472	46,315	38,463	2.83	70.63
구례	57,967	49,507	41,398	34,247	28,705	24,745	2.29	57.31
담양	91,141	84,773	73,855	61,041	54,597	43,574	2.09	52.19
곡성	75,101	63,826	49,707	41,026	38,042	29,742	2.42	60.40
함평	96,368	78,178	63,091	48,365	41,292	36,188	2.50	62.44
장성	94,869	81,631	61,838	52,179	49,703	42,029	2.23	55.70
영암	100,087	86,287	68,833	55,353	60,343	61,256	1.55	38.77
화순	107,405	91,998	86,697	63,816	72,162	67,948	1.47	36.74
경북								
영덕	91,206	77,990	65,415	51,292	44,172	40,547	2.22	55.54
예천	120,231	98,495	79,183	62,515	54,291	46,056	2.47	61.69
봉화	97,513	78,557	58,168	42,968	38,238	32,413	2.67	66.76
울진	90,723	87,767	69,990	64,444	60,011	51,279	1.74	43.48
고령	48,953	41,188	35,280	31,664	35,517	30,895	1.48	36.89
청도	85,533	72,791	60,515	50,311	48,229	39,558	2.15	53.75
성주	77,355	64,651	53,082	48,115	47,134	39,682	1.95	48.70

〈부표 1〉의 계속

(단위: 명, %)

지역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인구감소률 (1980~2005년간)	1980~2005년간의 총인구감소율
경북								
영양	52,733	43,463	31,170	23,797	20,735	17,648	2.66	66.53
의성	146,063	122,664	96,897	77,362	68,353	56,712	2.45	61.17
청송	64,520	56,225	43,756	35,061	31,302	26,630	2.35	58.73
군위	53,460	44,689	36,875	29,686	28,747	24,552	2.16	54.07
울릉	18,960	17,281	15,283	11,306	10,150	8,331	2.24	56.06
경남								
신창	72,889	62,976	50,179	43,449	38,190	32,451	2.22	55.48
의령	64,175	55,745	48,987	37,681	31,335	27,651	2.28	56.91
함안	80,353	71,346	59,809	60,343	58,755	54,526	1.29	32.14
창녕	115,836	99,116	84,175	71,281	65,369	57,618	2.01	50.26
합천	115,685	98,634	72,657	61,709	54,344	47,804	2.35	58.68
거창	102,355	91,553	77,580	70,096	65,963	60,622	1.63	40.77
고성	92,911	82,628	67,657	60,462	55,808	49,516	1.87	46.71
남해	103,123	89,932	71,500	60,192	53,144	46,791	2.19	54.63
함양	82,782	70,367	55,014	44,768	41,943	37,231	2.20	55.03
하동	97,618	83,301	65,870	55,398	51,583	45,282	2.14	53.61
총합계	5,746,377	5,014,441	4,114,729	3,273,109	3,019,565	2,655,136		53.79

자료: KOSISp인구총조사



일본의 저출산 · 고령화대책과 시사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jweon@kipf.re.kr)

1. 서론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수준이 2.1명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저출산 경향이
지속될 경우 머지 않은
장래에 인구는 감소하게 된다.

2006년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1.08명으로 합계출산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는 4.53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으로 빠른 속도로 낮아져 2005년에는 1.08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미국(2.04명), 프랑스(1.89명)의 2003년 기록보다 훨씬 낮은 수치며, 영국(1.79명), 일본(1.29명)의 2004년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수준이 2.1명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저출산 경향이 지속될 경우 머지 않은 장래에 인구는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통계청이 작성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례로 1990년대 이후 출생률이 증가한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경우도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

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우리의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한 발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구구조에 따른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1) 인구 및 인구증가율

[그림 1]은 1850~2050년까지의 일본 총인구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2000년까지는 실적치이며, 2005년 이후는 예상치이다¹⁾. 1850년 이후 일본의 총인구 및 총인구증가율을 살펴보면, 1850년 약 3,000만명이던 총인구는 2004년 1억 2,769만명으로 150여 년 동안 4배 정도 증가하였다. 인구가 어느 시기에 증가하였는가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00~1975년까지 인구증가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인구는 1900년부터 1975년의 75년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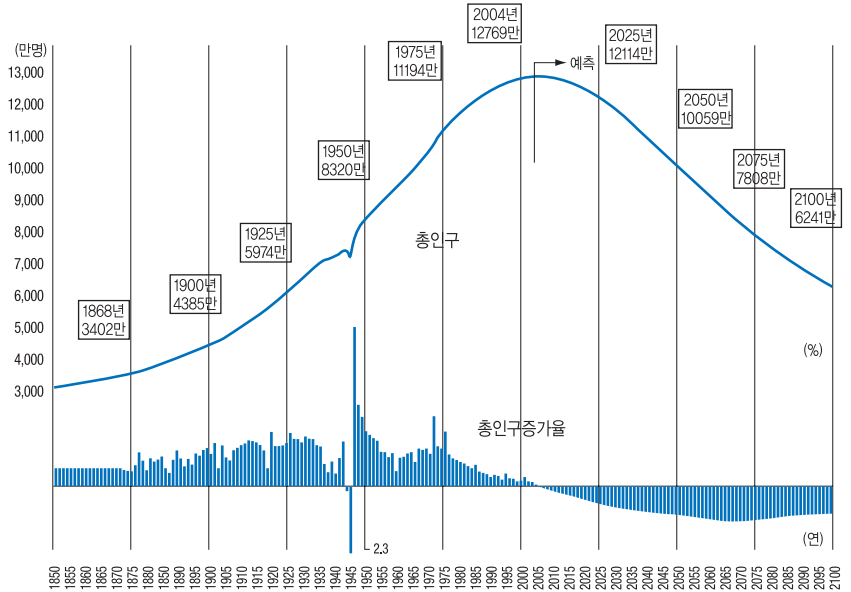
1975년 이후 인구증가율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5~2004년까지의 인구증가율은 평균하여 0.5% 정도로 낮아졌으며, 2006년도 이후는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어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³⁾. 현재의 출생률과 사망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일본의 인구는 202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변화를 출생률과 사망률로 나누어 살펴보기 위해 1950년에서 2006년까지의 출생률과 사망률 및 인구증가율을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출생률은 1973년의 19.4%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⁴⁾. 같은 기간 사망률이 거의 동일 수준을 유지하여 이 시기의 인구증가는 전적으로 출생률의 추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률은 1990년 이후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다.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2006년에는 인구증가율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현재의 출생률과 사망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일본의 인구는 202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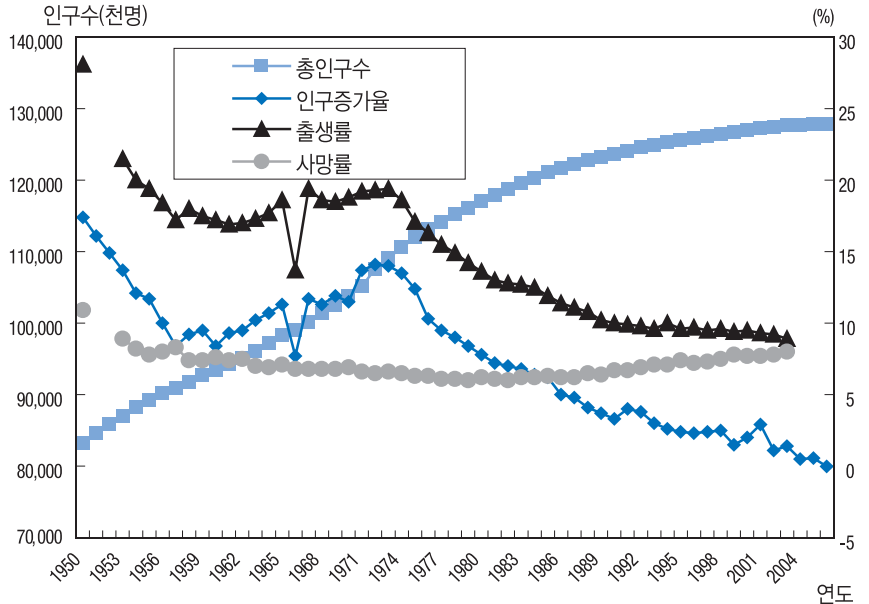
- 1) 일본의 장래인구에 대해서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5년마다 추계하여 공표하고 있다.
- 2) 1940년대 초반은 인구증가율이 1.0% 미만이나 이는 전쟁으로 인한 것으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3) 본문에 사용한 장래인구 추계는 2002년의 추계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02년의 추계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06년 10월 총무성의 인구조사결과 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인구 추계는 장래의 출생률에 대해 낙관적, 보통, 비관적으로 구분하여 3종류의 전망치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부 출생률에 대해 보통을 가정한 값(중위치를) 사용하였다.
- 4) 1966년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본인들의 병연 출산 기피를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 1] 일본 총인구의 추이



출처: 總務省, 『國勢調査』,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總研究所, 『日本の將來推計人口』(2002年中位推計), 須藤一紀(2005)에서 재인용

[그림 2] 총인구 수 및 인구증가율, 출생률,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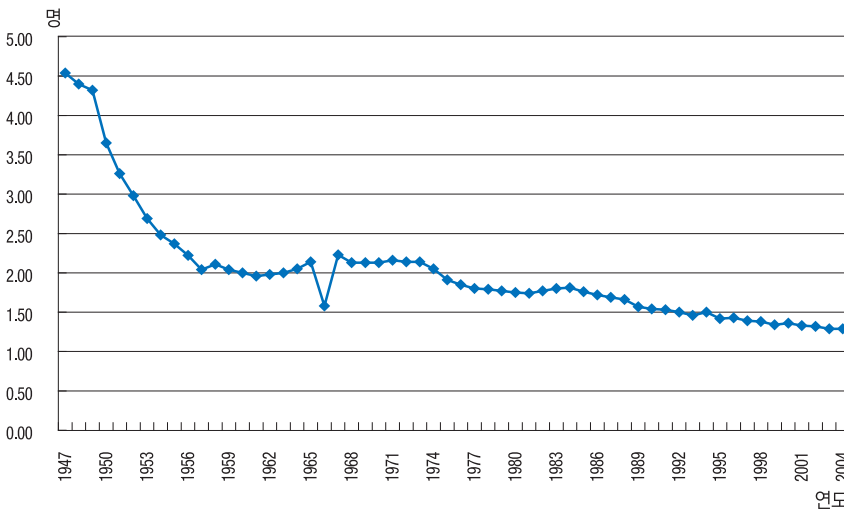
자료: 총무성, 『일본통계연감』, <http://www.stat.go.jp>

2) 출산을 저하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최근 한 사회의 출산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출산력 변천을 보기 위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이를 보다 자세히 보면, 1947년 4.5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50년 3.65명으로 4인 이하로 저하되었으며, 1952년에 2.98명으로 낮아졌다. 이후 1974년까지는 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합계출산율이 2.0명을 상회하였으나, 1975년 2.0명 이하로 감소한 이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합계출산율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1989년이다. 1989년의 합계출산율은 1.57명인데 이는 문화적 요인으로 출산을 기피하였던 1966년의 1.58명보다 낮은 수치로 일본에서는 「1.57 쇼크」로 부르고 있다.

1989년의 합계출산율은 1.57명인데 이는 문화적 요인으로 출산을 기피하였던 1966년의 1.58명보다 낮은 수치로 일본에서는 「1.57 쇼크」로 부르고 있다.

[그림 3] 합계출산율의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 『인구동태추계』

합계출산율은 정의상 연령별 유배우자율에 연령별 유배우자의 출생률을 곱한 것을 합한 것이므로 출산율 저하는 유배우자율과 유배우자의 출생률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일본에서 결혼 연령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1>

특히 1990년 이후 남성의 미혼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혼율 및 초혼연령의 증가가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은 일본 남성과 여성의 생애 미혼율과 초혼연령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여성의 미혼율을 보면 1950년에는 1.35%였으나, 2000년에는 5.82%로 5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초혼 연령도 23.6세에서 28.6세로 5세 연장되었다. 즉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이 증가하고 있다. 같은 시기 남성의 생애 미혼율 및 초혼 연령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 이후 남성의 미혼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혼율 및 초혼 연령의 증가가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표 1〉 연도별 · 성별 결혼연령과 생애미혼율

(단위 :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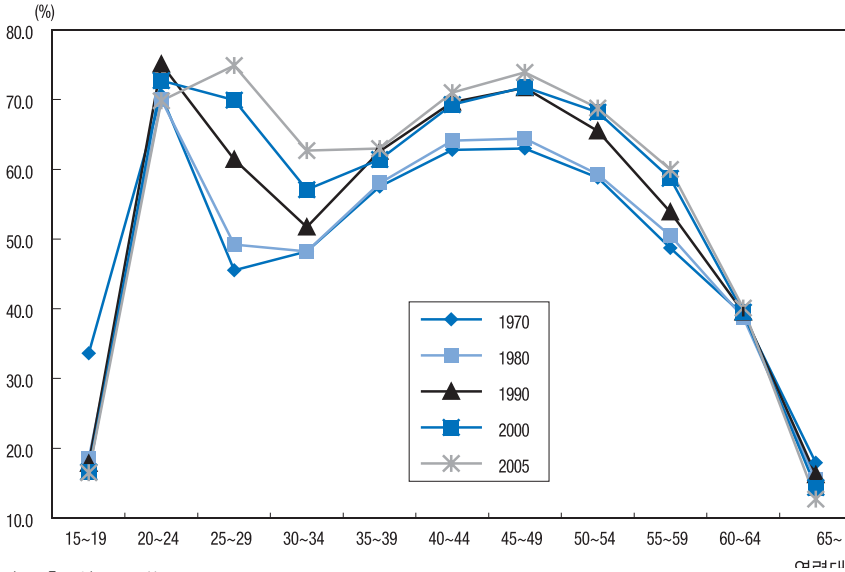
연도	남성		여성	
	생애미혼율	초혼연령	생애미혼율	초혼연령
1950	1.46	26.21	1.35	23.60
1960	1.26	27.44	1.87	24.96
1970	1.70	27.47	3.33	24.65
1975	2.12	27.65	4.32	24.48
1980	2.60	28.67	4.45	25.11
1985	3.89	29.57	4.32	25.84
1990	5.57	30.35	4.33	26.87
1995	8.99	30.68	5.10	27.69
2000	12.57	30.81	5.82	28.58

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4.

다음으로, 유배우자의 출생률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유배우자의 출생률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자녀 양육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때 양육비용에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의 증가에 더하여 자녀 양육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저해로 인한 양육비용이 실제로 더 큰 비용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970년부터 2005년 사이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이 및 근속연수별 임금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1970년부터 2005년 사이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본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자료: 총무성, <http://www.stat.go.jp>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2005년 현재도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걸쳐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하는 소위 M자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2005년 현재도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걸쳐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하는 소위 M자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일단 은퇴한 후 30대 후반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공형 임금체계가 일반적인 일본에서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 임금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임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별·근속연수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여성의 경력단절의
이유가 주로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경력단절로 인한 기회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연도별·근속연수별 평균임금

(단위: 천 엔)

연령	근속연수			
	1~2	5~9	10~14	15~19
20~24	223	223	-	-
25~29	237	227	-	-
30~34	238	303	318	-
35~39	231	281	361	375
40~44	215	266	318	397

자료: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http://www.dbtk.mhlw.go.jp/toukei/kouhyo/indexkr_4_8_1.html

30대 이후에 근속연수가 1~2년인 경우를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후 다시 복귀한 경우로, 근속연수가 10~14년 혹은 15~19년인 경우를 경력의 중단 없이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경력의 단절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임금을 비교하면, 30~34인 경우는 약 75%(=230/318)이며, 35~39세는 약 62%(=231/375), 40~44세 연령층에서는 약 54%(=215/397) 정도로 그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여성의 경력단절의 이유가 주로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경력단절로 인한 기회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비용의 크기는 출산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연공임금제의 수정,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 출산을 하여도 직장에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고용체계 구축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캐리어 형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 정부의 정책적 방안으로는 보육 서비스의 충실이 거론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안을 살펴보면⁵⁾, 우선 1989년의 「1.57 쇼크」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육아휴업제도의 도입, 보육서비스의 충실 등 일과 자녀 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도 계속하여 출산율이 저하하자, 2003년에는 출산율 저하 방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少子化社會對策基本法」 및 「次世代育成支援對策推進法」을 각각 의원 발의와 정부 발의로 제정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301인 이상의 전국의 모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자녀양육과 일과의

5) 阿藤 誠(2006), pp. 31-32

양립 방안에 대해 목표달성치를 포함한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할 것을 법률로 의무화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이 출생률 향상이라는 명시적 의도를 지닌 가족정책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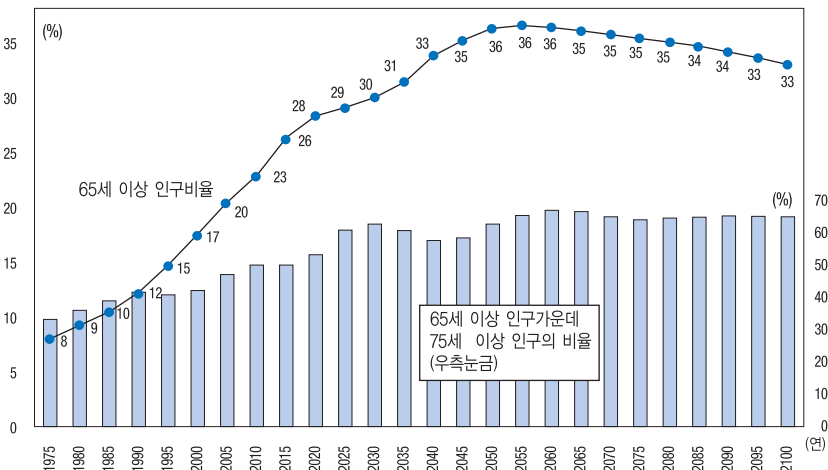
또한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2004년 6월 ‘저출산의 흐름을 바꾼다’를 표어로 3개의 시점에서 4대 중요과제 및 28개 구체적 행동을 제시한 ‘少子化社會對策大綱’이 각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시 계획으로 ‘아이와 자녀양육 응원 플랜’이 책정되었다⁶⁾.

3)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재 일본에서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라기보다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고령화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고령화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고령화는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205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앞으로 약 50년간은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는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205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앞으로 약 50년간은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5]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추이



자료: 총무성, <http://www.stat.go.jp>

6)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内閣府(2005)를 참조하기 바람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우선 출산율의 저하를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고령자의 평균수명이 급속히 증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고령자 비율의 증가는 연금이나 건강보험제도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재정의 압박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우선 출산율의 저하를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출산율 저하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고령자의 평균수명이 급속히 증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우선, 평균수명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표 3>에 남녀별 평균수명의 추이를 제시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35년 이전의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녀 모두 50세 미만이었다. 이후 1940년대 후반 이후 평균수명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50~52년 조사에서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60세를 넘었으며 남성의 평균수명도 거의 60세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여성은 1960년에 70세를 넘고, 1985년에 80세를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여성에 비해 평균수명은 낮으나 남성의 경우도 1955년에 60세를 초과하였으며, 1975년에는 70세를 초과하여 2005년에는 78.11세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평균수명이 증가한 데는 유아사망률, 소년기 사망률, 청년층 사망률이 저하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평균수명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성과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⁷⁾.

<표 3> 일본의 평균수명

(단위 : 세)

연도	평균수명		연도	평균수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21~25	42.06	43.20	1985	74.78	80.48
1935	46.92	49.63	1990	75.92	81.90
1947	50.06	53.96	1995	76.38	82.85
1950~52	59.57	62.97	2000	77.64	84.62
1955	63.60	67.75	2001	78.08	85.18
1960	65.32	70.19	2002	77.76	84.73
1965	67.74	72.92	2003	77.88	84.89
1970	69.31	74.66	2004	77.99	85.05
1975	71.73	76.89	2005	78.11	85.20
1980	73.35	78.76			

출처: 후생노동성, 『생명표』

7) 단 경제성장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소득성장보다는 의료와 공중위생 분야에서의 공공적 제도 정비의 공헌에 의한 바가 크다.

〈표4〉 연령별 사망률 추이

연령	1920	1930	1940	1950	1970	1980	1990	2000	2004
남자									
총수	25.7	18.6	17.4	11.5	7.7	6.8	7.4	8.6	9.0
0~4	72.0	47.1	37.4	20.9	4.3	2.2	1.4	1.0	0.8
5~9	6.2	4.1	3.9	2.2	0.6	0.3	0.2	0.1	0.1
10~14	3.9	2.7	2.7	1.2	0.4	0.2	0.2	0.1	0.1
15~19	10.7	7.3	8.2	2.5	1.1	0.7	0.6	0.5	0.4
20~24	13.8	9.2	12.2	4.9	1.3	0.9	0.8	0.7	0.6
...									
60~64	47.4	43.4	43.0	31.7	21.8	15.1	13.2	11.3	10.3
65~69	70.2	61.9	62.6	51.7	37.5	25.3	19.5	18.2	16.1
70~74	103.0	96.4	96.1	78.6	60.9	43.6	33.3	28.8	26.5
75~79	151.7	138.3	139.2	114.6	98.2	75.5	58.0	45.8	43.6
80~84	217.8	203.2	208.2	178.2	151.3	122.6	100.2	80.8	71.7
85~89		280.6		259.2	232.6	190.4	165.5	132.1	124.4
90~94	241.0	364.9		407.6	283.1	284.6	252.1	207.3	
95~99		344.7	243.7	421.7	460.0	399.6	366.6	305.8	209.8
100세 이상		774.2		640.3	585.1	574.9	566.8	482.1	
여자									
총수	25.1	17.7	15.6	10.4	6.2	5.6	6.0	6.8	7.3
0~4	66.8	42.6	33.8	19.2	3.2	1.7	1.1	0.8	0.7
5~9	7.2	4.4	4.0	2.0	0.4	0.2	0.1	0.1	0.1
10~14	5.9	3.8	3.4	1.2	0.3	0.1	0.1	0.1	0.1
15~19	13.9	8.7	8.4	2.5	0.4	0.3	0.2	0.2	0.2
20~24	17.0	10.1	9.2	4.4	0.7	0.4	0.3	0.3	0.3
...									
60~64	33.5	28.1	27.3	22.1	12.2	7.8	5.7	4.7	4.2
65~69	50.4	42.4	41.5	35.7	21.0	13.4	9.4	7.5	6.7
70~74	78.7	69.6	70.0	56.3	37.5	24.8	16.9	12.5	11.2
75~79	118.5	106.5	108.7	87.3	67.3	47.4	32.0	22.7	19.9
80~84	184.3	160.7	173.6	143.1	115.5	87.7	62.1	43.4	38.1
85~89		237.0		217.7	192.6	151.1	117.6	82.0	75.4
90~94	192.4	320.2		332.2	268.7	244.6	197.5	143.0	152.1
95~99		212.0	200.1	305.3	422.7	381.4	308.8	231.6	
100세 이상		837.9		541.8	677.9	491.3	468.7	373.8	



고령자의 수명 연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년퇴임 후 예전보다 10여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추계에 의하면, 평균수명 신장에 유아사망률이 미치는 기여도는 1965년 이전에는 40% 이상이었으나, 1970년 이후는 65세 이상의 사망률 저하가 평균수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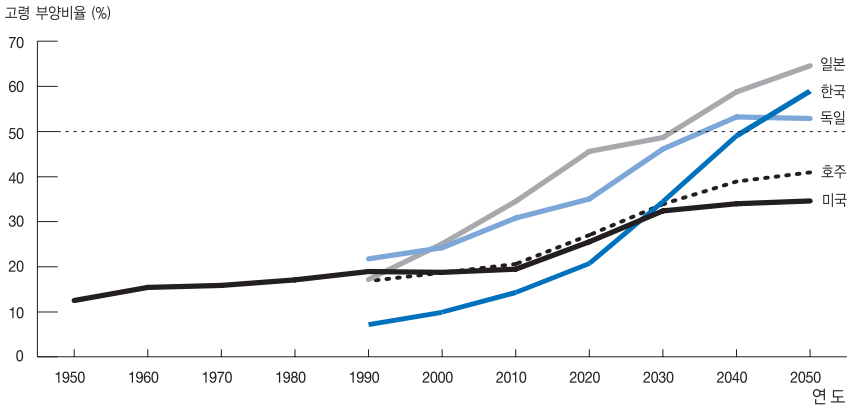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률이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저출산, 즉 영유아를 포함한 소년기 인구의 감소는 그 원인을 따지지 않는다면 인류 역사상 몇 번이고 있었던 현상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사망률 저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라는 점에서 「혁명적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고령자의 평균수명 연장은 어떤 척도로 측정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평균수명을 나타낸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경우 1950년대를 경계로 갑자기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고령자의 수명 연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년퇴임 후 예전보다 10여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늘어난 12~13년을 인생의 어떠한 단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제도 설계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년연장이나 연금제도 등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3.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정책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양부담, 그 가운데서도 고령인구의 부담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출산율과 사망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령자 부양 비율은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6).

[그림 6] 5개국의 노령인구 부양비율 추이 비교(1950~2050년)



주: 고령 부양비율은 경제활동 연령 인구(16~64세) 대비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나, 그림에서는 경제활동 연령 인구에 15세 인구도 포함하여 산정

자료: 미국 Census Bureau의 International Database에서 추출하여 산정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에 많은 부담을 지을 뿐 아니라, 1인당 소비수준도 장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에 많은 부담을 지을 뿐 아니라, 1인당 소비수준도 장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를 사회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연금제도에 대한 개선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1) 연금제도 개선

현행 일본 연금제도는 현역세대가 고령세대를 부양하는 형태인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현행 연금제도의 기본 골격은 1959년의 연금개혁 당시 형성된 것이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고도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부담에 비해 매우 유리한 연금제도로 되어 있다.

실제로 194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일본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10% 정도였으며, 인구증가율은 1~2%였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에서 인구증가율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30년 가까이 8%씩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연금제도가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동시에 출산율이 감소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하였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으로써 세대 간 불공평이라는 형태로 현역세대를 압박하고 있다. 현역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강요

현역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는 연금제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연금 수급액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하는 연금제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연금 수급액을 억제할 수 밖에 없다.

경제성장률 및 인구감소는 연금수급액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해 이에 대해 1인당 소득 증가율과 인구증가율에 따른 가능한 연금수급액을 시산한 大和종합연구소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산을 위해 연금제도를 간략화하여 20세에서 60세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는 중간 연령인 40세 (현시점이라고 가정)에 일괄납부하고, 60세에서 80세 동안 수급하는 연금을 70세 (30년 후)에 일괄하여 수급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보험료율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현역세대가 지불하는 금액 전액이 고령세대의 연금으로 지불된다고 하자.

이 경우 70세에 수급하는 보험금은 40세 (현재)에 자신이 지불하는 보험료가 아니라, 30년 후의 현역세대의 소득(보험료)를 반영한 것이 된다. <표 5>는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일본의 고도성장기와 같이 1인당 소득증가율이 8%, 인구증가율이 1%라고 한다면, 소득증가와 인구증가가 합해져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13배 이상을 보험금으로 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하고, 1인당 소득증가율이 0%라면 30년 후의 보험금 수급액이 현재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70% 정도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표 5> 소득과 인구증가율에 따른 타당한 연금수급액

(단위 : 배)

1인당 소득증가율	급부 대 부담비율, 40세 일괄 지불, 70세 일괄수급 가정		
	인구불변	인구 연 1% 증가	인구 연 1% 감소
0%	1.00	1.35	0.74
1%	1.35	1.81	1.00
2%	1.81	2.43	1.35
3%	2.43	3.24	1.81
4%	3.24	5.74	2.43
6%	5.74	7.61	4.32
8%	10.06	13.27	7.61

주: 大和総合研究所 시산, 일본경제신문 (2005. 3. 3)에서 인용

<표 5>의 결과는 연금수급액에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예이다. 현행 일본의 공적연금제도하에서의 수

급비는 대략 2.4 정도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⁸⁾. 앞으로 일본의 1인당 소득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지급액 대비 수급액의 비중이 유지된다고 하면 현역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 되며, 이러한 연금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증가, 연금지불액의 증가 및 연금수급액의 감액을 시도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증가, 연금지불액의 증가 및 연금수급액의 감액을 시도하고 있다.

2) 고령자의 노동공급 촉진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준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유려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며 시행 중인 방안으로는 1)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으로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것과 2) 중·고연령자의 재취업을 원조·촉진 3) 취업의욕이나 체력의 다양화에 따른 취업기회의 확보 등이 있다⁹⁾.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 고령자에 대한 노동 수요라 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체력적 저하로 인한 생산성 감퇴는 어쩔 수 없으므로 고령자에 대한 노동 수요를 유지 내지는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임금이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 고령자 노동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과 노동공급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면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므로 고령자의 취업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4. 요약 및 시사점

1970년대 인구과잉을 걱정하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인구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는 1) 낮은

8) 俊野雅司(2004)

9) 일본의 고령자 취업정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종학(2005)를 참조하기 바람.

10) 中村·大鐸(2001)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추진하고 있다.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가 야기할 생산인구 감소 2)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고령화와 이로 인한 부양부담의 증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인구감소 자체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연소 연령층 인구 감소의 경우, 그 원인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에도 전쟁, 기근, 역병 등으로 이미 여러 번 경험하였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의 낮은 출산율은 출산제한이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연소 인구 감소와는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연소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 외에는 없다. 일본정부가 1989년 이후의 간접적 출산지원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저출산 경향을 바꾸기 위해 2003년 이후 저출산대책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왜 자발적으로 출산을 억제하는가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 여성의 육아 및 가사노동의 기회비용 증대와 같은 경제적 요인은 중요한 설명 요인에 틀림이 없으나, 그 설명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인구학자들의 판단이다¹¹⁾.

한편 고령인구의 평균연령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지금까지 직면한 적이 없는 새로운 현상이며, 향후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부양부담의 증가가 개인의 경제적 후생을 가장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으나, 일본의 정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세대간 불공평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병목(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수익비는 1.34~1.96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인구가 매년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연금제도의 수익비는 고령세대를 부양하는 현역세대에 많은 부담을 지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년연장, 고령자 재취업 등을 포함한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태백'을 지나 '이구백'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청년층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청년 노동력과 고령 노동력의 대체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11) 齋藤修(2004)

고령층의 고용촉진이 바로 청년층의 실업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층 실업이 경기에 따라 변동이 큰 단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고령층 고용 촉진은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매우 큰 구조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청년층 실업이 고령층의 고용촉진 정책을 가로막는 큰 요인은 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청년 노동력과 고령 노동력의 대체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령층의 고용촉진이 바로 청년층의 실업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원종학, 「고령화에 따른 일본기업의 경영과제와 대응」, 이수희 외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II』, 한국경제연구원, 2005
- 전병목,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 『재정포럼』 7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06
- 阿藤 誠, 「國際比較からみた日本の少子化と少子化対策」, 高山憲之・齋藤修 編 『少子化の經濟分析』, 東洋經濟新報社, 2006
- 大鋸・中村, 「公的年金改正及び雇用促進策が高齡者の就業行動に?える景影響」 『高齡者就業實態調査』による實證分析, 『經濟と經濟學』, 第94號 東京都立大學, 2001
-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2004
- 厚生勞動省, 『簡易生命表』, 2005
- 齋藤修, 「人口變動と經濟」, 『やさしい經濟學』, 日本經濟新聞, 2004.5.4~5.14
- 須藤一紀, 「よくわかる日本の人口」, 『第一生命經濟研究レポート』 2005.6~2006.5
- 俊野雅司, 「日本の公的年金制度の構造と課題」, 大和總合研究所, 2004
- 內閣府, 『平成17年少子化社會白書』, 2006
- Weil, David N., “Why Has Fertility Fallen Below Replacement in Industrial Nations, and Will It Last? –Population Growth, Dependency, and Consump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999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wkim@kipf.re.kr)

경제적 필요에 따라 세출이 먼저 변화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입의 변화가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조건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재정의 안정성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을 결정하는 재정운영방식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으로 실시된 재정 안정화 정책에서는 양입제출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세출을 엄격히 관리하였다. 세출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재정수요 대신 예상 세입액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고려하는 재정운영방식은 재정의 불안정성이 만성적인 문제로 대두될 때 흔히 사용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경직적인 제도는 경제가 불황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세출을 줄여든 세입 수준 이하로 고정시켜 불황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경기 조절의 관점에서 적절한 재정운영방식은 호황기에 늘어난 재정수입을 정부가 재정수지 흑자 형태로 저축하고 이를 불황기의 지출수요 증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호황기 세입 확대에 의한 재정 여력을 특별한 재정수요의 변화가 없음에도 당해 또는 다음 해에 정부지출로 모두 사용하게 되면, 재정은 그만큼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세입의 변화에 따라 세출을 종속적으로 변동시키는 일방적인 결정 방식은 경기 대응의 측면에서나 재정 안정화의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세입 규모에 의존하여 세출을 결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필요한 정부지출 수준에 맞추어 세입의 규모를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정부지출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증세의 가능성이 논의되었던 것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필요에 따라 세출이 먼저 변화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입의 변화가 후행적

로 나타나는 현상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조건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재정운영방식이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변화 사이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즉, 세입과 세출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어느 일방이 다른 하나를 선도적으로 변화시키는데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재정 안정성과 관련된 재정운영방식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영방식과 관련한 중요 주제로 금기의 세입과 세출이 전기의 재정수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의 문제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만약 정부가 전기에 발생한 재정수지 적자에 대응하여 다음 기의 세입을 증가시키거나 세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반응을 나타낸다면, 정부는 일반적인 '동적 예산 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조건을 충족하는 재정운영 행태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입과 세출의 동적 관계에 관하여는 세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첫째, 동시화 가설

둘째, 세입-세출 가설

셋째, 세출-세입 가설이

그것이다.

1. 기본 가설 및 기존연구

세입과 세출의 동적 관계(inter-temporal relation)에 관하여는 세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첫째로, Musgrave(1966)와 Melzer and Richard(1981) 등에 의해 주장된 동시화 가설(fiscal-synchronization hypothesis)은 세입과 세출이 동시적으로(simultaneously) 결정된다는 견해이다. 경제주체들이 균형예산의 한계적 변화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투표로써 세출과 세입을 동시에 결정하는 이상적인 경우로, 이 때의 세출 변화는 동시적인 세입 변화에 의해 충당될 수 있으므로 재정 안정성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둘째로, Friedamn(1978)과 Buchanan and Wagner(1977, 1978)의 세입-세출 가설(tax-spend hypothesis)은 세입으로부터 세출로의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세입의 변화가 세출의 변화를 선도한다는 주장은, 제도적인 이유로 인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정적자가 허용되지 않아서 세입이 세출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정책의 주요 고려가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편익에 기초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금기의 세입 증가가 다음 기의 세출 증가로 연결되는 경향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워 재정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로, 세출-세입 가설(spend-tax hypothesis)에서는 세출로부터 세입으로의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Peacock and Wiseman(1961, 1979)은 위기 상황시에 초래된 정부지출의 증가가 정부수입에



세출-세입 가설에서는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입의
증가에 의해 보전되므로,
재정 적자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고 재정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한 제약을 순차적으로 완화하게 됨에 따라, 세출이 주도적으로 먼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세입이 적응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초기에 세출이 세입 이상으로 증가하게 만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다고 할 때, 이는 점차로 정부의 적절한 크기에 대한 경제주체의 태도 자체를 바꾸게 하여 일시적인 세출의 증가가 항구적인 세입의 증가를 야기하게 된다. 세출-세입 가설에서는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입의 증가에 의해 보전되므로, 재정 적자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고 재정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초기의 선구적인 실증연구로는 von Furstenberg et al.(1986)을 들 수 있다. von Furstenberg et al.(1986)은 VAR 모형을 이용하여 세입과 세출의 충격반응 함수를 도출하여 세입과 세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Miller and Russek(1990) 이후에는 VECM에 기초한 Granger Causality Test를 이용하여 세입과 세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까지 다양한 자료와 분석방법들이 사용되어 실증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에 관한 기존연구

연구자	von Furstenberg et al. (1986)	Bohn (1991)	Payne (1998)	Kollias and Makrydakis (2000)	Krishnakumar, Martin, and Soguel (2004)
DATA	미국의 분기별 재정자료(1954-1982)	미국의 재정자료	미국 주정부 재정자료 (1942-1992)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재정자료	74개의 스위스 지방 정부 재정자료
모델	VAR	단순 VAR	VECM	VAR, VECM	VECM
주요결론	세출-세입가설성립	세입-세출가설성립	24개주(세입-세출가설), 8개주(세출-세입가설), 11개주(동시화가설), 3개주(인과관계없음)	그리스, 아일랜드(동시화가설), 스페인 (세입-세출가설), 포르투갈(인과관계 없음)	세입-세출가설 지지

2. 자료와 사전 분석

가. 기본 시계열 특성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는 통합재정수지상의 연간자

료를 이용한다. 첫 번째 자료(data set I)는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수정 없이 사용한 것이며, 관측 기간은 1970년부터 2004년까지이다.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는 통합재정수지상의 연간자료를 이용한다.

자료 I

세입 1 (R0) = 통합재정수지상 세입

세출 1 (X0) = 통합재정수지상 세출 및 순융자

두 번째 자료(data set II)는 첫 번째 자료에서 이 전지출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합재정 자료의 기능적 분류의 '사회보장 및 복지'로부터 '사회보장기여금+공무원연기금기여금' 과 '사회보장지출' 에 나타난 자료를 각각 세입 및 세출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의 제약으로 분석 기간은 1977년부터 2003년까지로 줄어든다.

자료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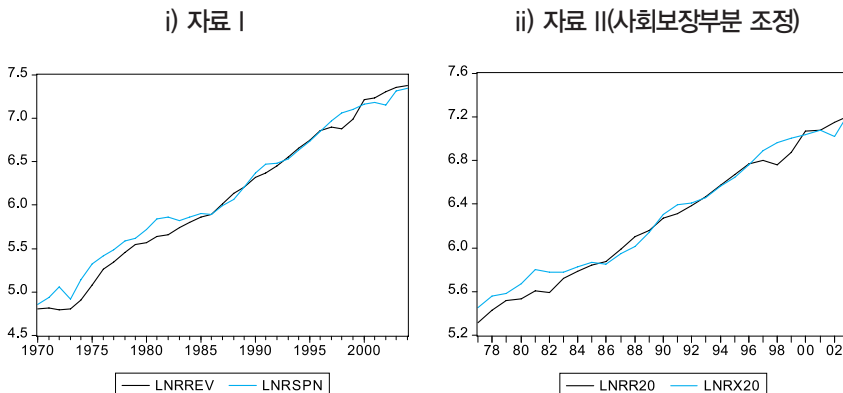
세입 2 (R20) = 세입 1 - (사회보장기여금+공무원연기금기여금)

세출 2 (X20) = 세출 1 - 사회보장지출

이밖에 이자수입 및 이자지급 항목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¹⁾.

아래의 그림은 각 재정 자료의 시간에 따른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 1] 세입·세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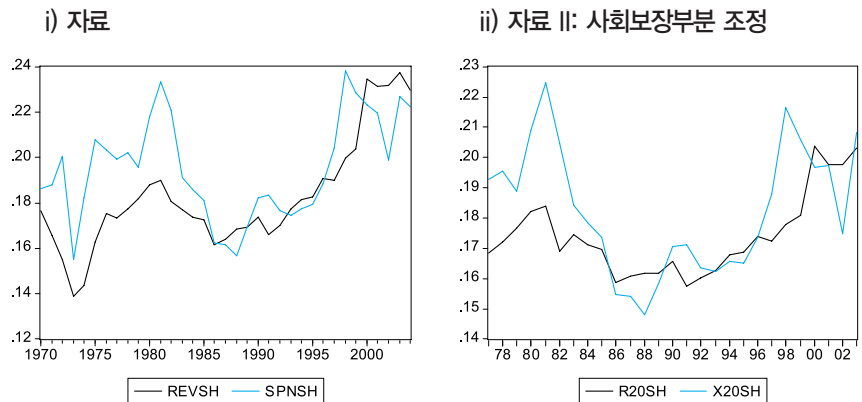
1) 실제 추정된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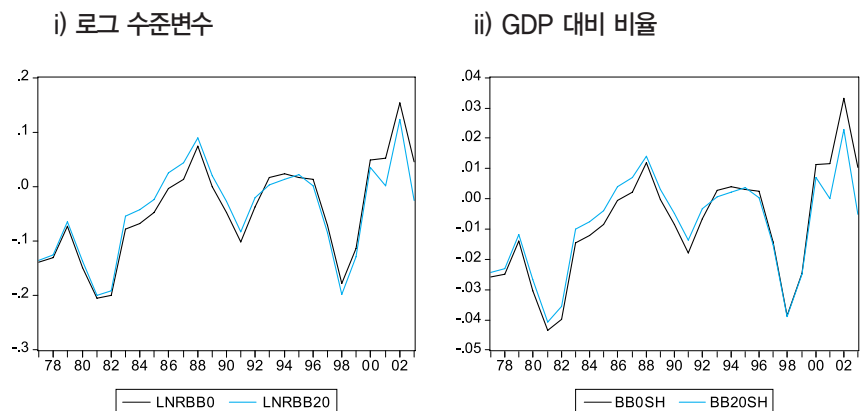
재정운영방식의 재정 안정화 기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전기의 재정수지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에서 각 재정 자료의 수준변수는 시간추세와 확률적 추세를 모두 가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만일, 해당 자료가 확률적 추세를 갖는 I(1) 계열이라면, 이후의 인과관계 분석은 각 자료의 1계 차분 값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의 [그림 2]는 동일한 재정 자료를 수준변수의 로그값 대신에 GDP 대비 비율을 취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정운영방식의 재정안정화 기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전기의 재정수지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림 3]은 재정수지의 움직임을 로그수준변수 값의 차이와 GDP 대비 비율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GDP 대비 비율



[그림 V-3] 재정수지차: 무조정



[그림 2]는 [그림 1]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재정 자료가 모두 확률적 추세를 가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시간추세(deterministic time trend)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재정수지 차는 로그 수준변수의 차이나 GDP 대비 비율의 경우 모두 정태적 또는 안정적(stationary) 시계열 자료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다음 절에서는 이상에서 제기된 시계열 특성(확률적 추세 유무)을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다. 단위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 간의 장기적 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적분 검정도 병행한다.

양자 간에 장기적 관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공적분 검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

세입과 세출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계량모형을 설정할 때, 만일 해당 자료에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자 간의 단기동학관계(short-term dynamic relationship)는 수준변수로 구성된 단순 벡터자귀회귀모형(VAR)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자료가 단위근을 갖는 경우에는, 양자 간에 장기적 관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공적분 검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세입과 세출 사이에 공적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자간의 단기동학관계는 이들의 차분 자료와 오차수정항으로 구성된 VECM(vector error-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차분 자료로만 구성된 단순 벡터자귀회귀모형(VAR)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입과 세출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이전 연구를 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 해당 자료가 확률적 추세를 갖는 불안정한 시계열 자료(nonstationary time series process)임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두 재정변수가 유사한 특성을 지닐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을 두 가지 단위근 검정 방법(ADF와 Phillip-Peron Test)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 자료 모두 확률적 추세를 갖는 불안정한 자료로 나타나, 양자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Jonhansen(1991, 1995)과 Phillips and Ouliaris(1990)의 공적분 검정방법을 적용한 결과,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조정을 취하지 않는 원자료(자료 I)의 경우 실질수준으로 환산한 세입·세출 자료에 대해서 Jonhansen 검정과 Phillips and Ouliaris 검정 모두 양자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조정을 취한 경우(자료 II)에도 실질수준으로 환산한 세입·세출 자료 간의 공적분 관계가 적어도 Jonhansen 검정 결과에 의해서는 여전히 지지되고 있는 것으



세입과 세출 간의 단기동학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는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다.

로 나타났다. 단, 동일 자료에 대해 Phillips and Ouliaris 검정 결과는 양자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조정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GDP 대비 세입·세출 비율 자료에 대해서는 Jonhansen 검정과 Phillips and Ouliaris 검정 모두 양자 사이의 공적분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간의 공적분 관계 존재 여부는 검정에 사용된 자료가 로그 수준 변수인지 GDP 대비 비율인지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조정 유무와 검정 방법에도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단기동학 모형에 기초한 인과관계 분석

검정 결과로부터 세입과 세출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일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분석에 이용된 연간 재정 자료 수가 35~27개로 매우 제한되어 있어 신뢰할 만한 공적분 검정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Krishnakumar, Martin, and Soguel(2004)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입과 세출의 규범적인 관계를 인정하여 공적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했다. 따라서 본고의 실증분석에서도 인과관계 검정을 위해 공적분 관계를 전제하는 VECM을 이용하는 것에 비중을 두기로 한다. 단, 공적분 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공적분 관계에 대한 추정치가 매우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참작하여, 공적분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단순 VAR 모형에 전기의 재정수지 차를 포함시킨 확장 VAR 모형도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확장 VAR 모형은 공적분의 존재에 관한 고려와 무관하게, 재정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절에서 소개한 Bohn(1991)의 연구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확장 VAR 모형이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이용되기도 했다.

가. 오차수정모형(VECM)

세입과 세출 간의 단기동학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는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다. 전절의 검정 결과가 대

체로 세입과 세출 간에 안정적인 장기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세입과 세출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은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이다. 세입(REV)과 세출(EXP) 간에 존재하는 공적분 관계식이 $REV = c_0 + \theta EXP + \delta$ 로 주어진다고 가정할 때, 세입과 세출의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단기동학관계는 다음의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VECM 모형

$$\Delta REV_t = C_1 + \sum_{i=1}^L \alpha_{1i} \Delta REV_{t-i} + \sum_{i=1}^L \beta_{1i} \Delta EXP_{t-i} + \gamma_1 \delta_{t-1} + \epsilon_{1t},$$

$$\Delta EXP_t = C_2 + \sum_{i=1}^L \alpha_{2i} \Delta REV_{t-i} + \sum_{i=1}^L \beta_{2i} \Delta EXP_{t-i} + \gamma_2 \delta_{t-1} + \epsilon_{2t},$$

여기에서, ΔREV_t 와 ΔEXP_t 는 각각 t기의 세입과 세출의 변화분을 의미하고, $\delta_t (\equiv REV_t - c_0 - \theta EXP_t)$ 는 공적분 관계식에 의해 정의되는 오차수정항을 나타낸다. VECM이 VAR 모형과 다른 점은, 세입과 세출의 수준이 장기적인 균형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양자 간의 불균형 정도가 세입과 세출 변화의 단기적 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오차수정항의 계수가 $\gamma_1 < 0$ 과 $\gamma_2 > 0$ 을 만족하게 되면, 단기적인 세입과 세출 변화는 장기적 불균형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조정과정이 모두 끝나게 된 후 세입과 세출은 새로운 장기 균형 수준을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Granger Causality를 검정하는 방법의 측면에서도 VECM은 VAR 모형과 차이가 있다.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VAR 모형은 전기의 세입(세출)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금기의 세출(세입)에 주는 영향을 파악한다. 즉, VAR 모형에 나타나는 교차시차변수들(cross lagged terms)의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t-검정이나 F-검정을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VECM에서는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교차시차변수와 오차수정항의 두 가지 통로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전기의 세입(세출)이 금기의 세출(세입)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교차시차변수의 계수와 오차수정항의 계수 추정치를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Payne(1998)에서는 VECM에서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면서 오차수정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만을 검토했지만, 보다 최근에 이루어

VECM이 VAR 모형과 다른 점은, 세입과 세출의 수준이 장기적인 균형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양자 간의 불균형 정도가 세입과 세출 변화의 단기적 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전기에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세입이 증가하여 장기적인
 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오차수정항의 영향을
 통해 금기의 세출이 증가하여
 단기적인 조정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세입과
 세출 간의 장기 불균형이
 점차 해소된다.

진 Kollias and Makrydakis(2000)의 분석에서는 교차시차변수의 계수와 오차수정항의 계수 중 어느 하나가 또는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토하였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세입과 세출 자료를 이용한 VECM의 추정 결과를 소개하고, 교차시차변수와 오차수정항의 계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먼저 사회보장부문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지 않은 세입과 세출 자료를 이용한 VECM 추정 결과를 <표 2>와 <표 3>에 소개하였다. 전자에서는 세입과 세출 자료를 로그 실질변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VECM 모형에 등장하는 세입과 세출의 변화(1계 차분)는 해당 변수의 변화율로 해석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GDP 대비 비율로 계산한 세입과 세출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세입과 세출의 변화(1계 차분)는 해당 변수의 GDP 대비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표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 자료로 로그 실질변수나 GDP 대비 비율을 이용하는 것에 관계없이 교차시차항(cross lagged term)의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전기의 세입(세출) 변화가 금기의 세출(세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의 오차수정항은 금기의 세출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의 오차수정항은 공적분 계수에 따라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것이므로 오차수정항이 클수록 장기적 균형의 측면에서 세입이 세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기에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세입이 증가하여 장기적인 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오차수정항의 영향을 통해 금기의 세출이 증가하여 단기적인 조정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세입과 세출 간의 장기 불균형이 점차 해소된다. 금기의 세입 변화에 대한 전기 오차수정항의 계수도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입·세출의 장기 불균형은 단기적인 세입 조정을 통해서도 점차 개선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일반적인 통계적 유의수준에 비추어 매우 미약한 정도이다.

〈표 2〉 VECM 모형 추정 결과: 자료 I (1970~2004)
로그실질 세입·세출

i) 공적분 관계		
LNRRO = 1.09*LNRX0 + 0.67,		
EC(오차수정항) LNRRO - 1.09*LNRX0 - 0.67		
ii) VECM 모형 추정 결과		
	금기의 세입 증가율(R0)	금기의 세출 증가율(X0)
전기의 세입 증가율 R0(-1)	0.34 [1.82]	0.10 [0.43]
전기의 세출 증가율 X0(-1)	-0.11 [-0.73]	0.07 [0.37]
상수항	0.05 [3.37]	0.05 [2.66]
전기의 오차수정항 EC(-1)	-0.21 [-1.57]	0.39* [2.28]

자료 I 을 이용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세입의 증가가 세출의 증가를 선도하지만 세출의 증가는 세입의 증가를 선도하지 못한다는 '세입-세출 가설' 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VECM 모형 추정 결과: 자료 I (1970~2004)
GDP 대비 세입·세출 비율

i) 공적분 관계		
ROSH = 1.89*XOSH - 0.18,		
EC(오차수정항) ROSH - 1.89*XOSH + 0.18		
ii) VECM 모형 추정 결과		
	금기의 R0/GDP 변화	금기의 X0/GDP 변화
전기의 R0/GDP 변화	0.23 [1.21]	0.21 [0.60]
전기의 X0/GDP 변화	-0.06 [-0.54]	0.08 [0.40]
상수항	0.001 [0.97]	0.0005 [0.19]
전기의 오차수정항 EC(-1)	-0.006 [-0.11]	0.23* [2.44]

〈표 2〉와 〈표 3〉의 결과를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라는 관점에서 요약하면, 세입의 증가가 세출의 증가를 선도하지만 세출의 증가는 세입의 증가를 선도하지 못한다는 '세입-세출 가설' 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세입에서 세출로의 인과관계가 오차수정항, 즉 장기 불균형을 통



금기의 세출 증가로 인한
장기적 재정 불균형의
발생에도 다음 기의 세입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서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금기의 세입이 장기적인 세입·세출 간의 균형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기의 세출 증가를 유도한다. 이 같은 현상은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재정운영방식이 세입 내 세출 원칙하에서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4>와 <표 5>는 사회보장 부문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조정한 후의 세입·세출 자료를 위와 동일한 형태의 VECM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 따르면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조정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VECM의 추정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기의 세입(세출) 변화는 금기의 세출(세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금기의 세입과 세출의 수준이 장기적 균형관계를 이탈했을 때, 예를 들어 세입의 세출에 대한 상대적 크기가 균형 관계 이상으로 커지게 될 때, 금기의 세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금기의 세출 증가로 인한 장기적 재정 불균형의 발생에도 다음 기의 세입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세입-세출 가설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VECM 모형 추정 결과: 자료 II (사회보장부문 조정, 1977~2003)
로그실질 세입·세출

i) 공적분 관계		
$LNRR20 = 1.02 * LNrx20 + 0.17,$		
EC(오차수정항) $LNRR20 - 1.02 * LNrx20 - 0.17$		
ii) VECM 모형 추정 결과		
	금기의 세입 증가율 R20	금기의 세출 증가율 X20
전기의 세입 증가율 R20(-1)	-0.10 [-0.45]	-0.15 [-0.62]
전기의 세출 증가율 X20(-1)	-0.22 [-1.10]	0.15 [0.74]
상수항	0.09 [4.28]	0.06 [3.04]
전기의 오차 수정항 EC(-1)	-0.03 [-0.21]	0.45* [3.01]

〈표 5〉 VECM 모형 추정 결과: 자료 II (사회보장부문 조정, 1977~2003)
GDP 대비 세입·세출 비율

세입-세출 가설이 성립하게 되면, 특정한 시기의 세입 확대가 다음기의 세출 증가로 연결되는 경향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i) 공적분 관계		
$R20SH = 0.87 \times X20SH - 0.01,$		
EC(오차수정항) $R20SH - 0.87 \times X20SH + 0.01$		
ii) VECM 모형 추정 결과		
	금기의 R20/GDP 변화	금기의 X20/GDP 변화
전기의 R20/GDP 변화	-0.09 [-0.41]	0.20 [0.47]
전기의 X20/GDP 변화	-0.13 [-0.98]	0.25 [1.02]
상수항	0.001 [0.84]	0.0004 [0.16]
전기의 오차 수정항EC(-1)	-0.06 [-0.57]	0.53* [2.40]

〈표 4〉와 〈표 5〉에서 보이는 세출 결정식의 오차수정항의 계수는 〈표 2〉와 〈표 3〉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부문의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에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경우에, 세출의 변화가 장기불균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등과 관련된 사회보장 관련 수입과 지출이 제도적인 이유로 인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의 결과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세입-세출 가설이 성립하게 되면, 특정한 시기의 세입 확대가 다음기의 세출 증가로 연결되는 경향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분석 결과에서는 세입의 변화에 따라서 세출이 기존의 재정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적자가 확대되거나 만성적인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세출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해 발생한 재정수지 적자가 다음기의 세입 확대에 의해 조기에 보전되지 못하고, 단지 다음기의 세출 변화를 통해서만 서서히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입-세출 가설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의 정부는 재정의 안정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하였지만, 재정의 안정성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Bohn(1991)은 재정수지 차를 포함하는 확장 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나. 확장 VAR 모형

전 절에서는 세입과 세출 간에 장기적 균형 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공적분 계수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후에 오차수정항을 구성하고 세입과 세출의 단기동학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VECM에 이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접근방법의 대안으로서, 세입과 세출의 변화로 구성된 단순 VAR 모형에 전기의 재정수지 차를 포함시킨 확장 VAR 모형을 활용하여 세입과 세출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확장 VAR 모형

$$\Delta REV_t = C_1 + \sum_{i=1}^L \alpha_{1i} \Delta REV_{t-1} + \sum_{i=1}^L \beta_{1i} \Delta EXP_{t-1} + \gamma_1 FB_{t-1} + \epsilon_{1t},$$

$$\Delta EXP_t = C_2 + \sum_{i=1}^L \alpha_{2i} \Delta REV_{t-1} + \sum_{i=1}^L \beta_{2i} \Delta EXP_{t-1} + \gamma_2 FB_{t-1} + \epsilon_{2t},$$

여기에서, FB_{t-1} 은 t-1기의 기초재정수지 차를 나타낸다. 이러한 확장 VAR 모형은 표준적인 VECM에 비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첫째, 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재정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제 2절의 공적분 검정 결과로부터 세입과 세출 간에 안정적인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적분 계수의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도 사전적으로 높지 못하다.

둘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세입과 세출이 순수한 의미의 장기적 균형 관계를 이루는 것은 기초재정수지가 균형선을 중심으로 정태적인(stationary) 변동을 보이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공적분 계수는 1의 값을 가지며 오차수정항은 단순히 기초재정수지 차로 주어지게 되어,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확장 VAR 모형은 VECM 모형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셋째, 세입과 세출이 전기의 재정수지 차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은, 공적분에 대한 고려와는 독립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운영방식이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는지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제로 Bohn(1991)은 재정수지차를 포함하는 확장 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VAR 모형에 오차수정항 대신 재정수지 차를 추가적 설명변수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세입과 세출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이전의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자료 I(1970년~2004년)을 이용하여 확장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인 <표 6>을 보면, 전기의 세입(세출) 변화는 여전히 금기의 세출(세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수지의 계수추정치인 부호($\gamma_1 < 0$ 과 $\gamma_2 > 0$)는 전기에 발생한 재정수지 흑자가 금기의 세입은 줄이고 세출은 증가시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일반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로그실질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재정수지 차이가 세출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VECM의 경우에 비해 훨씬 작게 추정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확장 VAR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VECM의 경우에 이용된 공적분 계수의 추정치(1.09)가 1에 매우 가깝다는 사실로부터,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단지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발생하는 sample error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자료 I을 이용하여 확장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의 세입(세출) 변화는 여전히 금기의 세출(세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표 6> 확장 VAR 모형 추정 결과: 자료 I(1970~2004)

i) 로그실질 세입/세출 자료 (1970~2004)

	EQ1	EQ2
	금기의 세입 증가율 R0	금기의 세출 증가율 X0
전기의 세입 증가율 R0(-1)	0.33 [1.78]	0.19 [0.76]
전기의 세출 증가율 X0(-1)	-0.08 [-0.54]	-0.05 [-0.29]
상수항	0.04 [2.42]	0.07 [2.79]
전기의 재정수지차 BB01(-1)	-0.15 [-1.48]	0.14 [1.04]

ii) GDP 대비 세입/세출 비율 자료 (R0SH vs X0SH): (1970~2004)

	금기의 R0/GDP 변화	금기의 X0/GDP 변화
전기의 R0/GDP 변화	0.27 [1.32]	0.06 [0.17]
전기의 X0/GDP 변화	-0.08 [-0.74]	0.01 [0.08]
상수항	0.001 [0.44]	0.004 [1.21]
전기의 재정수지차 비율 BB02(-1)	-0.05 [-0.56]	0.28 [1.68]

주: 1. BB01 = $\log(R0/Def) - \log(X0/Def)$

2. BB02 = $R0/GDP - X0/GDP$ (표 <표 6> 확장 VAR 모형 추정 결과: 자료 I(1970~2004))



재정수지 흑자라는 불균형 상태가 다음 기의 세출 증가를 통해서만 해소되고 있으므로 세입의 증가가 세출의 증가를 선도하는 세입-세출 가설이 성립하게 된다.

이같은 가능성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석에 이용되는 표본의 크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방법을 활용한다. 다음의 <표 7>은 자료 I의 관측 기간을 1977년~2003년으로 줄인 후,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장 VAR 모형을 재추정한 결과이다. 관측기간에 약간의 차이만 주었을 뿐인데도, <표 7>의 결과는 <표 6>과는 매우 다르며, 오히려 VECM에 기초한 분석 결과(<표 2>와 <표 3>)와 매우 유사해짐을 알 수 있다. 즉, 교차시차항(cross lagged term)을 통한 일방적인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지만, 재정수지 흑자라는 불균형 상태가 다음 기의 세출 증가를 통해서만 해소되고 있으므로 세입의 증가가 세출의 증가를 선도하는 세입-세출 가설이 성립하게 된다.

<표 8>은 사회보장부분을 조정한 세입·세출 자료를 이용하여 확장 VAR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표 7>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표 7> 확장 VAR 모형 추정 결과: 자료 I(1977~2003)

i) 로그실질 세입/세출 자료 (1977~2003)

	EQ1	EQ2
	금기의 세입 증가율 R0	금기의 세출 증가율 X0
전기의 세입 증가율 R0(-1)	0.007 [0.03]	-0.17 [-0.73]
전기의 세출 증가율 X0(-1)	-0.10 [-0.50]	0.37 [1.87]
상수항	0.08 [3.21]	0.07 [3.13]
전기의 재정수지차 BB01(-1)	-0.03 [-0.23]	0.39* [2.98]

ii) GDP 대비 세입/세출 비율 자료(1977~2003)

	금기의 R0/GDP 변화	금기의 X0/GDP 변화
전기의 R0/GDP 변화	0.03 [0.16]	-0.04 [-0.10]
전기의 X0/GDP 변화	-0.04 [-0.30]	0.39 [1.62]
상수항	0.002 [1.05]	0.004 [1.44]
전기의 재정수지차 비율 BB02(-1)	-0.01 [-0.09]	0.45* [2.52]

〈표 8〉 확장 VAR 모형 추정 결과: 자료 II(사회보장 부문 조정, 1977~2003)

i) 사회보장 부문을 제외한 로그실질 세입/세출 자료 (1977~2003)

	EQ1	EQ2
	금기의 세입 증가율 R20	금기의 세출 증가율 X20
전기의 세입 증가율 R20(-1)	-0.11 [-0.47]	-0.14 [-0.57]
전기의 세출 증가율 X20(-1)	-0.22 [-1.09]	0.15 [0.70]
상수항(C)	0.09 [3.89]	0.08 [3.48]
전기의 재정수지차 BB21(-1)	-0.02 [-0.18]	0.44* [2.97]

ii) 사회보장 부문을 제외한 GDP 대비 세입/세출 비율 자료 (1977~2003)

	금기의 R20/GDP 변화	금기의 X20/GDP 변화
전기의 R20/GDP 변화	0.03 [0.16]	-0.04 [-0.10]
전기의 X20/GDP 변화	-0.04 [-0.30]	0.39 [1.62]
상수항	0.002 [1.05]	0.004 [1.44]
전기의 재정수지차 비율 BB22(-1)	-0.05 [-0.54]	0.46* [2.40]

주: 1. BB21 = $\log(R20/Def) - \log(X20/Def)$
 2. BB22 = $R20/GDP - X20/GDP$

결론적으로 세입·세출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오차수정항을 포함하는 VECM을 이용하는 것과 재정수지 차이를 포함하는 확장 VAR 모형을 이용하는 것 사이에는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두 가지 접근법 모두 세입과 세출의 변화는 단기동학관계에서 나타나는 교차시차항(cross lagged term)을 통해서는 어느 방향으로도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세입의 변화는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 다음 기의 세출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지만, 세출의 변화가 초래하는 재정수지의 불균형은 다음 기의 세입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수지 균형의 회복이라는 경로를 통해서만, 세입에서 세출로의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세입·세출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세입과 세출의 장기적인 균형 관계에 대한 고려는-그것이 공적분 관계에 의한 것이든 단순한 재정수지 균형에 의한 것이든-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만일 양자 간의 장기적 균형 관계를 배제하고 분석하는 경우에는, 모형의 오설정(model misspecification)으로 인해 세입·세출 양자 사이에 어느 방향으로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세입·세출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세입과 세출의 장기적인 균형 관계에 대한 고려는-그것이 공적분 관계에 의한 것이든 단순한 재정수지 균형에 의한 것이든-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VECM과 확장 VAR
모형의 두 가지 추정 결과에
따르면, 세입의 변화가
장기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 세출의 변화를
선도하는 반면, 세출의
변화는 어느 경로로도
세입의 변화를
선도하지 못한다.


4. 결론

재정운영방식이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세입과 세출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입 변화가 세출의 변화에 선행한다는 세입-세출 가설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Friedamn(1978)의 주장처럼 금기의 세입 증가가 다음 기의 세출 증가로 연결되는 경향으로 인해 기존의 재정적자가 단기에 해소되지 않아 재정의 안정성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세출이 주도적으로 먼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세입이 적응하게 된다는 세출-세입 가설이 성립한다면, 일시적인 세출 증가는 추후 세입의 증가를 통해 충당되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재정 안정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VECM에 기초한 단기동학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세입과 세출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변화로 구성된 단순 VAR 모형에 전기의 재정수지차를 추가함으로써 금기의 세입과 세출이 전기의 재정수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도 검토하였다. 만약 정부가 전기에 발생한 재정수지 적자에 대응하여 다음 기의 세입을 증가시키거나 세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반응을 나타낸다면, 정부는 일반적인 ‘동적 예산 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조건을 충족시키는 재정운영 행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ECM과 확장 VAR 모형의 두 가지 추정 결과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의 변화는 단기동학 관계에서 나타나는 교차시차항(cross lagged term)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도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세입의 변화는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 다음 기의 세출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지만, 세출의 변화가 초래하는 재정수지의 불균형은 다음 기의 세입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수지 균형의 회복이라는 경로를 통해서만, 세입에서 세출로의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세입의 변화가 장기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 세출의 변화를 선도하는 반면, 세출의 변화는 어느 경로로도 세입의 변화를 선도하지 못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운영방식이 다소 경직적이며, 세수의 변화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제약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금기의 일시적인 세출 증가는 다음 기의 세입 증가에 의해 즉각적으로 충당되지 않기에 재정수지 적자는 단기에 보전되기 어렵지만, 재정수지 적자폭은 주로 세출의 변화를 통해 서서히 감소

하게 된다.

요컨대,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입-세출 가설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의 정부는 재정의 안정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하였지만, 재정의 안정성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Bohn, H., “Budget balance through revenue or spending adjustments? Some historical evidence for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7:1991, pp. 333~359.
- Buchanan, J and Wagner, R., *Democracy in deficit*, New York: Academic Press, 1997.
- Buchanan, J and Wagner, R., “Dialogues concerning fiscal relig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August 1977, pp. 626~627.
- Buiter, Willem H., “Notes on A Code For Fiscal Stability,” NBER WP 6522, April 1998.
- Friedman, M. “The limitations of tax limitation,” *Policy review* summer 1978, pp. 7~14.
- Kollias, C. and Stelios Markyadkis, “Tax and spend or spend and tax? Empirical evidence from Greece, Spain, Portugal and Ireland,” *Applied Economics*, 32, 2000, pp. 533~546
- Meltzer, A. and Richard, S.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1981, pp. 914~927
- Miller, S. and F. Russek, “Co-integration and error-correction models: The temporal causality between government taxes and spending,” *Southern Economic Journal* 57, 1990, pp. 221~229.
- Musgrave, Richard A., “Principles of Budget Determination,” in Helen A. Cameron and William Henderson (eds.), *Public Finance: Selected Readings*, New York: Random House, 1966, pp. 15~27.



- Payne, James. "The tax-spend debate: Time series evidence from state budgets," *Public Choice* 95: 1998, pp. 307~320
- Peacock, Alan T., and Jack Wiseman, *The Growth of Public Expenditure in the United Kingdo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for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61.
- _____,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Government Expenditure Growth," *Public Finance Quarterly* 7, Jan 1979, pp. 3~23.
- Von Furstenberg, G. M., Green, R. J. and Jeong, J. "Tax and spend, or spend and tax?"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86, pp. 179~188.

정책토론투리포트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 본 원고는 2007년 1월 17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요

□ 일시 : 2007. 1. 17(수) 10:00~11:40

□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0:00~10:10 인사말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0:10~11:30 주제발표 및 토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 **사회자** : 유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발표자** :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국광식 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회 위원
박혁수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허병익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 순)

11:30~11:4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1:40 폐회

1. 배경

- 소득과세는 기본적인 재원조달 기능 이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국가정책에서 역할이 큰 조세
 - 세부담 능력에 따른 조세부과를 지향함으로써,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과세는 중요한 세입원으로 기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과세제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원투명성 격차로 인해 왜곡되고,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납세자 비중이 낮아지고 성실한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
 -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낮은 세원투명성 문제는 일반국민의 조세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제도 운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사업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세원투명성 확보 정책과 함께 상류계층이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사회통합 및 국가정책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 사업소득에 대한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1999년 이후 크게 강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가가치세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 지속
 - 그러나 여전히 개선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 하고 현금할인 등으로 인해 전문직 사업자들의 소득과약을 개선에 한계
- 향후에는 일반적인 접근법보다 전문직 사업자에 특성화된 접근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소득검증이 불완전하여 보험 적용 병과와 그렇지 않은 병과와의 의료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적용이 대부분인 병과는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나 그렇지 않은 병과의 경우 수입금액 누락이 용이하여 산업 및 인력 구조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의료기관 세원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치료, 예방 등의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적용하여 비공제 항목이 많은 병과의 소득과약에는 한계
 -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나누는 기준에 있어서도 모호한 면이 있음
 - 현재 건강증진이나 미용 목적이 아닌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등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미용과 치료 등의 개념적 경계가 불확실한 부분도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소득투명성 제고와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의 형평성 측면에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필요성 및 그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과 함께 200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의 각종 의견들에 대한 검토 필요

2.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

-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부터 대폭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
 - 변호사, 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
 -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활용
 - 신용카드 가맹 유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여 등 현금대체 (혹은 거래검증이 가능한) 거래수단의 사용 활성화 추진정책을 통해 과세인프라 구축
- 2003년 7월 이후 현 정부에서도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원투명성 제고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
 - 신용카드 활성화, 기장의무자 확대, 부가가치세제의 정비,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강화 등 13개 과제 추진
 - 주요 추진실적
 - 신용카드 취약분야를 해소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제 도입(2005년 시행)
 - 간이과세 비중과 면세범위를 축소(부가세법 개정, 2003년 말)
 -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금융실명법 개정, 2004. 1)
 - 과세당국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 부동산투기 혐의 거래의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의 본점에 일괄조회 가능
 - 무기장 가산세율 인상(10% → 20%)(소득세법 개정, 2003년 말)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전담반 운영(202개), 지방국세청에 광역추적조사전담반 운영(9개)
- 2006년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주요 적용대상으로 하는 소득과약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2006. 7. 27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소비자상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화 및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상 거래대금 결제시 사업용 계좌를 거치도록 의무화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적용시 기장세액 공제율 상향조정(10%→15%) 등 근거과세 확대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 도입,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1%) 부과 등 거래흐름의 정상화 추진
 - 약의적인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세무조사 개선 등 세정의 투명성 제고방안들을 제시
- 이러한 방안들은 특히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과약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부의 2006년 세계개발(안)에 상당부분 반영됨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사업용 계좌 개설,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등을 의무화(2006. 12. 30 공포)
 -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범위 확대(국회 법사위 계류중),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등 직종별 특성에 맞게 과세자료 수집의 실효성을 제고

〈표 1〉 세원투명성 제고방안(2006. 8. 21 정부 발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p>• 현금거래의 노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상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화 및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07. 7 시행) *가산세(가부금액의 5%), 감면 배제, 벌금(502만원 이하), 세무조사 등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시 소득공제 허용(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및 신고포상금(5만원) 도입(07. 7 시행) <p>• 국제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식부기 의무자(53만명)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상 거래대금 결제시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를 거치도록 의무화 *원시 가산세(미사용 금액의 0.5%), 감면 배제, 세무조사(08. 1 시행) - 원화거래를 이용한 해외거래 자료 등 FIU 자료의 국제청 통보 범위 확대 - 소송에 의한 보험금 지급자료(손보사) 국제청 통보 <p>• 근거과세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적용시 기장세액공제를 상향조정(10%→15%) - 단순경비를 적용대상 축소(3,600만~7,200만원 → 2,400만~6,000만원) *08. 1 시행 - 적격증빙 수취기준금액 상향조정(5만원 이상 거래 → 1만원 이상) 및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복식부기의무자 → 4,800만원 이상) <p>•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등 의무화 - 변호사 수입금액 자료 국제청 통보(지방변호사회에서 수집) * 변호사법 -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 -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 부과(0.5%) <p>• 거래흐름의 정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확인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 도입 -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공급가액의 1%→2%) -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1%) 부과 -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규정 강화

세무행정 등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인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10~30%→40%) • 세무조사 개선 등 세정의 투명성 제고 • 세무조사 기법 선진화 및 공격적 조세회피(ATP) 차단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정보 포상금 확대 -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탈루세액 5억원 이상~1억원 이상) •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강화 등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영세·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60만원→100만원)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증가분의 50% 상당세액 공제) 시한 2년 연장 • 성실사업자 세부담상한제 확대 운영 (전년 대비 1.3배 → 1.2배) • 성실사업자의 소득·세액계산을 단순·표준화하는 성실납세제도 도입 (재경위 계류중)

주요 대상(Targeting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만명 내외(전체사업자 438만명의 14%) * 주요 유형 영세사업자로 위장한 고소득 자영 사업자, 자료상, 집 단상가 등 무자료 거래사업자, 호화유흥업소 등 음성 탈루 소득자, 전문직 사업자,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

비전 (Vision)												
<table border="1"> <tr> <td></td> <td>현행</td> <td>10년후</td> </tr> <tr> <td>• 소득파악률</td> <td>50~60%</td> <td>→ 80%</td> </tr> <tr> <td>• 과세자비율</td> <td>53%</td> <td>→ 70%</td> </tr> <tr> <td>• 장부기장비율</td> <td>54%</td> <td>→ 80%</td> </tr> </table>		현행	10년후	• 소득파악률	50~60%	→ 80%	• 과세자비율	53%	→ 70%	• 장부기장비율	54%	→ 80%
	현행	10년후										
• 소득파악률	50~60%	→ 80%										
• 과세자비율	53%	→ 70%										
• 장부기장비율	54%	→ 80%										

3. 의료비공제 개선 배경 및 내용

가. 배경

- 의료산업계의 세원투명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며 면허의사 수 변화, 진료비 수준변화, 세무조사 결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1990년 이후 면허의사 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비보험 진료가 많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한의사의 경우, 지난 15년간 일반의사에 비해 증가율이 4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줌
 - 자영업사업자에 대한 소득과약 장치가 강화된 2000년대 이후 한의사 수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

〈표 2〉 면허의사 수 추이

연도	면허의사 수 추이 (단위: 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990	42,554	9,619	5,792
1995	57,188	13,68	18,714
2000	72,503	18,039	12,108
2001	75,295	18,887	12,794
2002	78,609	19,672	13,662
2003	81,328	20,446	14,553
2004	81,998	20,742	14,421
2005	85,369	21,581	15,271
평균 증가율(%)			
1990~2005	4.8	5.5	6.7
1990~2000	5.5	6.5	7.7
2000~2005	3.3	3.7	4.8
의사 대비 증가율 배율(배)			
1990~2005	1.00	1.17	1.41
1990~2000	1.00	1.19	1.40
2000~2005	1.00	1.10	1.43

자료: 보건복지부, 『2006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06.

- 과목별 의료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면 이러한 면허의사 수 증가율 차이에 세원투명성이 역할을 하였을 수 있음
- 병과별 인력공급 분석을 위해 전문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총전문의 규모 증가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보험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전문의 증가추세가 높은 실정
- 총전문의 규모 증가율에 대한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전문의 증가율 비율의 경우 2000~2005년 기간 동안 각각 1.52, 1.10, 1.19에 달함
 - 특히 피부과와 안과의 경우 전문의 증가율 상대배율이 소득과약 노력이 강화된 2000년 이후부터 그 이전에 비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좁아 세원투명성이 낮은 성형외과·피부과 등으로의 인력 이동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

〈표 3〉 과목별 전문의 수 추이

(단위 : 명)

연도	총전문의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1990	23,222	310	629	839
1995	32,030	556	831	1,167
2000	45,870	925	1,155	1,687
2001	49,044	1,020	1,238	1,812
2002	52,045	1,112	1,328	1,929
2003	54,864	1,193	1,402	2,067
2004	55,948	1,270	1,441	2,147
2005	58,807	1,344	1,517	2,264
평균 증가율(%)				
1990~2005	6.4	10.3	6.0	6.8
1990~2000	7.0	11.6	6.3	7.2
2000~2005	5.1	7.8	5.6	6.1
총전문의 대비 증가율 배율(배)				
1990~2005	1.00	1.61	0.95	1.07
1990~2000	1.00	1.64	0.89	1.03
2000~2005	1.00	1.52	1.10	1.19

자료: 보건복지부, 『2006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06.

- 면허의사 일인당 총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비보험진료가 많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비 수준이 낮아 세원투명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일반의사와 비교해 치과의사, 한의사의 기대 수입이 비슷하다면 낮은 건강보험 관련 진료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은 비보험 진료 수입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
-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인당 건강보험 관련 진료비 수준(즉 수입수준)은 낮아지고 있으나 면허의사 수는 일반의사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경제적 유인과 일치하지 않음

〈표 4〉 의사 일인당 총진료비 추이

(단위 : 천원/명)

연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000	143,661	43,029	43,740
2001	154,388	49,441	52,994
2002	153,990	46,704	57,307
2003	165,108	46,439	61,090
2004	174,795	47,794	68,381
2005	184,121	47,783	71,326

일반의사 대비 상대비중(배)

2000	1.000	0.300	0.304
2001	1.000	0.320	0.343
2002	1.000	0.303	0.372
2003	1.000	0.281	0.370
2004	1.000	0.273	0.391
2005	1.000	0.260	0.387

주 : 일인당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종별 총진료비를 면허의사 수로 나누어 산출

자료 : 보건복지부, 『2006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정보시스템

(http://www.nhic.or.kr/wbm/wbmb/wbmb_1000_f.jsp)

-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어 2006년 실시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루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2003~2004년 소득금액에 대한 1차 조사결과 (2006년 3월)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의 탈루율은 42.8% 수준으로 총수입 4.2억원 중 평균 1.8억원을 탈루
- 2003~2005년 소득금액에 대한 3차 조사결과 (2006년 11월)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의 탈루율은 37.7% 수준
- 국세청의 주요 탈루유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경우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고 있음
- 수입금액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구됨

〈참고 1〉 업종(병과)별 수입금액 탈루유형
(국세청 보도자료, 2007. 1. 12)

- 의료업 일반
 -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 종합병원
 - 비급여 MRI 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미수령 보험금 누락
 - 비급여 식대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
 -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 성형외과
 -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하여

- 수입금액 누락
 -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
 -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하여 수입금액 누락
 - 성형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하여 누락
- 산부인과
 - 비보험 무통시술, 병실료 수입금액 누락
 - 일반 직장의 건강검진비 누락
 - 여성병 검진 수입금액 누락
 - 친인척 명의 위장 산후조리원 수입금액 누락
 - 병원 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 입원산모 외에 보호자 등에게 판매한 식대 누락
- 피부과
 - 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 의사 초빙기록 삭제로 대응되는 수입금액 누락
 -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금액 누락
 -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누락
- 안과
 - 라식수술 건당 금액을 조작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 백내장 수술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 렌즈 판매금액 누락
- 치과
 - 교정,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송금받아 누락
 - 치과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료 누락 및 대응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신용카드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

• 한의원

- 원거리 환자(택배이용) 현금수입 누락
- 녹용 등 한약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누락
- 자체 개발한 어린이 성장클리닉인 성장탕 매출 누락
- 자체 개발한 편강탕(천식 비염치료) 매출 누락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 기존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정책은 결제를 위한 하드웨어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실제 이용비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를 노정
- 병·의원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률 현황은 96% 이상으로 하드웨어의 증설로 인한 추가적인 투명성 제고에는 한계가 존재
- 가맹에도 불구하고 현금지불에 대한 할인, 소득과약을 꺼리는 사람들의 현금이용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기 때문

〈표 5〉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현황(2006. 6월)

(단위: 개, %)

구분	계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감평가사 등	병의원
사업자	29,156	3,718	552	5,264	1,113	7,106	9,452	1,951	52,987
가맹점	20,938	2,979	396	4,432	911	6,214	5,158	657	51,324
비율	71.8	80.1	71.7	84.2	81.9	87.4	54.6	33.7	96.9

주: 1. 전체사업자 기준

2. 국세청 세원관리대상 9개 전문직 사업자 중 관세사는 대부분 사업자를 상대하므로 별도관리

3. 건축사·감평가사 등은 주로 사업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가맹비율이 낮음

자료: 국세청

- 따라서, 의료비공제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과세자료를 역으로 수집·활용하는 방안

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동 방안은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소비자를 통한 수입검증을 가능케 하여 세원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 동시에 소비자의 소득공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직 사업자들의 납세순응유인을 높일 수 있음

- 의료비공제대상을 미용·성형비용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보약 등)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동시에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도 가능
-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과약 수준 제고 기대

- 세원투명성 유도 기능의 측면에서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행정을 통한 세원투명성 검증 기능이 미흡하므로 이를 공제제도 확대를 통해 보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를 받고 있으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은 취약
-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는 이를 보완하는 기능 수행

나. 의료비공제제도 개요 및 확대내용

- 현행 의료비공제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가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소득공제
- 공제대상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다만,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을 위하여

- 지출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2005년 귀속소득 기준 의료비공제 수혜자는 146만 8천명 수준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정밀건강진단을 위한 비용 포함)
 - 다만,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 비용은 제외
 -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 구입·임차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비용 등

- 의료비공제대상을 미용·성형비용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보약 등)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006. 8. 21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
- 동 개선방안이 미용·성형에 지불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 미용·성형의 실질가격을 낮추어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2년간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과약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대

다. 의료비공제제도 변경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1)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의 추진 등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2006. 10. 26)
-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 발굴을 통해 소득과약의 미비로 인해 야기되었던 조세불평등 문제의 해결 필요성 주장

2) 언론

- 지난해 공청회 및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언론은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모두 표명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보험병과의 소득과약에는 도움이 되어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
- 반면, 일부 언론은 성형을 조장하는 문제 및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 등을 지적

3) 국회

- 국회 정책질의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통한 과표

〈표 6〉 구체적인 의료비 공제대상

공제 대상	공제 배제
〈성형외과 관련〉 · 속눈썹에 찢리지 않게 하기 위한 시력저하 방지 쌍꺼풀 수술 · 기형인 코의 성형을 위한 치료목적 수술 · 사마귀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사마귀 부위가 덧나 제거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 교통사고로 안면부위 상해가 심해 이를 교정하기 위한 성형수술 · 한쪽 귀가 없는 청각장애인의 청각기능 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한 수술비	· 미용 목적의 쌍꺼풀 수술 · 미용 목적의 코 성형수술 · 미용 목적의 사마귀 제거수술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인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수술
〈치과 관련〉 · 치열교정비 ·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필요 · 보철료, 의치(틀니)비용 · 질병예방 차원의 스케일링비용	· 치열교정비 ·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없는 경우 공제대상 아님

주: 1. 저작기능장애 : 음식물을 씹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양성화 정책의 타당성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음

-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2006. 11)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입에 반대 입장
 - 정부가 나서서 미용·성형수술을 권장하는 문제
 -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대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통해 소득과약수준 제고 가능성에 지적

〈참고 2〉 개인소득세 공제제도

- 현행 소득세 과세시 적용되는 공제제도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제도로 구성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와 특별공제가 적용
 - 이러한 다양한 공제제도로 인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규모는 총급여액의 약 70%를 차지
- 근로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대응되는 공제항목으로서 근로소득 창출에 투입된 각종 경비를 공제하려는 취지
 - 규모가 커 근로자의 면세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공제규모는 총급여액의 약 42%

* 근로소득공제

- 연 500만원까지 : 전액 공제 / 500만원 ~1,500만원 : 50%
- 1,500만원~3,000만원 : 15% / 3,000만원

~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 인적공제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감안한 부양가족 배려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로 구성
 -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00만원이며, 전체 근로자의 공제규모는 총급여액의 약 12%를 차지
 - 다자녀추가공제는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소득공제체계 구축을 위해 소수자추가공제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2007년부터 적용
- 특별공제는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공제제도로 실액공제 또는 표준공제(100만원) 선택 허용
 - 특별공제제도의 유형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과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경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공제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같이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공제제도를 운영
 - 수준은 총급여의 15% 초과사용액에 대해 15% 소득공제(2007. 11 일몰)
 - 특별공제는 자영업자와의 세부담 불형평 해소를 위한 근로자 지원 강화 차원에서 계속 확대되어 1999년 8개에서 현재 15개 항목 운영
 - 전체 근로자의 특별공제 규모는 총급여액의 약 15%
 - 자영업자의 경우 기부금, 연금저축, 연금보험료,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만 특별공제가 허용
 -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수준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액공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고 표준공제(60만원)만 적용
 - 2007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

설, 장부기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같이 100만원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 15% 이상 지출분에 대해 15% 소득공제하는 것에 비해 높은 공제율 적용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화(2007. 7),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화 등과 함께 시행

4.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 의료비공제 개선방안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소득과약을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에 1차 목적이 있음
 - 현재 의료기관의 소득과약은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보약 등에 지출한 비용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
 - 주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가 해당
 - 그러나,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현금지급시 할인 등을 내세우며 수입금액 노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으로는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적출금액/총소득)은 약 37.7%(국세청 3차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결과, 06. 11. 7)
 - 국세청이 작년 11월 발표한 고소득 자영업자 4차 조사대상자(312명)에는 지역내 유명도가 높아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유명 전문 병·의원 등도 다수 포함
- 따라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불리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의 소득과약을 위해서는 의료비공제대상의 확대가 필요
 - 의료비공제대상 확대는 거래수단과 관계없이 공급자의 납세순응유인을 높여주는 반면 공제대상이 소득 대비 3% 이상 지출분(500만원 한도)으로 세수측면의 손실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상 과세 일원화 차원에서도 공제제도 개선 필요
 - 현재 미용·성형수술, 보약 등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지만, 의료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 이유는 국민후생관련 소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 경감

※ 부가가치세법 §12(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의료보건용역의 범위)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따라서, 세법상 의료용역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소득공제 허용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자에 비해 거래상대방을 통한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도 있음
- 미용·성형의 복합적인 성격(의료 및 미용)상 의료비공제를 구분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움
 - 미용·성형은 의료행위 및 미용 목적의 복합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 집행에 있어 치료 목적의 성형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음

- (사례) 현재도 속눈썹에 찢리지 않게 하기 위한 시력저하 방지 쌍꺼풀 수술, 기형인 코의 성형을 위한 수술 등 치료 목적의 수술은 소득공제 대상

- 치료목적의 미용·성형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과 관련한 납세협력비용 경감, 세제간소화 차원에서 소득공제 허용의 타당성 존재

■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과 질병예방 지출의 구분이 어려운 문제도 존재

- 건강진단비용도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라는 예방적 의료지출로 보아 2003년부터 의료비 공제대상에 추가되었음
-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의 경우에도 예방적 의료지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의료비공제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비 소득공제의 확대가 전체 세부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소득분포에 따라 결정됨

- 수요자는 일반 근로소득자로 평균 연소득 21.4백만원 수준
- 반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평균 개인소득은 57.9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되어 일반소득자의 2배 이상 수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계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비를 포함할 경우 실제소득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진료비지출(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제외)을 면허의사 수로 나누어 산출한 일인당 진료비(1억 7천5백만원)에 국세청이 공표하는 11개 의원과목별 단순경비율 평균(66.85%)을 적용한 소득

〈표 7〉 의료비 수요자와 공급자의 평균소득(2004)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인원	총소득	평균 개인소득
종합소득자	2,235,905	49,179,843	22.0
근로소득자	11,624,000	249,061,731	21.4
의사, 한의사	117,161	-	57.9

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보험적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의사의 일인당 진료비 1.7억원에 국세청이 공표하는 11개 의원과목별 단순경비율의 평균 66.85%를 적용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

보건복지부, 『2006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정보시스템

(http://www.nhic.or.kr/wbm/wbmb/wbmb_1000_f.jsp).

■ 의료비 소득공제의 확대는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근로소득자의 의료수요를 증대시키며 동시에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반면 의사, 한의사의 소득투명성을 높여 명목 세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소득이 높은 의사, 한의사 계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소득자로의 소득이동을 유발
- 그러나 실효 의료비 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 효과는 의사, 한의사 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순효과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

■ 한편, 의료비공제 확대조치가 기 발표된 2006년 세계개편안에 포함되어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의료비공제대상 확대는 2006년 세계개편안에 포함되어 2006. 12월 지출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된 내용으로 근로자들은 세부담 경감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음

■ 동 제도를 영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시행해 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제도의 지속적 운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

- 개편안에서는 2008년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을 제안하고 있어 향후 소득투명성 제고효과와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의료기관의 소득노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면 검토

5. 결론

- 사업소득의 투명성 제고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었음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제도 등을 통해 현금거래의 대체 혹은 검증기능을 제고시키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제도를 도입
- 기장의무자 확대, 부가가치세제의 정비,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강화 등 세제 및 세정노력 지속
- 그러나 현금거래의 대체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현금지급시 할인 등을 내세우며 수입금액 노출을 회피하여 개선 필요성이 높음
- 진료 과목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범위에 차이가 존재하여 의료산업 및 인력수급에 왜곡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의사 등 상위소득계층의 세원투명성 제고는 고소득층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국민의 조세제도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의료기관 관련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

요가 있음

- 현재 미용·성형수술, 보약 등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지만, 의료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있어 소득세법과 과세 일원화 필요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거래 상대방을 통한 소득검증 기능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음
- 미용·성형의 복합적인 성격(의료 및 미용)으로 공제 여부 결정의 어려움 해소 필요
 -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과 질병예방 지출의 구분이 어려운 문제도 해소
-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소득이 높은 의사, 한의사 계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소득자로의 소득이동을 유발시킬 가능성
 - 그러나 실효 의료비 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 효과는 의사, 한의사 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순효과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
- 세원투명성 제고 목적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해 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제도의 지속적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2008년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을 제안하고 있어 향후 시행성과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
2.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계산, 기준경비(단순경비)율.
3. 국세청, 「자영업자 2차조사결과 보도자료」, 2006. 8.
4. 국세청, 「자영업자 1차조사결과 보도자료」, 2006. 3.
5. 보건복지부, 『2006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06.
6. 재정경제부, 「2006년 세제개편(안)」, 2006. 8.
7.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정보시스템
(http://www.nhic.or.kr/wbm/wbmb/wbmb_1000_f.jsp).

〈부록 1〉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소득공제제도 비교

■ 요약

공제 항목	근로 소득공제	인적 공제	표준 공제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보험료, 신용카드, 혼인·이사·장례비
근로자	○	○	100만원	○	○	○
사업자	×	○	60만원 ¹⁾	○	○	×

주: 1)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 상세내용

	항목	공제내용	근로자	사업자
인적 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	○
	추가공제	경로자 :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	○	○
		장애인 : 200만원, 6세 이하 자녀 : 100만원 부녀자 : 50만원	○	○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2인 50만원, 자녀 2인 초과시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보험료입액 전액공제	○	○	
표준공제	근로자 : 100만원 사업자 : 60만원	○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 고용보험료 : 전액공제	○	×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	○	×
	의료비	500만원 한도/ 본인 : 한도 없음	○	×
		본인 : 교육비 전액공제	○	×
	교육비	대학(사이버대학 포함) : 700만원	○	×
		초·중·고등학교 : 200만원	○	○
	주택자금	주택미련저축불입액 } 300만원 } 1천만원 한도	○	×
		전월세자금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1천만원 } 한도	○	○
	기부금	법정기부금 : 전액공제	○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한도	○	×
혼인·장례·이사비	사유 발생당 연 100만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액의 15%)×15%	○	○	
	(500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 금액 한도)	○	○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불입액 전액(300만원 한도)			

〈부록 2〉 최근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한 논란

- 2006년부터 의료비, 보험료 등 8개 공제항목 경비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 전산에 의해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간소화
-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소득공제용 의료비증빙자료 제출
 -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성형·미용, 보약 등)는 증빙자료 제출대상이 아님
 - 2006년의 경우 전체 74,372개 의료기관의 약 80%가 의료비증빙서류를 제출
- 의료단체는 환자의 비밀보호, 인권침해,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을 반대하는 입장
- 이에 대해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 의료법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을 허용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증빙자료 제출은 의료법상 문제가 없음
 - 납세자는 본인 정보가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국세청의 의료비 지출 정보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만 조회 가능(부부 간에도 배우자 정보 조회 불가)
 -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내용은 의료기관명, 환자명, 수납일자 및 금액 등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정보로 한정
 - 개인정보 유출은 관련 법령의 별칙규정에 따른 처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부록 3〉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 고소득 자영업자 1차 세무조사 결과(2006. 3)

- **(조사개요)**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2005. 12. 22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하여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업체당 평균 2.6억원)
- **(소득탈루율)** 전체 평균으로는 연간 6.3억원을 벌어서 2.7억원만 신고하여 56.9%의 소득탈루율을 보이고 있음
 - 업종별로는 대규모 재산을 가지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재산가형 자영업자의 탈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42.8%, 유흥업소·집단상가 등 기타업종의 소득탈루율은 54.0%임

〈부표 1〉 신고소득 및 탈루소득 비교(2003~2004 2년간)

(단위: 억원, %)

구분	총소득	①신고소득	②탈루소득	③탈루율(②/①)
◇ 전체 평균	6.3	2.7	3.6	56.9
- 재산가형	8.1	2.1	6.0	74.0
- 전문직	4.2	2.4	1.8	42.8
- 기타업종	7.4	3.4	4.0	54.0

주: 세금탈루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이들의 소득탈루율을 전체 사업자의 소득탈루율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재산증가 분석)** 소득탈루가 많은 경우 최근 10년간 재산증가도 많아 탈루소득이 재산증식의 자금원천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

**<부표 2> 1가구당 연평균 탈루소득 및 재산증가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전체	재산가형	전문직	기타
탈루소득	3.6	6.0	1.8	4.0
재산증가액	2.4	4.5	1.2	2.5

나. 고소득 자영업자 2차 세무조사 결과(2006. 8)

- **(조사개요)** 세금탈루 혐의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2006. 3. 30부터 진행하여 1,065억원의 세금을 추징(업체당 평균 3.3억원)
- **(소득탈루율)** 전체 평균으로는 연간 6.3억원을 벌어서 2.7억원만 신고하여 56.9%의 소득탈루율
 - 조사대상 319명은 2년간('03~'04년) 벌어들인 5,516억원의 소득 중에서 2,331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3,185억원을 신고누락하여 평균 소득탈루율이 57.7%

<부표 3> 신고금액 및 적출금액 비교(2003~2004 2년간)

(단위: 억원, %)

구분	총과세대상 ^㉑	신고금액 ^㉒	적출금액 ^㉓	탈루율 ^㉔
전체	5,516	2,331	3,185	57.71
세대당 연평균	8.7	3.7	5.0	

다. 고소득 자영업자 3차 세무조사 결과(2006. 11)

- **(조사개요)** 2006. 8. 16부터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454억원의 세금(조사업체당 평균 6억 8천만원)을 추징
- **(소득탈루율)** 362명 전체는 3년간('03~'05년) 벌어들인 1조 5,459억원의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7,932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7,527억원은

누락하여 평균 소득탈루율이 48.7%

- 업종별 소득탈루율은 고액탈세 재산가의 경우 48.9%, 전문직 종사자 37.7%, 집단상가, 도소매업 등 소득과약 취약업종 종사자는 64.2%

<부표 4> 신고소득 및 탈루소득 비교(2003~2005, 3년간)

(단위: 억원, %)

구분	총소득 ^㉑	신고소득 ^㉒	적출금액 ^㉓	탈루율 ^㉔
전체	1조5,459	7,932	7,527	48.7
1인당 연평균	14.2	7.3	6.9	

라. 4차 세무조사 착수(진행중)

- **(조사개요)** 2006. 11. 6부터 312명에 대해 세무조사 진행중

〈부록 4〉 의료업 경비를 수준

코드 번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기 준	
	세분류	세세분류		경비율	경비율	
851101	병원	• 종합병원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78.3	27.2	
		• 일반병원				
		• 요양병원				
851102		• 치과병원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63.6	25.1	
851103		• 한방병원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67.5	23.4	
851201		• 일 반 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73.2	28.0	
		• 내 과				
		• 소 아 과				
851202		• 일반외과	• 향문과, 신경외과 포함	74.8	27.5	
		• 정형외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203		• 신 경 과	• 신경정신과 포함	73.9	28.4	
		• 정 신 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204		• 피 부 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68.3	28.8	
		• 비뇨기과				
851205	의원	• 안 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69.5	28.7	
851206		• 이비인후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73.1	31.0	
851207		• 산부인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65.0	24.1	
851208		• 방사선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71.1	29.1	
851209		• 성형외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42.7	18.9	
851211		• 치과의원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61.7	19.1	
851212		• 한 의 원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58.7	21.2	
851219		• 기타의원	• 기타의원	•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 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70.2	29.7

이 원고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정책토론회 토론 요약

의료비소득공제제도 폐지되어야

국광식 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회 위원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순전히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이 정책을 판단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첫째,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의사가 환자 진찰시 기록하게 되는 모든 내용이 의료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의료기관의 사유재산이다. 따라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부에 유출될 수 없으며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한국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 2002년 발표한 개인정보의 등급표가 제시되고 있다. 1등급에 개인의료정보와 함께 ‘국가안보와 관련한 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의 의료정보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한 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환자의 정보누설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출한 의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행정편의를 위해 의료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료정보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며, 환자 동의가 있을 때에만 다른 기관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자료에 따르면 정보제공이 가능한 8가지 경우에 대한 예를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받은 기관은 자료 보관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 목적 달성시, 해당 자료의 안전한 파기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들은 의료정보를 생산하는 의사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밀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더욱이 급여청구를 하기 위해서 의사는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으로부터 다른 기관에 유출되는 것은 공단 자체에서 금하고 있는 규정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의료정보는 수집단계부터 개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수집, 관리, 보관, 수정,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 시행으로 절차의 간소화가 실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마디로 연말정산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간소화된 것이 없으며, 다만 연말정산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로 바꾸어 놓았을 뿐이다. 즉, 환자가 하던 것을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더구나 효율성 증가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바꿀 수 없는 문제이다. 아울러 의료비 연말정산과 관련한 사회비용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비용에 대한 추계에 있어서도 재정부는 6,300억원, 국세청은 5,000억원, 건강세상네트워크라는 기관은 1,3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어쨌든 알 수 없는 이 가공의 추계비가 과연 행정적 절차가 바뀌었다고 해서 감소되었는지 의심스러우며, 단지 6,300억원 등의 사회적 비용이 의료기관 및 의사의 부담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토론자가 경제학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지만 몇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다. 먼저 소득공제제도는 동일 근로소득자의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과세형평성을 맞출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도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공제제도를 포함한 비과세·감면제도가 지나치게 많아 최근 국회에서 이를 제한하려는 입법안을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이 비과세제도로 인해 한 해에 누락되고 있는 세수가 20조원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총세수의 14%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공제제도는 줄여야 하는 것이 공론이다. 특히 의료비소득공제제도는 현재 하위 51%가 면세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위 49%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이다. 또한 의료비소득공제시,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발표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의료비공제로 일정부분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수요가 증가함으로써 확보되는 세수보다는 의료비소득공제제도로 빠져나가는 세수가 더 많을 것이며, 이는 재정부에 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1,200억원 정도의 세수 손실을 예상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소득공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문제점이 있는 의료비소득공제제도는 폐지하고, 여기서 확보되는 세수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확충에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약속 대로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재정에 보험료와 동일한 정도의 국고지원이 약속되어 있었다. 작년 건강보험공단의 수입 중 보험료가 18조원, 국고 지원이 2조 5천억원이었는데, 의료비소득공제제도가 확대만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1,200억원이 확보되는 것이며, 또 기존 의료비공제제도까지 폐지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이처럼 제도 폐지를 통해 확보된 재정을 공단에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하위소득자가 최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료비소득공제제도는 실질적으로 추

가적인 소득과약 제고 및 근로자 세부담 경감효과는 없으면서 세수감소만 초래할 수 있다.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상대적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투입해 주길 의사 및 의사협회는 희망한다.

제도 도입시 효과 구체적 분석 필요

윤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나, 발표 내용에서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로 의료비소득공제제도 확대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었으면 좋았을 듯싶다. 왜냐하면 동 제도 도입시 주체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제도 확대시 수요자인 소비자는 세부담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줄게 된다. 반대로 의사 및 한의사 등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정부의 세수는 증가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동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의 순효과(net effect)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예상한다면 과연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다시 말해 순효과에 대해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로 실효의료비 감소로 인해 성형·미용 등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증가할 수 있을지, 물론 분석

이 쉽지는 않겠으나 가능한 범위에서 분석 및 예측결과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96%까지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현금할인으로 인한 이득이 의료비소득공제 혜택보다 크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의료비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현금할인으로 인한 이득이 소득공제혜택보다 크다면 의료비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맥락에서 소득공제의 폭을 보다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듯싶다. 아울러 현행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미용·성형·치과·한방분야까지 소득공제대상 범위로 포함시킨다면 소득공제 한도 역시 범위 확대와 더불어 높여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의사·한의사 등이 의료비소득공제제도의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의료기관 등의 자료가 집중되는 건강보험공단이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공함에 따른 정보보호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등의 병과에서는 환자 대부분이 정보노출을 꺼리므로, 자료노출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세정책의 목표인 세원투명성 제고, 세수확대 및 조세형평성 등을 생각해보면, 의료업계가 지적한 고소득자에게로 공제혜택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는 시장경제하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과표양성화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 고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고소득전문직의 '과표양성화'가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은 다들 공감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당국자들의 고민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소득공제제도는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의 수입금액 중 소득, 즉 소비나 저축이 아닌 필요경비적인 성격의 경비들을 공제함으로써 진정한 부담능력에 맞게 과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형 또는 보약이 과연 필요경비적 성격을 갖는지 아니면 소비적 선택인지에 대한 이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성형·보약 등이 소비선택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면 이들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한편 의료비소득공제제도의 일차적인 정책목표가 세원양성화에 있다면,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제도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처럼 세원양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본 연구가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온기운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제도 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과표양성화나 세수 등에 미치는 효과분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과표양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무통장입금, 간이세금계

산서 등을 국세청에 등록하는 경우 신용카드영수증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의 탈루율이 30~4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탈루의혹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탈루율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소득이 상당 부분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보면 성형·치과 등의 분야에서 치료와 미용의 구분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예방을 위한 의료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인식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그 일환으로 성형 등의 분야를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감기 등 통상적인 치료목적의 의료서비스에 비해서 성형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대폭 높여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상 일반 내과 등의 소득과약률이 성형 등의 과목보다 높은 이유는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보다는 급여보험적용대상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성형 등의 진료과목이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면 과표양성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의견교환 필요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오늘 공청회는 다음의 2가지 사안이 관건인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비소득공제제도의 범위 확대와 연말정산 간소화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개인의료정보의 노출 문제가 그것이다.

첫 번째, 의료비소득공제제도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발표내용을 보면, 시행기간을 2년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의료비나 학원비처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점에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의료비공제나 교육비 공제에 제외되는 영수증을 모아 추가로 공제를 허용하고 그 재원은 의사나 학원의 매출을 양성화시켜 조달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오래 전부터 제안해 왔다. 물론 이것이 성공하면 유사한 제도를 다른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미용이나 성형에 대하여 100% 공제하면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만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것보다는 공제율을 낮추고 시행기간을 늘이는 것이 더 낫다.

두 번째, 국세청에서 개인의료정보를 다운로드받는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것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현행 국세청 시스템은 인증서가 있는 개인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제공되는 정보에 있어 병원명과 질병내역 등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수준의 정보공개가 과연 정보노출에 따른 법적 또는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본 결과, 법을 저촉하지

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행정적 간소화가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으며, 그동안 연말정산 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도 의료비 소득공제가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의료비 명세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 명세라는 것이 지금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정도의 의료정보는 공개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정리해 보면 세원투명성과 의료기관 및 의사들과의 마찰은 양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하면 극복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며 대립할 사항의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비소득공제제도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 후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정착시킨 후, 다른 전문직종에게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원투명성 제고로 세부담 형평성 기대

허병익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적 입장에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일부 토론자께서 정보 보호 등 개인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 의료비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지난해 간소화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정보 누출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어 핵심적인 고려 사항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성실한 납세의무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의료업의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언론 보도에서처럼 개별적인 탈루 사례로 인해 의료업의 세원투명성이 낮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병과별로 보더라도 보험적용 비율이나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세부담 불균형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보인다. 가령 연말정산 간소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비율이 병과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든가 의료기관별 카드결제비율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금액 중 신용카드 비율이 병과별로 차이가 난다든가 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의료업의 전반적인 세원투명성 제고와 병과별 세부담 형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공감하는 바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현재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진료 목적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판단을 전적으로 의사에 의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제도가 개선될 경우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일부 재정 수요 부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데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대신 사회적으로 세부담 불공평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고소득자의 세원이 투명해질 경우 우려할 정도의 세수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 중 하나인 의료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료비 공제 확대방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세수확보 목적만을 위한 왜곡된 정책

박혁수 대한한 의사협회 총무이사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보면 의사집단은 '고소득자'라는 여론 및 국민의식에 힘을 얻어 저인망 어선처럼 '씩씩이' 세수확보를 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추진에 있어 반드시 당근과 채찍을 병용해야 하는 기본적 원리와 광범위한 세원확보 그리고 조세저항 감소와 같은 기본원칙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하고 정당한 방법인지 이번 소득공제제도 확대와 관련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의료인의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본다는 관점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인은 6년간의 수확과정, 4~5년간의 수련기간을 거쳐 수 억원대의 개원자금 부담을 안고 개원한 후 또 안정기까지 수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개원의의 현실을 배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과거 한의사가 고소득자로 탈루율이 높았는지 모르나 현재도 탈루율이 높다고 보는 발표자료를 보고 이는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며,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물어 보고 싶다.

또한 보고서 내용 중 한의원 탈루유형에 해당하는 한의사는 아마 0.1%, 0.01%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세원노출을 위해 의료비소득 공제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론적으로 보약, 성형 등에 대해 소득공제해 준다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더 이용할 것이냐 하는 데 동의할 수 없으며, 결국 고소득층에 대해 공제혜택의 폭을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이는 소득공제제도가 세수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왜곡된 정책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무조건 세수만 확보하면 되는 것

이 아니라 조세저항을 줄이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므로 다음에서 한의사협회의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현재 정부는 한의원의 보약을 세수확보를 위한 우선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보약시장의 대부분이 인삼공사의 홍삼과 건강보조식품에 잠식되어 예전 같이 보약에서 엄청난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말도 안된다.

두 번째, 한의원의 기준경비율이 21.2%인데 현실성이 없으며 적어도 50% 이상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이 공청회와 큰 관련은 없으나 신용카드 가맹수수료율(2.7%)이 너무 높아 이를 인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 방향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한의사들의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로 수 천억원의 행정비용 절감효과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인력소요에 따른 비용증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정부는 한약의 세원노출 여부가 의심스럽다면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 확대 같은 방법이 아닌 한약을 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세원투명화 목적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현재 한의업계가 건강보험료에서 가져가는 수입은 3% 수준에 불과하므로, 한의업계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세원을 전부 노출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정리해 보면 본 공청회에서 발표된 의료비소득공제 확대방안에서는 현재 의료인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과 일반적으로 매도되는 부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만일 한의업계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였다면, 의료비소득공제제도 확대와 같은 저인망식 세원확보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의료인을 비도덕적인 존재로 매도해서는 안 되며, 의료



인은 고소득자라는 여론몰이로 이번 기회에 의료인 수입을 전부 공개시키겠다는 식의 정책방안 역시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세무조사대상 의료인의 30~40% 탈루율을 전체 의료인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도입 타당성에 공감할 수 있는 자료 제시해야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오늘 정책토론회 주제가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인데, 한마디로 탈세방지 대책을 제안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탈세를 막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오늘의 토론회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의료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주장하며 이익을 제기하고 있으나 개인정보가 공공부문에 제공되는 것과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을 동일한 정보노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의료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공공부문의 정보제공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정책결과과정이다. 다시 말해 제도 적용대상 당사자의 자발적인 납득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엘리트 계층인 의사 등이 나름대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런 경우에 한해 제도개혁의 타당성에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영업자를 제외한 의사 등에 대해서만 세원노출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은 수평적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발표자료 어디에도 의사 등이 납득할 수 있는 탈루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단지 자료에서는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의 탈루율이 30~40%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낮은 수치이다. 문제는 전체 모 집단으로 이들 전체의 탈세현황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하며, 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게 국세청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성격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하려면 그런 정도의 자료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만일 자료 제공이 어렵다면 사실상의 사단체 등을 설득할 수 없다. 발표자가 충분한 자료 확보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결론적으로 조세개혁을 하다보면 특정 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이들 피해집단을 설득하는 것이 정책시행에 앞서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막강한 공권력으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책수립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사회 민주화로 인해 정책의 적용 대상을 설득할 수 있는 back up 자료 제시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근로자와 자영자 간 형평성 위한 정책

이희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오늘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의료비소득 공제제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오해가 많이 있어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가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추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마련 중에 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먼저 ‘의료비소득공제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수혜자인 환자와 의료업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겠다.

성형·미용 등의 수술은 과거 20대 여성이라는 특정 계층이 주요 고객이었으나, 현재는 장·노년층으로 고객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사회현상은 물론 조세정책 역시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 존재로서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그동안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성형·미용 등을 포함하도록 세제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성형·미용행위와 의료행위의 개념구분이 매우 모호하여 이의 구분을 위한 행정비용의 낭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도 이들 분야가 공제대상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현상 및 인식변화에 따른 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며, 정부는 대상범위 확대 이후 이루어지는 소득공제 과정에서 상대편 소득이 자동적으로 상호대사(cross-check)됨으로써 의료업계의 소득이 투명화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기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정부는 의료비소득공제제도 확대 목적이 특별히 의료업계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세 방법을 달리하거나 과세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상호대사(cross-check)되는 기능을 활용하려는 차원에 불과함을 밝혀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의료비소득공제제도’ 확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세제에 관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근로자, 자영업자 간 세부담 불공평이다. 근로자는 유리지갑에 비유될 정도로 100% 세원이 노출되는 데 비해 자영업자는 신고에 의존하게 되어 상당부분 드러나지 않아 양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려는 세제당

국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고, 의료비소득공제 확대 역시 의료업계의 세원노출만을 목적으로 과표양성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차원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을 위해 추진하려는 정책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조세형평성 달성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개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거래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과거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이를 의무화하였다. 둘째, 그동안 실물거래 정보 획득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금융거래정보도 함께 활용함으로써 과표양성화에 더욱 도움을 주고자 한다. 셋째,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과 같은 광범위한 제도개선 또한 추진되었다. 광범위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일부 세부담이 확대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범위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큰 그림하에서 부문별로 세원투명성을 위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 의료비소득공제 확대 제도이며, 정부는 결코 의료업계가 세원투명성과 관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현재 정부는 의료업계의 세부담 증가로 인한 반발을 예상하고 이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환자에게 신용카드에 의한 의료비지출에 있어 두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과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업계에서 이중공제 혜택의 문제를 그동안 제기해 왔으며, 현재 이를 분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료업계의 상당한 행정협력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의료비지출을 카



드지출과 현금지출로 구분하는 데 따른 부담이 예상되어 이의 시행을 2007년으로 연기하였다. 또한 한의원, 약국 등의 경우 조제료와 약제비 항목으로 구성된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3%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사실상 약제비는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개선안을 포함시켰다. 셋째, 자료집중기관을 현재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있는데, 만일 의료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비보험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료를 집중할 수 있는 별도기관을 두고자 한다면 그 기관으로 자료집중을 하도록 하는 등 신속적인 자료집중시스템 운영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과표양성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 KPF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정책 ·

2007년 中 수출입관세율 어떻게 달라지나

- 44개 세목 최혜국세율 인하로 제한적 관세인하 실시
 - 중국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는 '2007년 관세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 (세위회 2006년 33호)를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WTO가입 양허안에 대한 이행을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폴리에틸렌 등 44개 세목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농산물과 공산물의 평균관세율이 각각 15.2%와 8.95%에 달하고 평균 수입관세율은 지난해 9.9%에서 9.8%로 0.1%p 인하됨.
 - 수입관세율이 인하된 44개 품목의 평균수입관세율도 2006년 10.37%에서 2007년에는 9.21%로 1.16%p가 인하됨.
 - 중국 정부가 지난해 1,600개 수출입 세목을 조정함에 따라 2007년 중국의 수출입 세목은 총 7,647개에 달함.
 - 중국의 평균수입관세율은 WTO가입 다음 해

인 2002년 전년 대비 3.31%p 하락한 12%에서 > 11%('03년) > 10.4%('04년) > 9.9%('05~'06년)로 지속적으로 인하됨.

- 올해 중국의 평균수입관세율인 9.8%도 당초 중국이 WTO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당수 품목의 수입관세율이 중국의 WTO가입 양허안 내용에 부합하고 있음.
- 이러한 판단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일부 농산품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수입관세율을 인하했으며 2008년에도 화공제품과 세목 수가 많지 않은 일부 제품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인 관세인하가 실시될 전망이다.
- 중국 정부는 자국의 평균수입관세율이 개발도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선진국 수준인 3%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2010년까지 수입관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지속할 예정임.

■ 소맥 등 45개 세목 수입관세쿼터관리제도 적용

- 소맥, 옥수수 등 45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1~15%의 쿼터관세율을 적용함.



- 품목별로는 양모와 면화, 벼와 쌀에 대해 1~9%, 소맥과 옥수수 1~10%, 당류 15%, 털실류에 대해 3%의 쿼터관세율이 적용됨.
- 요소, 중과인산석회, 삼원복합비료 등 3개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1%의 잠정수입관세율이 적용됨.

■ 일부 제품 잠정세율 적용으로 추가 관세인하 효과 있어

-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로 석탄, 석재 등 자원류를 포함한 총 309개 세목에 대해 최혜국세율 이하의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함.
 - 이에 따라 309개 품목의 평균 최혜국세율이 8.50%에서 잠정수입관세율이 적용되면서 3.63%로 크게 낮아짐.
 - 중국은 2006년 11월 1일부로 58개 세목에 대해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해 왔으며 2007년 수출입세칙에는 이들 품목 중 53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포함품목의 세율 변동은 없음.
 - 미포함 품목인 HS Code 3102.1000, 3103.2000, 3105.2000, 3105.3000, 8442.3020 등 5개 세목은 향후 별도 공고가 없는 한 잠정수출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고에너지, 자원류, 고오염 제품 수출관세 징수

- 중국은 고에너지, 고오염, 자원성 제품의 수출 제한기조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올해에도 이들 품목에 대해 잠정수출관세를 부과함.
 - 올해 발표된 총 174개 잠정수출관세 적용 품목 중 106개 품목은 2006년 11월 1일부로 시행된 110개 잠정수출관세 조정품목과 중복되며 이들 106개 품목의 세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변동 없음.
 - 미포함 4개 품목 중 HS Code 7205.2100 합

금강 분말은 2007년 잠정수출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향후 별도 공고가 없는 한 잠정수출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그 외 미포함 품목인 HS Code 4409.2019는 세번이 4409.2910으로 조정되고 HS Code 7401.1000과 7401.2000도 올해부터 7401.0000으로 세번이 통합돼 수출잠정관세율이 적용되나 세 번 조정 후에도 잠정수출관세율은 종전과 동일함.

- 품목별로 보면, 홍주석, 남정석 및 규선석, 철광, 동광 및 그 정광 등 8개 품목과 침엽수와 활엽수 등 6개 품목, 페로얼로이, 철과 비합금광 등 32개 품목 등에 대해 10% 잠정수입관세율이 부과됨.
 - 요소의 경우 기간별로 상이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의 잠정수출관세율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의 잠정수출관세율이 적용됨.
 - 알루미늄괴, 알루미늄선 등 18개 품목에 대해 잠정수출관세율이 0~15%로 적용되며, 아연괴 등 4개 품목은 0~5%, 벤젠은 영세율이 적용됨.

■ 개인휴대 또는 우편반입 사치품 수입관세 대폭 인상

- 중국은 소비세 조정과 맥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개인휴대 또는 중국 내 우편반입된 골프공과 골프채,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크게 인상함.

2007년 개인휴대 우편반입화물 수입관세율

(단위 : %)

세번	물 품 명	세율
1	책, 간행물, 교육전용영화,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원본, 비디오테이프, 프, 금, 은 및 금과 은으로 만든 제품, 식품, 음료, 세번 2,3,4 및 각주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상품	10
2	방직품, 픽업카메라,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및 기타전기용구, 카메라, 자전거, 손목시계, 시계(부품포함)	20
3	골프공 및 도구, 고급손목시계	30
4	담배, 술, 화장품	50

주1 : 피임용품과 피임약의 경우, 해관이 규정한 개인사용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해관규정에 따라 반송하거나 물품수입절차에 근거해 수입통관 및 검역을 실시함

주2 : 상술한 고급손목시계는 납세 후 가격이 1만위안 이상인 제품을 가리킴

■ 원산지가 한국 등 52개국인 수입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

- 올해 중국은 원산지가 칠레, 아세안, 한국,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홍콩, 마카오,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52개 국가(지역)의 수입제품에 대해 국가별, 품목별로 차등을 두어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국가별로는 칠레가 원산지인 수입제품 총 6,781개 품목과 파키스탄이 원산지인 2,190개 품목, 아세안 10국이 원산지인 5,375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 이하의 협정세율을 적용함.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국인 한국, 인도, 스리랑카와 라오스, 방글라데시의 일부 제품을 포함, 1,673개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라오스와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165개 품목을 별도로 지정 저개발국가에 대한 특혜세율을 적용함.
 - CEPA협정에 따라 홍콩이 원산지인 1,449개 품목과 마카오가 원산지인 648개 품목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앙골라 등 아프리카

카 28개국이 원산지인 수입품 200개 품목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함

[KOTRA, 경제무역 2007-01-08]

EU 집행위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발표

- 환경보전 및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목적
- 환경에너지 기술력 기반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 추구

■ 환경보전 및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유럽의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조치(comprehensive package) 발표, 이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역내 단일 에너지 시장 실현을 위한 유럽연합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함.
- 최근 유럽에서는 이상 난동이 지속되는데다 러시아와 주변국 간 가스 분쟁이 심각해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현안으로 대두됨. EU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유럽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현재의 50% 수준에서 오는 2030년에는 65%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집행위는 이러한 위기를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 조치를 다각도로 마련해 왔으며, 이번 제안에 구체화돼 있음. 특히 집행위는 현재의 위기를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산



업 구조 자체를 개선해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 역내 단일 에너지 시장 실현

- 에너지원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투자를 원활케 하고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 폭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유럽의 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내단일시장(internal single market) 구축이 급선무라는 것이 집행위의 판단임.
- 이를 위해 집행위는 에너지 생산과 유통을 보다 엄격히 구분하는 공동체 규정과 회원국 국내 규정 강화를 추진해 각 회원국이 최소 10% 이상 역내 다른 국가의 에너지를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임.

■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

- EU는 오는 2020년까지 역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친환경적인 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바이오연료 개발에 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으로 2007년 중 바이오 연료 사용 확대를 강제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7년간 친환경 에너지 개발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50% 이상 늘릴 예정
- 현재 원자력발전은 EU 에너지 소비량의 14%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동체 전기생산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집행위는 원자력 의존도를 각 회원국의 자원에 맡기고 있으나 향후 원자력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은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토록 강제할 방침

■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통한 사용량 감축

- 집행위는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할 계획으로써 성공할 경우 EU는 현재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13% 줄이게 되며, 이는 연간 1,000억유로의 비용감소 및 78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 유도
-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집행위는 차량·전자제품·건물 등 에너지 사용원의 효율성을 규제하는 법규를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국제규범 체결을 적극 추진할 방침

■ 환경 및 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강화

- 집행위는 환경문제가 지닌 월경적(trans-boundary)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필수적임에 따라 역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
- 집행위는 에너지 현장 조약(ECT), 배출가스 거래권이 역외적용 확대, 양자간 에너지-환경 협정 체결 추진 등을 통해 환경분야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방침
- 이번 집행위의 제안은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환경-에너지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추구해 궁극적으로 EU의 국제사회에서의 산업-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KOTRA, 경제무역 2007-01-09]

中, 외국기업에도 토지사용세 징수

토지사용세 3배로 인상

올해부터 외국기업들도 토지사용세를 매년 한 차례 내야 한다. 중국 국무원은 '토지사용세 집행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조례는 중국의 국내 기업들이 매년 한 차례 내는 토지사용세를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토지사용세를 3배로 올린 것이 주 내용이다.

지금까지 외국기업들은 중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때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한 차례 토지매입(토지사용료)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났으나 앞으로는 매년 토지사용세를 내야 한다.

토지사용세는 대도시의 경우 1㎡당 0.5~10위안이었으나 올해부터 1.5~30위안으로 대폭 상향됐다. 중소도시는 0.4~8위안에서 1.2~24위안으로, 소도시는 0.3~6위안에서 0.9~18위안으로 조정됐다. 현금 지방이나 공업구 등은 0.2~4위안에서 0.6~12위안으로 조정됐다.

토지사용세 부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토지 사용면적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토지사용세를 이같이 상향 조정하고 대상 범위를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건설용지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토지사용세 부과와 함께 외국기업에 대해 매기는 기업소득세율을 국내기업과 통일하는 법안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할 예정으로 있어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조치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중국 정부는 하지만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사용하는 토지나 국가재정 부문의 사업용 토지, 종교, 공원, 유적지, 도로, 녹화지대 등을 위한 공용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2007-01-03]

독일, 올해 아이 낳으면 월 230만원 지원

독일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0년대부터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고민하던 독일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특단의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베이비 붐이 일고 있는 이웃 나라 프랑스와 유럽 최고 출산율의 아이슬란드를 모델 삼아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출산과 육아를 위한 고액의 부모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모수당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앞으로 육아휴직기간에 12~14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매달 최저 300유로에서 최고 1,800유로(약 230만원)를 보조받게 된다.

종전에 출산 후 1년 동안 월 최고 450유로를 지급하던 것과 비교하면 최고 4배까지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유럽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이 같은 출산장려책을 통해 앞으로 출산율을 유럽 중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독일 여성의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 평균치)은 1.36명에 불과해 유럽에서 바닥권을 맴돌고 있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2.05명, 프랑스 1.94명, 노르웨이 1.84명 등이다. 독일 정부는 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인구가 현재 8,240만명(외국인 730만명 포함)에서 2050년에는 6,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세대 간의 계약'인 연금제도의 붕괴는 물론 숙련노동자와 창의력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정치·경제·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다.

독일 여성의 출산기피 풍조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33%에 달하고, 44%는 자녀 없이 지내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졸 취업 여성의 40~45%가 자녀 없이 생활하고 있다.

자녀에게 사랑이 없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나쁜 어머니를 뜻하는 '라벤무터(Rabenmutter)'가 되기 보다는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어 독일 정부와 사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한때 같은 고민을 안고 있던 프랑스가 합계출산율 1.94명에 달할 정도로 베이비 붐 조성에 성공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가 과감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 부모수당을 대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부모수당법에 따르면 자녀를 갖는 직장인의 경우 세금공제 후 마지막 월급의 67%를 세금공제 없이 12개월 동안 지급받게 된다. 편모나 편부의 경우는 14개월 동안 부모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탁아소와 보모 등에게 지급되는 돈도 33%는 세금공제를 받게 된다. 이 혜택은 아이가 15세 될 때까지 계속된다.

자녀 출산 보조금 지급으로 출산율이 급증하는 국가로는 유럽에서 아이슬란드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2000년 출산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아이슬란드에서는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에게 세금공제 후 급료의 80%가 6개월 동안 지급되고 9개월까지 수령액이 인상된다. 수령액은 상한선이 없고 최하 월 440유로, 최고 5,200유로 정도다.

그리고 아기의 아버지는 3개월 이상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04년에는 아기 아버지의 90%가 보육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아이슬란드는 2002년 1.9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4년엔 2.03명, 2005년에는 2.05명으로 급등했다.

출산보조금 정책이 마냥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다. 스웨덴의 경우 지금은 그 효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초기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스웨덴 정부는 1974년부터 월 570~2,700유로의

출산장려 보조금을 지급했고 아버지 보육휴가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으나 효과가 적어 197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60명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

그러나 1984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기 시작해 1990년에는 2.13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73명 선에 머물고 있다. 이는 재정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예이기도 하지만 효과가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 하락은 지금까지 직업 여성들의 출산 의욕을 부추길 만한 정책적 배려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이 내놓은 출산장려책의 실효성 여부는 합계 출산율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인 한국 입장에서는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세계일보 2007-01-02]

재정정책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엔화 절상→금리 인하→대출 확대→부동산 투자→
거품 붕괴

1985년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 미국 고위 협상 대표는 일본 대표에게 '125' 라는 숫자가 쓰여진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달러당 250엔대에서 움직이던 엔화 환율을 125엔으로 낮추라는 미국측의 최후통첩이었다.

전후 경제 회복에 성공한 일본은 혁신적 제품, 효율적 생산방식 도입 등을 통해 1970년대부터 미국 소비재 시장을 장악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커지자 미국은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결국 "정부의 '협조 개입' 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내용의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일본인에게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한꺼번에 선물해 준 '버블 형성과 붕괴' 의 출발점은 바로 플라자 합의다. 이 합의 후 엔화는 가파르게 절상(달러화까지 하락)됐다.

엔화 가치가 절상되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과 같은 가격에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더라도 (이전보다 가치가 하락한) 달러로 돈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 더 싸게 물건을 팔아도 (가치가 높아진) 외국 통화로 돈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더 생긴다.

결국 일본 기업들은 수출 시장에서 훨씬 불리해진다. 수출로 부강해진 나라인 일본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금리를 낮췄다.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싼 값에 자금을 조달받아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실제 1986년부터 1987년 초까지 일본의 정책금리는 연 5%에서 2.5%로 떨어졌다.

은행들은 갖고 있던 자금도 풀었다. 하지만 풀린 자금은 산업자금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 이상으로 풀린 자금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흘러갔다.

가장 손쉬운 투자처는 주식과 부동산이었다. 거품이란 쉽게 말해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초의 거품 사례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툴립인데, 툴립 한 송이가 집값과 맞먹을 정도로 오르기도 했다.

물론 나중에 툴립 가격은 제 자리를 찾았고 높은 가격에 툴립을 샀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자살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적 본성은 수백년 전의 역사적 교훈도 잊게 만든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일본 닷케이 평균주가는 1980년대 후반 3만 9,000엔까지 폭등했다(참고로 현재 닷케이 주가는 1만 7,000엔 수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들어 집값도 급등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적었다. 따라서 일단 땅을 사놓고 활용하지 않더라도 큰 세금 부담 없이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었다.

기업들도 거품 형성에 동참했다. 본래의 사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다.

제조업 같은 사업을 해보야 10% 이익을 남기기도 어렵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제조업체들조차 투자회사로 변모했다.

결국 1990년대 초 일본 땅값은 평균 50%나 올랐다. 50%면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이는 수십년 간 가격 변화가 없는 일본 시골지역 땅까지 포함한 것이다.



도쿄나 나고야 같은 대도시는 200~900%까지 올랐다.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현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튼튼 사례처럼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거품은 언젠가 반드시 터지게 돼 있다. 그것도 한순간에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도 그랬다. 1990년대 초 일본 정부는 토지 대출을 규제하는 등 일련의 긴축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초저리 융자를 해오던 은행이 돈을 줄을 조였다.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자산가격은 폭락했고 높은 가격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였던 수많은 개인과 기업이 큰 손해를 봤다.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은행으로 돌아왔다. 대출이 부실해지면서 파산하거나 합병한 금융회사가 50곳을 넘었다.

은행이 파산하니 멀쩡하게 영업하던 기업도 대출금을 구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다 파산하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났다.

이후 일본 경제는 10년이 넘는 기간 장기 불황을 겪었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다.

■ 어떻게 탈출했나

거품 붕괴로 촉발된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안간힘을 썼다. 대표적인 정책이 정부지출 확대였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소비를 부양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이 늘어나 이전 재정지출을 만회하는 케인스식 처방이 성과를 거둘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정책은 먹혀들지 않았다.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과 기업의 정부 의존 성향만 커졌고 과도한 재정지출로 국가부채가 700조엔을 넘어서는 등 부작용

만 속출했다.

2001년 4월 고이즈미 내각 출범을 계기로 이런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전면 수정됐다.

고이즈미 내각은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인력 축소 등 정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국가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공공투자도 대폭 삭감해 1990년대 약 40조엔대에서 2005년에 23조원으로 축소했다.

중신 고용을 관행으로 삼았던 일본 기업들도 단가 이 세대의 본격 은퇴, 임금 피크제 도입 등 구조개혁에 나섰다.

이와 함께 투자비 세액공제, 규제 혁파 등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정책도 상당한 효과를 봤다.

중소기업들은 금융개혁을 통해 은행을 건전화시켜 자금의 선순환도 촉진했다. 작은 정부, 민간 활력 제고라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성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정책과 민간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상승작용을 하며 일본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였고 200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경기회복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다.

물론 일본 경기 회복세를 냉소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GDP 성장률이 본격적인 활황이라고 할 만큼 높은 수준도 아니고 좋아진 기업 실적도 고용비용 절감의 효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장기 불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일본 경제는 분명 완만하게 회복하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한국경제 2007-01-12]

일본 정부, '정년 70세' 연장 추진

고령화 영향, 숙련노동자 부족 메우기 위해

'단카이 세대'로 불리는 일본형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올해부터 몰리면서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1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에는 1947년부터 49년까지 태어난 단카이 세대의 인구가 67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3년 동안 60세 정년에 걸쳐 직장에서 퇴직하는 수가 2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

일본 정부는 성장의 견인차였던 단카이 세대의 대거 퇴직으로 숙련 노동력 부족사태를 초래하는 '2007년 문제'의 대책으로 지난해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 2013년까지 기업에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출생률 저하로 노동력 인구가 향후 10년간 200만명이 자연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2012년에는 단카이 세대가 65세에 도달, 재차 대량퇴직을 피할 수 없게 돼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지난해 일본은 논란 끝에 근로자의 법정정년을 5년 더 늘려 65세로 하기로 했다.

일본 후생성은 법정 정년을 9년 동안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려 2013년에는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사카구치 후생노동성 장관은 "고령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근로자 정년연장은 노동력 확보와 함께 연금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2004년까지 60살에 퇴직하면 한 달에 약 200만원의 사회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고령화로 연금수령자가 늘면서 연금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수령대상을 65살로 높였고 근로자 정년도 65세로 늘린다는 것. 일본 재계는 정년연장에 줄곧 반대

해왔으나 대기업 3년, 중소기업 5년의 유예기간을 둔 단계적 방안에 합의했다.

[내일신문 2007-01-02]

獨, 숙련노동자 대탈출로 국가경쟁력 위기

세계 3위의 경제대국 독일이 엔지니어와 의사 등 숙련 노동자의 대탈출과 이민자 유입 감소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 국가 경쟁력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3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는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는 독일 숙련노동자 수가 지난 2005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반면 까다로운 수용 조건 때문에 독일로 오는 이민자 수는 오히려 줄어 기업체들의 인력에 결정적인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숙련노동자들이 대거 국외로 탈출하는 주요 인으로는 과중한 세금부담과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 경직된 근로조건 등이 꼽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는 지적했다.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해외 취업자 떠난 독일인은 14만 4,815명으로 2002년에 비해 25%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2005년도는 특히 1968년 이후 처음으로 해외로 떠난 독일인 수가 귀국자 수를 웃돈 해로 기록됐다.

반면 2005년 독일에 이주한 외국인 수는 57만 9,301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1%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 엔지니어와 학자, 의사 등 숙련노동자의 국외 탈출 추세는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두뇌 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 독일 재계와 정계 일각에서는 숙련



도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법 개정과 함께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고급인력을 고용하려 해도 적격자를 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는 기업체가 전체의 16%선에 이르는데 이 같은 구인난은 고급인력의 국외 탈출 사태에 일부 기인한다.

엔지니어 직종의 구인난이 가장 심해 2만 2천개의 일자리를 놓고 있는 실정이며 그 중에서도 건축기사와 전기기술자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숙련노동자 부족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괴롭히고 있는 저출산과 전후 베이비 부머(baby boomer)세대의 대거 은퇴로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실업률이 10.2%로 미국의 2배에 이르고 있어 비우호적인 이민법을 느슨하게 고치려 해도 정치적 결립될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05년 현재 해외에 진출한 독일인 의사는 1만 2천명 가량 되는데 이들의 해외취업 요인 중 하나는 국내의 최고 2배에 이르는 급여수준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독일어권인 스위스에서 새 보금 자리를 마련했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독일인 유입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반면 의사들의 국외 탈출로 독일 병원들은 의사가 5천명이나 부족해 아우성이다.

학자들도 국외로 대거 빠져나가자 독일의 대학, 전문대학 및 여타 교육기관이 독일 학자교류 서비스라는 네트워크를 구성,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학자들의 귀국을 유인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인들은 국내에서 자신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제한된 승진 기회, 급여의 연금 적립 비중 과다 등을 꼽고 있다.

[연합뉴스 2007-01-03]

유로지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요인과 전망

유로지역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2004년 556억유로 흑자에서 2005년 82억유로 적자로 반전된 데 이어 2006. 1~9월중 210억유로 적자로 그 폭이 확대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R&D투자 미흡으로 인한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 약화, 중국의 저가공세에 따른 수입 확대, 유가 상승, 주요 회원국의 수입유발적 수출 구조 등으로 상품수입 증가율이 상품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데 주로 기인. 또한 고물가 구조를 가진 일부 회원국의 가격경쟁력 저하도 경상수지 적자 확대요인으로 작용.

유로지역은 성장 둔화와 유가 안정 등으로 인한 수입증가율 둔화로 경상수지 적자의 대GDP 비율이 2006년 0.3%에서 2007년중 0.1% 내외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 등은 2007년 중에도 전년에 이어 GDP의 9~10%에 이르는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1. 최근의 경상수지 동향

- 유로지역 경상수지는 2004년 556억유로 흑자에서 2005년 82억유로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006. 1~9월중에는 210억유로 적자를 기록하여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
 - 상품수지는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4년 1,035억유로 흑자 → 2005년 482억유로 흑자 → 2006. 1~9월중 97억유로 흑자로 흑자폭이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된 주요인으로 작용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05년 360억유로 흑자에 이어 2006. 1~9월중에도 257억유로의 흑자를 유지
 - 소득수지는 외국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수익 증대에 힘입어 2005년중 222억유로 적자에서

2006. 1~9월중 28억유로 적자로 크게 개선
 - 경상이전수지는 EU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남에 따라 2005년 702억유로 적자에 이어 2006. 1~9월중 536억유로 적자를 기록

유로지역의 경상수지¹⁾ 추이

(단위 : 억유로, %)

	1999	2000	2002	2004	2005	2006.1~9
경상수지	-239	-888	570	556	-82	-210
상품수지	752	316	1,279	1,035	482	97
서비스수지	-181	-212	172	308	360	257
소득수지	-351	-451	-395	-199	-222	-28
경상이전수지	-459	-541	-486	-588	-702	-536
경상수지/GDP	-0.4	-1.3	0.8	0.7	-0.1	-0.3

주: 1) 계절조정 전
 자료: ECB

- 회원국별로는 스페인(648억유로) · 이탈리아(278억유로) · 프랑스(208억유로) 등이 2006. 1~9월중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한 독일(672억유로) · 네덜란드(410억유로) 등과 대조
- 대다수 회원국의 경우 상품수지의 흑자 정도가 경상수지를 좌우

유로지역 주요 회원국의 경상수지¹⁾ 추이

(단위 : 억유로)

	2002	2003	2004	2005	2006.1~9
프랑스	154	70	-56	-270(-259)	-208(-204)
이탈리아	-100	-174	-125	-221(1)	-278(-97)
스페인	-238	-275	-442	-666(-690)	-648(-593)
그리스	-102	-113	-107	-143(-275)	-159(-261)
포르투갈	-106	-81	-104	-136(-168)	-100(-124)
독일	434	403	819	926(1,404)	672(1,028)
네덜란드	116	262	418	390(373)	410(289)

주: 1) 계절조정 전, 유로지역 회원국 간 거래 포함 () 내는 상품수지
 자료: 각국 중앙은행

2. 경상수지 적자 확대 요인

(R&D투자 미흡에 따른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 약화)

- 유로지역은 R&D 투자비중(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5.8%)이 미국(8.5%), 일본(9.6%) 등에 비해 훨씬 낮으며, 특히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및 특허출원이 미흡하여 산업경쟁력이 약화
- 첨단기술에 대한 R&D 투자비중은 유로지역이 전체 R&D 투자의 28.4%(2000~2002)로 미국(46.0%)과 일본(46.8%)에 비해 훨씬 낮으며,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건수도 유로지역이 전체 건수의 38.7%인 데 비해 미국 및 일본은 60% 수준

* 첨단기술제품의 수출비중(2000~2001년중 총수출 대비 20.4%)도 미국(31.3%), 일본(36.3%)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제품의 기술수준별 R&D투자 및 특허출원 비중¹⁾

(단위 : %)

		R&D투자			특허출원 건수		
		유로지역	미국	일본	유로지역	미국	일본
1990	첨단기술	32.8	37.5	41.6	31.8	43.1	58.0
~1994	중급기술	60.1	56.6	44.9	57.2	43.6	34.3
2000	첨단기술	28.4	46.0	46.8	38.7	55.9	66.5
~2002	중급기술	64.3	47.5	43.6	51.3	34.8	27.2

주: 1) 고급 · 중급 · 저급기술 간의 상대 비중
 자료: ECB, OECD 등

- 중 · 저급기술 제품시장은 중국, 동구권 등에 의해 빠른 속도로 잠식됨에 따라 유로지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03년 16.0%에서 2005년 14.9%로 낮아짐



주요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유로 지역	16.4	14.5	15.9	16.0	15.8	14.9
미 국	16.7	18.5	17.5	16.3	15.7	15.6
중 국	5.8	6.2	7.3	8.1	8.5	8.7
영 국	5.7	5.3	5.4	5.2	5.1	4.7
일 본	4.6	5.3	4.8	4.6	4.5	4.5

자료: EU 통계청, IMF

(중국 등의 저가 공세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 중국 등 아시아국가의 저가 공세와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수입이 빠르게 확대
 - 대 중국 상품수지는 2003년부터 對 중국 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20%를 상회하면서 2005년 740억유로, 2006. 1~8월중 574억유로 적자를 나타내 수입상대국 중 최대치를 기록

유로지역의 지역별 상품수지¹⁾ 추이

(단위 : 억유로)

	1999	2000	2002	2003	2004	2005
미 국	219	304	584	599	644	471
영 국	304	296	560	599	515	261
동 구 10개국 ²⁾	170	184	186	209	256	199
아 시 아	-597	-964	-540	-838	-1,158	-948
(중 국)	-212	-323	-318	-518	-740	-574
(일 본)	-271	-329	-196	-207	-189	-143
러 시 아	-97	-234	-150	-210	-323	-243
아 프 리 카	-6	-173	-83	-89	-222	-226

주: 1) 계절조정 후

2) 폴란드 · 체코 등 2004. 5월 EU에 가입한 10개국

자료: ECB

- 또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수입비중이 2004년 12.1%에서 2006. 1~8월중 19.0%로 크게 상승

석유류 수입비중 추이(전년동기 대비)

(단위 : %)

	1999	2000	2002	2003	2004	2006.1~8
국제유가 ¹⁾	23.59	19.46	27.07	34.58	53.16	66.26
석유류 수입비중	8.0	12.0	10.7	12.1	15.2	19.0
전체 수입증가율	9.2	30.7	-3.0	8.51	3.6	2.4

주: 1) Dubai 기말

자료: EU 통계청

(수입유발적 수출구조)

- 수입유발적 수출구조로 인해 수출이 늘어날수록 중간재 등 수출용 수입도 늘어나 수출확대 효과가 반감
 - 수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이 2005년 8.1%에서 2006. 1~9월중 13.4%로 확대되었으나 중간재수입 증가율도 같은 기간중 15.8%에서 19.9%로 확대
- 이에 따라 수출물량 증가율과 수입물량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가 1995. 1~2003. 12월중 0.53에서 2004. 1~2006. 8월중 0.84로 높아짐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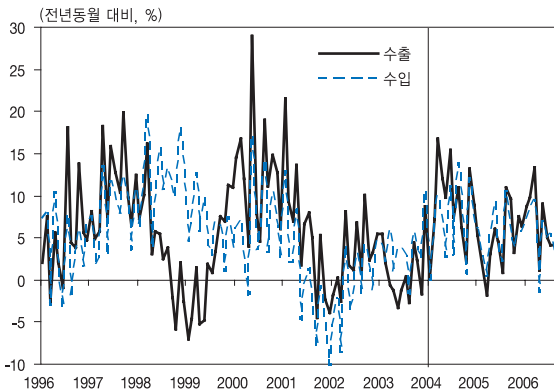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구분 ¹⁾	2001~2003	2004	2005	2006.1~9
소비재(23.2)	2.9	6.3	6.9	10.7
중간재(59.5)	-2.2	9.4	15.8	19.9
자본재(17.3)	-3.4	12.0	10.7	4.4

주: 1) () 내는 2005년중 용도별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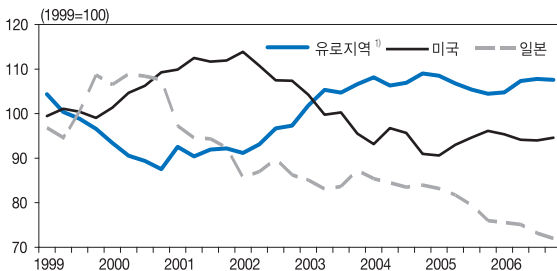
자료: EU 통계청

유로지역의 수출입물량 증감률



- 2003년 중반 이후 유로지역의 실질실효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경쟁력 저하
 - 미국의 경우 2002. 1/4~2006. 3/4분기중 실질실효환율이 16.9% 하락하고 일본도 15.9% 하락하였으나 유로지역은 같은 기간중 18.0% 상승

주요국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주: 1) 이탈리아 · 스페인 · 그리스 · 포르투갈
 자료: EU 통계청, EU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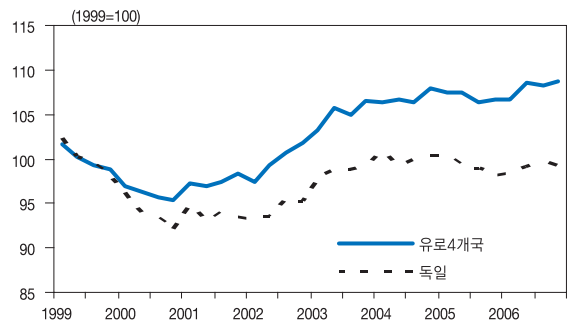
- 이는 이탈리아 · 스페인 · 그리스 · 포르투갈 등 유로 4개국의 고물가로 이들 국가의 실질실효환율이 대폭 상승한 데 주로 기인

유로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1999~2005	2005	2006.1~9
이탈리아	2.4	2.2	2.3
스페인	3.1	3.4	3.9
그리스	3.2	3.5	3.3
포르투갈	3.0	2.1	3.2
평균	2.9	2.8	3.2
독일	1.4	1.9	1.9

유로4개국¹⁾ 및 독일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주: 1) 이탈리아 · 스페인 · 그리스 · 포르투갈
 자료: EU 통계청

3. 향후 전망

- 2007년중 유로지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역대 성장 둔화, 유가 안정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2006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OECD(2006. 11)는 경상수지 적자가 2006년 313억달러에서 2007년중 153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의 대GDP 비율은 2006년 0.3%에서 2007년 0.1% 내외로 개선 예상



유로지역 실질GDP 및 경상수지/GDP 비율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

	전망기관	2006*	2007*	2008*
실질GDP	ECB (2006.11)	2.7±0.2	2.2±0.5	-
	World Bank (2006.12)	2.4	1.9	1.9
	OECD (2006.11)	2.6	2.2	2.3
경상수지 /GDP 비율	Deutsche Bank (2006.12)	2.7	1.7	1.9
	OECD (2006.11)	-0.3	-0.1	-0.1
	Deutsche Bank (2006.12)	-0.3	-0.1	0.0
	Goldman Sachs (2006.12)	-0.2	-0.1	-0.1

- 한편 스페인 · 그리스 · 포르투갈 등은 수출증가율 둔화(7% 내외 → 5% 내외)로 인해 2006년에 이어 2007년중에도 GDP의 9~10%에 이르는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 스페인 - 8.8% → -9.2%, 그리스 - 10.8% → -10.1%,
포르투갈 - 8.8% → -9.2%

-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국을 중심으로 수입상 대국에 대해 환율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 대두

* 2006. 11. 7 前 EU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총리 Juncker는 위안화의 저평가가 유로지역의 수출을 위협하고 있으며 엔화 가치도 일본 경제의 회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중국은 2006년부터 영국에 이어 제2의 유로지역 수입상대국*으로 부상한 데다 유로지역의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수년간 수입상대국 중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표면화될 가능성

* 유로지역의 2005년중 상품수입 상대국 비중 :

영국 12.4%, 미국 9.9%, 중국 9.7%, 러시아 6.0%, 일본 4.3%

[한국은행, 주간해외정보 2007-01-03]

日 끊임없는 개혁 '新전성기'

1950년대 미국 주도의 전후 재건 프로그램과 한국 전쟁의 특수로 경제부흥의 구조적 기반을 다진 이후 60년대 고도성장, 70년대 오일쇼크 극복과 저에너지 산업구조로 발빠른 전환, 80년대 메카트로닉스 혁명 선도 등을 거치면서 '일본적 시스템'은 전 세계 산업과 경영의 모범모델로 환영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랄까. 일본의 '엑셀이 잔뜩 밟힌' 성장은 엔화 자산가치 상승을 야기, 국내의 주식, 부동산 등에 자금이 과잉 집중되는 이른바 '거품(버블) 경제'를 촉발시켰다. 자금 과잉과 비생산 부문으로 유입에 따른 생산성 왜곡은 일본 정부의 성급한 '급브레이크' 정책을 낳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 급락을 초래해 전후 최대의 장기불황으로 이어졌다.

■ '잃어버린 10년' 왜 초래됐나

일본 정부는 1985~1987년 대미수출의 경상수지 누적 등으로 발생한 엔고(高)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5조엔 규모의 공공투자와 1조엔 감세를 포함하는 긴급 경제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책은 경제위기에 따른 사후 처방 성격보다는 대일 무역역조로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한 미국의 엔화절상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예방 조치의 성격이 강했다. 이미 엔고의 영향으로 일본의 실물경기는 지가와 주가가 급등하는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을 맞이하고 있었다. 거품경제가 부풀어 오른 것이다.

일본 국내외 전문가들 대부분은 거품의 원인으로 일본 정부의 금융완화를 지목했다.

계명대학교 김도형 교수(일본학과 · 국제경영 전공)는 "80년대 중반 화폐가치가 오른 엔화에 대한 해외 수요를 허용하는 금융자유화 조치로 예금금리의 완전 자유화, CP(기업어음) 해금 등을 단행, 대기업 자금이

은행권을 이탈해 비생산적 분야로 몰렸고, 은행 또한 부동산 등 토지담보유자로 쏠리는 현상을 낳으며 거품현상을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지가 폭등과 소비과잉 현상으로 사회문제가 촉발되자 일본 정부는 89년에 소비세 도입과 공정금리의 수차례 인상, 이어 90년 금융기관의 부동산융자 총량규제를 발동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급속한 긴축일변도 정책은 90년 초 주가 폭락, 91년 지가의 동반하락을 가져왔다. 거품경제가 터져 버린 것이다.

거품붕괴는 부동산 대출을 확대했던 금융기관에 자산손실을, 주가·부동산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치중했던 기업에는 자금위기를 가져왔다. 기업들의 금융채무 상환 지연과 채권 조기회수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팽창시키는 악순환을 불렀다. 이 당시에 주가와 지가 하락에 따른 자산손실만 1,000조엔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거품붕괴에 따른 자산 디플레이션은 경기 부진과 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본을 91년 2/4분기부터 장기불황의 긴 터널로 몰아넣었다.

■ 장기불황 어떻게 극복했나

일본을 비롯한 안팎의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불황 대책 내용을 고이즈미 내각 출범을 기점 전후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

즉, 고이즈미 총리 이전의 일본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전통적 경기부양책으로 비록 경기회복의 단초는 제공했으나, 상승과 후퇴의 불안정성을 보이는 시행착오의 시기로 평가했다. 반면, 2001년 4월 들어선 고이즈미 내각은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해 재건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일본경제 구조개혁정책의 평가’ 보고서에서 △정책당국의 경제문제 인식 전환 △신속, 강력한 정책결정 메커니즘 확립 △축소지향적 공공부문 개혁 △규제 및 공적 서비스에서 민간과 지방정부 역할 확

대 △민간부문 구조개혁 유도 등을 고이즈미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고이즈미 개혁으로 일본기업들은 2002년부터 2~3년간 과잉채무, 과잉고용 비용을 축소하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야 했다. 94년 말 약 190조엔에 이르던 과잉채무 잔고는 2002년 이후 50조엔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고용비용 또한 과잉인력의 절대 비중을 차지했던 단카이 세대의 본격 은퇴,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적정수준에 도달했다.

또한 재정악화의 한 축이었던 공공투자 지출도 대폭 삭감, 90년대 전반기 약 40조엔대(GDP 대비 약 8%)에서 2005년 약 23조엔대(GDP대비 4.8%)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또, 일본경제 부활에 민간기업의 자구노력도 큰 역할을 했다. 정부의 금융권 부실채권 해소 주력에 힘입어 자본금 1억~10억엔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2003년 이후 자금조달 확보를 통해 노후설비 교체 등 설비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 투자 선순환을 가져왔다.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상승작용하면서 지난해 11월 일본 경제재정성은 월례경제보고를 통해 “2002년 2월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가 2006년 11월까지 이어져 전후 최장인 58개월 연속 호황을 기록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소비 회복이 본격성장의 관건

그러나, 일본 경제의 본격 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비용의 절감이 임금 억제로 작용, 기업 실적으로 전가됐을 뿐 소비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GDP성장률도 본격 성장세를 이끌 정도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중론은 ‘잃어버린 10년’의 재연을 우려한 성격이 짙으며,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한 견해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분명 일본이 ‘신(新) 전성기’를 향해 완만한 조정



기를 헤쳐 나가고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파이낸셜뉴스 2006-12-31]

日, 미취학아동 의료비 무료

도쿄도 남동쪽에 위치한 세타가야(世田谷)구는 아이울음 소리를 듣기 힘든 곳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출산율은 0.80명. 남녀가 결혼해 한 명도 낳지 않는 집이 많다는 얘기가.

일본 전국 평균(1.25명)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쿄도역 인근에 위치한 고도모 육아지원센터에서 만난 주부 안도우씨(32)는 “6살과 3살 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남편과 한 명을 더 낳기로 합의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내년부터 출산·육아지원이 적지 않아 아이를 키울 만하다는 게 그의 얘기가. 세타가야구가 내놓은 저출산 극복 해법은 ‘현물공세’다.

다나가 시게루 고도모 육아지원센터장은 “구의회에서 12월 1일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교육비 의료비를 모두 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육시설도 완벽에 가깝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저출산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과 러시아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비교적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도 출산율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에 걸림돌이 되고 국민들의 연금부담을 높이는 등 세대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 노력과 함께 과감한 재정투입, 출산·보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저출산 위기를 감지하고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엔젤플랜(1995~1999년) △신엔젤플랜(2000~2004년)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펴왔으나 신통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따라 지난 6월 출산지원책을 강화한 ‘신신 엔젤플랜’을 발표하고 출산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올해부터 아동수당(둘째 아이까지는 각각 월 5,000엔, 셋째 아이부터는 1만엔) 지급대상을 ‘3살 이하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초등학교 아동 가정’으로 대폭 확대했다.

미취학아동의 의료비는 전액 무료 지원키로 했다.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은 20~30% 정도다.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일본 내각부 소자화·고령화대책팀의 마쓰다 마사노부 과장은 “앞으로 출산지원과 함께 양성평등적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교 국가권인 싱가포르도 지난해 출산율이 1.24명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산 위기의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된 것은 1976년부터이다. 1970년 출산율이 3명대였던 것이 30여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푹 떨어진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1년 들어서야 출산 보너스와 감세 인센티브 정책 등 대중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억달러의 세금 감면과 보조금, 1억달러 이상의 출산 보너스가 지원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6월까지 출생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0명 증가했다.

[한국경제 2006-12-28]

정책흐름

- 2007년 경제운용방향
- 내년도 예산 국회 통과
-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 건물기준 시가



2007년 경제운용방향

이 자료는 2007년 1월 4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에서 발표한 「2007년 경제운용방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참여정부 경제운용 성과 및 과제

- ◇ 그간 참여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복핵사태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 ◇ 이와 함께,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기본철학 아래 중장기적 시계에서 분야별 로드맵을 통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
 - * 성장잠재력 확충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국가 연구개발(R&D)사업 등
 - * 경제시스템 선진화·국제화 : 시장개혁,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FTA 추진 등
 - * 사회안전망 강화 및 미래대비 : 비전 2030, 희망한국 21, 국가균형발전 등
- ◇ 다만, 시장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체감경기, 일자리 및 소득분배의 개선은 미진한 상황

1. 4년간의 경제운용 성과

-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통화, 재정 등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
 - * 재정조기집행 비율(%) : (03)53.0→(04)55.0→(05)59.3→(06)53.0
 - * 콜금리 추이(%) : (03말)3.75→(04말)3.25→(05말)3.75→(06.11월) 4.5
 - 신용불량자 대책의 추진 등을 통해 시스템 불안 확산을 차단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복핵사태 등 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 성숙한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구조개혁과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 추진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금융·

물류 경쟁력 강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토대 마련

- 기술혁신, 전문인력 양성 등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 '개방과 경쟁'의 원칙하에 한·미 FTA 등 능동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

■ 경제 양극화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노력 강화

-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하고 비정규직 고용여건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대상·범위 지속 확대,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06. 1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06. 2월) 마련 등

-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농업·농촌대책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

■ 중장기적인 시계하의 정책대응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노력도 강화

-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을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추진
- 국가재정법 제정 등 재정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고,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추진 등 미래를 착실히 준비

2. 경제운용상 미흡했던 점

■ 부동산·금융·외환시장에서의 불안요소 상존

-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

의 시차·시장의 신뢰 부족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아파트가격 상승률(수도권, 전년말대비, %) :

(03)10.1→(04)△2.5→(05)7.2→(06.11)20.2

-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차입자·대출자 측면에서 쏠림 현상(Herd Behavior)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요인 증대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증감, 조원) :

(03)21.3→(04)16.4→(05)20.6→(06.1~11)23.6

-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순매도 및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증대로 기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절상

* 금융기관 단기외화차입(증감, 억달러) :

(03)33→(04)32→(05)55→(06.1/4~3/4)399

■ 또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소득분배 개선도 부진

- 내수 부진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총생산(GDP)과 실질총소득(GNI)간 괴리가 지속되고,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

* 실질 GNI 성장률(%) : (03)1.9→(04)3.9→(05)0.5→(06.1/4~3/4)1.9

- 성장의 고용창출력 저하, IT중심의 산업구조 조정 등으로 일자리 창출도 당초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

* 일자리 창출규모(만명) : (03)△3.0→(04)41.8→(05)29.9→(06.1~11)29.5

-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나, 소득분배 개선이 미진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상존

*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 전국가구) 추이 : (03)7.23→(04)7.35→(05)7.56→(06.3/4)7.79

II. 2007년 대내외 경제여건

1. 대외 경제여건

- (세계 경제) 과거 10년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실한 흐름을 지속하겠으나, '06년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세계경제 성장 전망

(단위: %)

	과거 10년간 평균성장률 ¹⁾	2006년 전망		2007년 전망	
		IMF	OECD ²⁾	IMF	OECD ²⁾
· 세계경제성장률 ³⁾	4.1	5.1	3.2	4.9	2.6
(미 국)	3.1	3.4	3.3	2.6	2.4
(유 로)	2.1	2.4	2.6	2.0	2.2
(일 본)	13	2.7	2.8	2.1	2.0
(중 국)	9.1	10.0	10.6	10.0	10.3

주) 1) IMF추정('06.5), 2) OECD 세계 성장률은 회원국(30개) 기준 3) 구매력 평가(PPP) 환율 기준

- 미국 경제는 '06년보다 다소 위축되어 잠재 수준(3% 내외)을 다소 하회하는 2%대 중반의 성장세 예상
- 일본과 유로는 2% 수준, 중국은 10% 내외로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나타냄으로써 미국경제 둔화 보완 예상

- (국제유가) 원유수요 둔화 등에 따라 하향 안정될 전망이나, 산유국들의 잉여생산능력 부족 등을 감안할 때, 배럴당 50\$대 후반의(Dubai 油)의 고유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기관별 '07년 국제유가 전망(Dubai油, 연평균, \$/b)

	유종	2005년	2006년	2007년
CERA('06.12)	Dubai	49.4	61.2	56.0
EIA('06.12)	WTI	56.5	66.1	65.2
CGES('06.12)	Brent	54.3	65.2	57.7

주) CERA : 美 캠프리지에너지연구소, EIA : 美 에너지정보청, CGES : 런던 세계에너지센터

- (국제금융시장) 미국과 여타 지역(유로 등)간 성장 및 금리 격차 축소시 글로벌 달러화 약세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다만, 인화는 일본의 정책금리 인상이 지연될 경우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

- (세계 IT 경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06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 예상

주요 예측기관 IT경기 전망

(단위: %)

	2005	2006*	2007*
· 반도체(WSTS*, '06.10)	6.8	8.5	8.6
· D램(WSTS, '06.10)	△4.7	23.5	10.0
· 플래시메모리(WSTS, '06.10)	63.9	13.3	16.2
· TV용 LCD(Goldman Sachs, '06.11)	133.6	88.8	53.9
· 휴대폰(Gartner*, '06.11)	21.7	18.0	13.0

주) 반도체·D램·플래시메모리는 매출액 기준, TV용 LCD·휴대폰은 물량 기준
출처 WSTS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Gartner : 정보기술산업 연구조사기관

◇ 2007년 대외 여건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일부 하방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06년에 비해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 i) 미국의 성장 둔화폭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 ii)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차질 요인의 현재화시 국제유가의 급등 가능성, iii) 미국 경상수지 적자 등 글로벌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환율 불안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소지 등

- 다만, 국제유가가 그간의 급등세에서 벗어나 하향 안정될 경우 내수경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 국내 경제여건

- 최근까지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 모멘

팀은 다소 약화

- 2005년 이후 GNI 부진 지속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 미흡,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이 소비 증가세를 제약
 - 다만, 국제유가의 하향안정화시 GNI 증가율이 GDP 성장률에 근접함으로써 하반기 이후 소비회복세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 실질 GNI(%) : (05)0.5→(06.1/4)1.3→(2/4)2.1→(3/4)2.2
 - *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지급이자비율(%) : (03)9.53→(04)8.56→(05)8.34→(06.상반)9.15
- 설비투자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신규수익모델 부재 등 구조적 요인으로 증가세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건설투자는 민간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
- 반면, 수출은 견조한 해외수요 지속에 힘입어 예상보다 호조세를 지속(06.1~11월중 14.8% 증가)
 - * 수출(통관, %) : (06.1/4)10.6→(2/4)16.9→(3/4)16.4→(10)10.7→(11)18.7
- 부동산시장과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일부 위험요인 상존
 - 주택공급 확대가 가시화되는 데까지의 시차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불식되지 않을 가능성
 - 금융·외환시장의 쏠림현상(Herd Behavior)이 지속될 경우 경제여건 변화시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소지
- 북핵 사태, 대통령 선거 등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Ⅲ. 2007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

-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경제정책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참여정부의 부문별 로드맵에 따른 개혁과제의 마무리에 주력
 -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와 서민생활 어려움 완화를 위해 내수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미시적 대응 추진
 - 동반성장,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개혁과제 마무리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가운데, 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에 만전
- 이러한 목표 하에 6개 분야에 걸친 세부과제들을 추진
 - (거시경제 안정) 물가·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유지,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경기보완적으로 거시정책 운용
 -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기업경쟁환경 개선·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원의 지속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 (서민경제 안정) 고용·주거·금융·세제 등 다양한 면에서 서민경제 관련 과제들을 사회투자 관점에서 발굴·추진
 - (경제시스템 선진화) 여건 변화 대응·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 각 분야의 제도를 선진화·투명화하고 혁신기반 구축
 - (대외개방·협력 강화) 대외개방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
 - (미래에의 대비) 중장기적 시계에서 대비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적극 대처하며, 통계인프라를 보완
- 이미 발표된 기업환경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신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2007년 경제운용방향

경제안정 속에 성장동력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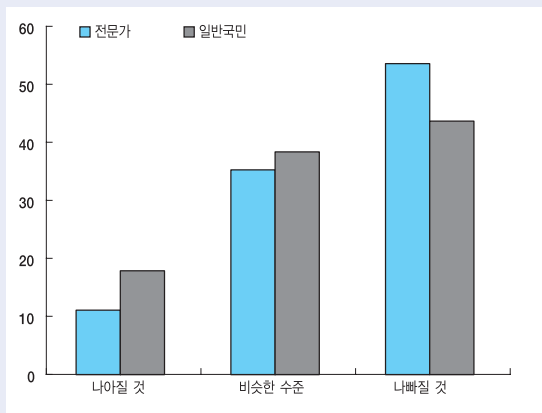
참고 1 2007년 경제운용방향 설문조사 결과

■ 2007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재경부-KDI 공동으로 전문가(334명), 일반국민(1,024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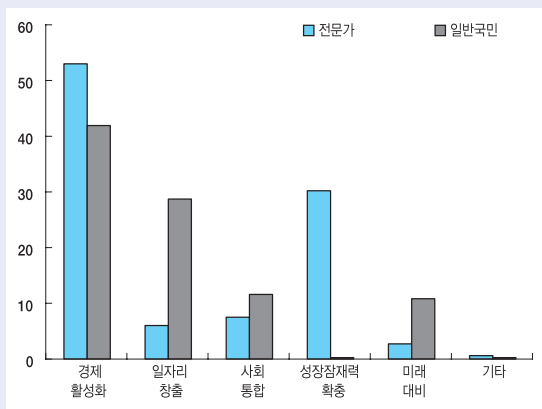
① 2007년 경제전망 및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

- '07년 우리 경제는 금년보다 나빠질 것(전문가 53.6%/일반국민 43.7%)이며, '경제활성화'에 중점(전문가 53.0%/일반국민 41.6%)을 두고 경제를 운용해 줄 것을 주문

〈2007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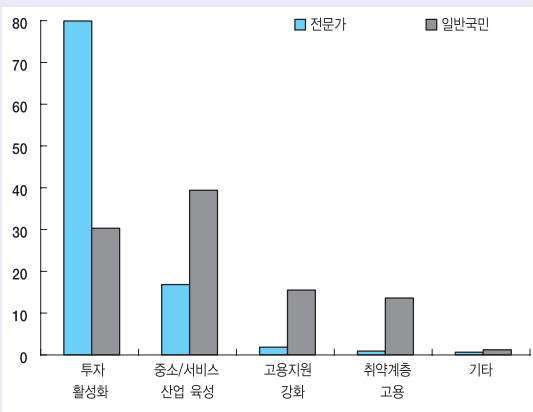


〈2007년 경제운용 최우선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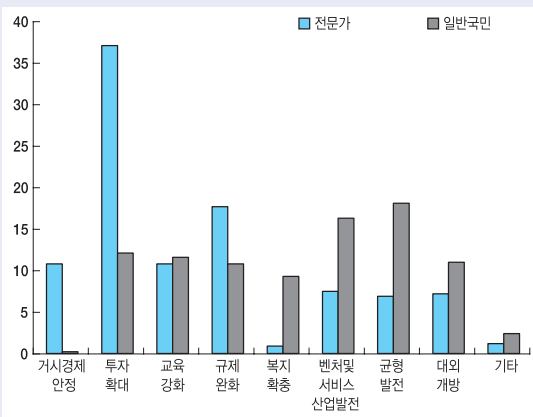


- ② 일자리 창출 및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 경제전문가는 투자확대(79.9%, 37.1%)를 최우선 과제로 응답
 - 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 과제로 중소기업·서비스산업 발전(39.4%)을, 성장잠재력 확충 과제로 균형발전(18.1%)을 제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 2 외국의 경제운용 관련 이슈 및 대응방향

- '06~'07년 경제운영에 있어 글로벌 불균형과 세계 경기둔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 주요 국가들은 ① 경제시스템 혁신, ② 인적 생산성 강화, ③ 사회보장제도 개선, ④ 에너지 효율화 등을 적극 추진중
- 각국의 '06~'07년 중 경제정책의 주안점
 - (미국) 경제자문회의(CEA)「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to the President('06.2))」에서 노동생산성 향상, 사회보장제도(연금, 보건의료) 개혁, 농업 보조금 개선, 에너지 이슈 등을 논의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중장기 발전계획('06~'10년)」을 통해 경제안정과 지속발전, 내수 확대 및 불균형 시정, 효율적 에너지 활용, 개혁·개방의 심화 등을 추진
 - (일본) 내각부의「경제재정운영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06.7월)」에서 성장동력 확충(기술개발, 아시아 경험 증진 등), 생산성 향상(IT, 서비스), 재정건전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강조
 - (EU) EU「경쟁력보고서('06.12월)」에서 에너지 시장개방 및 효율성 제고, 기업규제개선, 자본시장 개혁(벤처 육성), 혁신선도시장 육성 등의 핵심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 경쟁력 현황을 점검
 - (싱가포르)「경제·사회 정책운영 방향(Budget Initiatives, '06. 2월)」에서 경제시스템 개선(지식허브 구축, 인적자원 개발 등), 저소득층 지원강화, 성장의 과실공유*(성장배당, 기회펀드 등)를 추진
 - * 26억달러 규모의 세계잉여금(budget surplus)을 연소득, 재산 등 일정기준에 따라 골고루 배분(progress package)

IV. 주요 정책과제

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

-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공기업 자체 투자의 차질없는 집행 및 신규 수요 발굴에 노력
- 보다 폭넓은 외환수급 조절 등을 통해 환율 안정화에 힘쓰고, 금리는 한은이 물가 및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탄력 운용

◇ 물가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를 정착

-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농수축산물 비축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격안정 도모
-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고, 투기억제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

- 가계대출·토지보상자금 관리 강화 등으로 시중유동성이 과다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감독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 노력에 적극 대응
- 단기외채에 대한 건전성 지도 강화와 함께 차입 유인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 금융관련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상시 점검·관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

1-1. 거시정책의 경기보완적 운용

- (재정) 예상되는 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하

여 재정 조기집행 추진

-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반기중 56%('06.상반기 대비 12조원 수준 증가) 집행을 목표로 추진

* 상반기 집행률(%) : (04)55→(05)59→(06)53→(07목표)56

- 재정관리점검단 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 관리 강화

- (공기업투자) 내년 공기업 자체투자(35.0조원, '06년 대비 18.2% 증가)의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는 한편, 신규투자 수요도 지속 발굴

- 특히, 경기보완효과가 높은 주택 및 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에 대한 수요를 집중 발굴

- (환율) 해외진출 활성화 등 보다 폭넓은 외환수급 조절을 통해 거시경제 상황과 괴리되지 않도록 환율 안정화 노력

- 과도한 금융기관 단기차입 유인의 축소 및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본 유출 축진을 통해 외환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 (후술)

- 필요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시장심리 안정, 시장참가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원화절상 기대심리 완화

- 이와 함께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개선을 위해 다자·양자간의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강화

- (금리) 한국은행에서 물가,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용

1-2. 물가의 안정적 관리

- (물가안정)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뒷받침

- 특히, 공공요금·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

* 한국은행 중기물가안정목표(07~09년간) : 소비자 물가기준 3.0±0.5%

■ (공공요금)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요금조정 시스템의 전문성·중립성 강화

-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원가 절감 노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인규제의 도입 검토
- 공공요금자문위원회 신설, 원가분석 전담인력 확충 등 공공요금 조정시스템 개편 (물가안정예관한법률 개정 등)
-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강화*

* 지방물가대책회의(반기별 1회) 참석·물가담당자워크숍(상반기) 개최

■ (농축수산물) 계약재배·정부 비축사업 등 지속 추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 도모

- 계약재배안정화사업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수급여건 안정 도모

* (06) 고랭지 무·배추 등 4개 품목→(07) 봄 무·배추 등 4개 품목 추가

- 시장개방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정부비축기능을 물류·유통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수급기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

1-3.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정착

■ (공급 확대) 11. 15 방안의「주택공급 로드맵」상 공급물량을 조속히 가시화

- 11. 15 대책시 약속한 추가 택지확보계획을 차

질없이 추진

- 단계적 후분양 로드맵은 1년 순연하여 '08년부터 실시
- 다세대·다가구, 주상복합주택 및 계획관리지역내 민간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

■ (분양가 인하)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 공공택지내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분양가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 (07.1월중)
-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등 다양한 분양방식의 시범실시를 검토 (07년중)

■ (투기억제) 투기억제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

- 종부세 등 보유과세 합리화, 2 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투기억제 시스템 및 실거래가 신고 등 시장투명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완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검토

■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부문 공급애로 해소와 함께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기능을 제고

- 공공부문 주택재고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연기금 투자·부동산 펀드 등 민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 (중장기 주택수급 점검) 향후 주택수요의 패턴, 인구구성 변화 등을 고려, 2011년 이후의 주택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

1-4. 금융·외환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점검·관리

- (시중유동성 관리) 실물경제 활동에 비추어 시중유동성이 과다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 주택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산 유도,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가계대출의 관리 강화
 - 보상기준시점 조정(개발계획 승인→예정지구 지정), 현금·채권외 '토지' 보상근거 신설 등 토지보상자금 관리 강화
 -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유동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지속적인 해외소득 창출기반을 확충
- (감독강화) 금융감독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 우려에 적극 대응
 - 금융기관 여신운용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
 - * 저축은행 PF·주택담보대출(조원) : (05말)9.8→(06.9)13.3(36% 증가)
 - 담보가치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대출자의 실질 채무상환능력을 평가·반영하는 체계로 전환 추진
- (단기외채) 건전성 지도 강화 및 단기외채의 증가유인 축소
 - 외환건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건전성 지도 강화
 - 은행들의 단기차입을 통한 외화대출에 대해 신용보증 출연료(현재 원화대출금에 대해서만 0.4% 부과) 부과 추진
- (점검체계 구축)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

- 주요 지표를 통한 금융·외환부문 리스크의 일일단위 점검 및 속보성·유의성 있는 지표의 지속적 보완
 - * 금융시장 점검지표 T/F 구성·운영(재경부, 금감위, 한은, 국제금융센터 등)
- 관련기관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상황변화에 신속 대응

2.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28)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점검해 나가고 경제5단체와의 협의채널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등 세제 지원 지속
-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관련 입법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공장의 선별적 증설 허용

◇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06.12.14) 과제들의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규 유망업종을 발굴·육성하는 노력을 병행
- 사업전환 지원과 M&A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R&D 확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금융지원 개선 등으로 경쟁력 강화 도모

◇ 부진한 건설투자를 보완

- 규제의 조기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건설을 촉진

- 행복·기업·혁신도시의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BTL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에 노력
- 계획된 공기업무투자를 착실히 집행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 추진

2-1.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

- (기업환경개선대책) 既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 9. 28)의 차질없는 이행 및 추가 과제의 상시적 발굴
- 10대부문, 115개 과제에 대해 분기별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조치 마련

〈 주요 내용 〉

- ① 단기과제(69개) : '개선과제의 본격 시행과 제도 정착'
 - 2차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대한 청약 접수 ('06. 12~'07. 5), 공장설립 대행센터 본격 운영 등 추진
- ② 중기과제(30개) : '입법조치 완료 등 제도 정비'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과 부담금(12종) 감면을 위한 관련 고시 제정 및 법 개정(07.상반)
 - 관리지역내 공장입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공장입지 유도지구' 도입('07. 상반기) 등 제도 정비
- ③ 장기과제(16개) : '방안의 구체화 및 의견 수렴'
 - 관계부처·경제단체 등과의 공동용역 등을 통해 도입방안 및 도입대상을 확정하고 입법안 등을 마련('07말)

-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반기별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개정(07. 6월 1차 개정)
 - 경제5단체와의 상시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월1회 정기적으로 상호의견 교환

- (세제지원) 투자촉진 효과가 높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을 1년간 연장

*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06년 세액감면액은 약 2조 원으로 추정)

- (대기업제도)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06. 11. 15)에 대한 입법작업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07.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추진

구분	내 용
출중제	·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상향조정(6조원 이상→10조원 이상, 적용대상 기업 축소(모든 계열사→자산규모 2조원 이상 계열사) · 출자한도비율 상향조정(25%→40%)
지주회사 제도보완	· 자회사(상장사) 보유지분율 요건 완화(30%→20%) · 증손자회사의 제한적 허용(손자회사가 100%지분 보유 경우 등)
부당내부 거래 규제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 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대상으로 추가 ·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사항에 '일정기간 계열사의 거래 내역'을 추가

- 세법·상법 등 관련 개정법률도 조속히 상정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 기존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 이연

* 상법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 확대 등

- (수도권 공장의 선별적 증설 허용) 기존 수도권 규제정책의 틀 속에서 개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외적·제한적으로 대기업

공장 증설 허용

- '06년 하반기 실사조사 등을 통해 증설이 허용된 사업*에 대한 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 ('07.1/4분기)

*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 장기적으로 행복도시·기업도시 추진 등 지방화 속도와 연계하여 수도권외의 계획적 관리로의 전환 추진

2-2.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既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6.12.14)을 차질없이 추진

〈 주요 내용 〉

① (서비스산업 지원) 제조업과의 차별시정·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세제·금융상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개선

- 제조업과의 전력요금 차별을 단계적으로 개선 (~2010년)하고, 광역자치단체별 서비스산업 육성체제 구축 추진
- 문화접대비 도입·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세제지원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책금융기관의 융자 및 보증지원 확대
-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구조조정, 회계투명화, 의료기관 수익사업 허용 등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동교육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 (유망서비스업 육성) 디지털방송·모바일서비스 등 미래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발굴·육성

- 모바일서비스 : 통신규제정책 개선을 통해 WiBro(휴대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신규 통신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결합판매를 활성화
- 병원경영 지원서비스 :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병원경영 지원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해양레저·스포츠 : 요트·보트 등 대중화를 위한 계류시설 확충 및 해양레저 장비의 개발·보급 확대,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용터미널 확충 및 제도적 기반강화 추진

③ (관광·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부담 완화

- 조세·부담금 등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고비용구조를 해소하고,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확대(18→26개), 중저가 관광숙박 브랜드 체인화('07년중 10개소)
- 영어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수출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수지 개선 및 국제경쟁력 있는 인재육성
 - 제주도 영어전용타운 건설 검토, 영어 말하기·듣기 교육 강화,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 산·학 연계를 통한 유학생 유치프로그램 지원, 정부초청 유학생 유치사업 확대, 교육분야 대외원조 사업 확대·시행

- 광역지자체별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지역업계의 건의사항 수렴
-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신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 실적점검 결과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업종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 (중장기발전방안)「서비스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용역결과(KDI, '06. 12 완료)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 서비스업종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추진(07.1/4분기)

2-3.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강화

- (구조조정) 한계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및 M&A 활성화

- 공적 신용보증 규모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시장에 의한 신용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 * 거액·장기 이용기업 보증지원 축소, 부분보증 비율인하(85→80%) 등
 - 아울러, 여유보증재원은 신생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
- 사업전환지원제도와 워크아웃 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 및 맞춤형 컨설팅 확대
 - 워크아웃(Work-out) 대상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과 사업전환지원센터가 공동으로 협조융자,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실태조사를 통해 법률적·제도적 보완 등 중소·벤처 기업의 M&A 활성화방안 마련

- (혁신형 중소기업) R&D 지원확대 및 기술인력 유입 촉진

-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의 육성을 위해 R&D 지원 확대
 - * R&D지원 예산(중기청) : (06) 2,679억원→(07) 3,600억원
 - 「R&D→사업화*→판로개척**」 등 기술개발 단계별 연계지원 강화로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06) 850억원→(07)

1,000억원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 (06)5.8%→(07) 7%

- 기술·기능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유도
 - 공대생의 중소기업 연수 확대*, 인력지원 적용 대상 업종 추가 등 중소기업 기술·기능인력 촉진방안 마련(07. 상반기)
 - * 중소기업 연수 참여 학교 : (06) 4개 대학→(07) 40개 대학

- (수출중소기업) 환율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새로운 환변동 보험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 지원 확대(06.1~10월 : 614억원 → '07년 계획 : 1,500억원)
- 특례보증 지원기간 연장 및 정책자금 상환유예 혜택 부여
- 수출유망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자금 및 수출전략컨소시엄 구성 지원

-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지속 추진 및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업·협력 인프라 구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을 마련(07.상반기)하여 기술·인력·자금 등 경영전반에 걸친 협력체제 구축
- 중소기업간 협업생산 활성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협업 소요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 (금융·보증지원) 중소기업 관련 금융·보증시스템 선진화

- 부동산 중심의 담보대출 관행 개혁 및 신용대출여건 조성
 - 담보물 범위를 무형자산과 미래현금흐름

지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 도입을 추진

-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기술평가 금융 활성화* 등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기술평가보증 확대('06.11월 33%→'07년 37%→'09년 60%), 정부·기술평가기관·금융기관간 협약체결 확대(기술평가를 통해 신용대출)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신·기보 출연금(대출금의 연 0.4%) 적용을 배제(신·기보법 시행규칙 개정, '07.상반)
-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신·기보법·시행령 개정)
- * 보증연계투자, 업무수수료, 공공기관 정보활용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2-4. 건설투자의 보완

- (규제 개선) 규제의 조기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 건설 촉진

-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조기에 완료('07.1월)

*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일조권과 주차장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오피스텔은 소규모에 한해 바닥난방 허용

-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상향조정 추진(지자체 조례 개정사항)

- (행복·기업·혁신도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계획을 '0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첫마을 대지조성공사 착공('07.7월)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
- 혁신도시별(10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을 마무리하고 '07년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 착공

- 기업도시 시범사업(6개)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태안 등)부터 사업에 착공

- (BTL 사업) 기존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강구

- 既고시된 사업은 협약 체결과 조속한 착공을 통해 실질행 수준을 최대한 확대*하고, '07년 사업은 조기에 고시될 수 있도록 독려

* BTL 집행규모(조원) : ('05)0.13→('06)1.5→('07계획) 3.5

- 운영 개시되는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추진 모델 보완, 신규사업 발굴 등 BTL사업의 제도 개선방안 강구

- (공기업투자) 既계획된 공기업의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발굴

- 수도권 공공택지에 중대형(전용 85㎡) 규모의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도 추진

* '07년부터 구체적인 택지를 대상으로 사업투자계획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심의를 거쳐 투자 결정

3. 서민경제의 안정

◇ 서민들의 고용 및 주거 안정기반을 확충

-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등 지원서비스를 선진화해 나가는 한편, 청년층 취업지원·직업훈련을 내실화
-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기반을 조성하고, 재래시장·소상공인에 대해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 추진

- 중산층 이하 계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비축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에 대한 지원 확대
- ◇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서민들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능력 확충·대안금융 확대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 활성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하여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체계의 개선 유도
 - 근로자·장애인·농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사회투자 확대
 -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준비
 - 장애인 복지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추진
 - 미래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건강·노후생활에 대한 사회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3-1. 고용안정기반의 확충

- (고용지원)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의 선진화
- 집행기관 협의체(지자체 등 유관기관 참여) 운영, 종합민원상담실 확대 등으로 고용·능력

- 개발·평생학습·근로복지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IAP) 확대·내실화 등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담자제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충
- 지역 기업체의 인력수요를 수집·DB화하고 지역대학·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청년층) 취업지원·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청년층 고용사정 개선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 등 다양한 직업진로 지도를 강화하고 학교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을 지원하는 등 청년실업 예방기능 강화
 - 청년층 직업훈련을 지속 실시('07년 6.4만명) 하고,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를 확대('06년 600명 → '07년 3,000명)
 - * Youth Employment Service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청년에게 개별 상담, 직장체험·직업훈련, 고용알선 등 단계별 고용지원서비스를 종합 제공
 - 청년실업대책특위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반기별 1회 개최) 등으로 청년실업대책 사업의 내실화 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교육·의료·보육 등의 분야에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과 지원인원을 대폭 확충
 - * 예산(억원) : ('06)6,778 → ('07)12,945,
 - 지원인원(만명) : ('06)11.2 → ('07)20.1
 -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을 위해 규제 완화·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시장형성을 지원
 - 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 인증제도 도입,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공

모·선정 등 육성 추진

■ (영세자영업자) 재래시장·소상공인 등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 추진

- 시장 상권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등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주차장·진입로 등 상업기반시설 개량 추진, 홍보·마케팅 공동사업 지원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 유도

* 상점가 지원 : '07년 시범사업(3개) 실시 후 '08년부터 지원대상 확대 예정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전국 소상공인 관련 업종·지역별 현황 및 실태파악('07. 상반기)을 통해 정책수요 발굴 및 지원시책 수립에 활용

-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맞춤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사의 전문성 강화 등 센터기능 활성화 지원

* 업종별·기능별 상담제 도입, 운영실적·고객만족도 등 성과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예산배정시 인센티브 부여

3-2. 서민의 주거복지 개선

■ (임대주택)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건설 및 비축 확대

- 06~'12년까지 총 116만 8천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매입 등의 방법으로 신규 비축하여, 전체 주택수의 12% 수준으로 확충 ('05년 68만호 → '12년 184만호, 건설기준)

* 소형 102만호 : 국민임대 72만호, 10년 임대 19,3만호 등

* 중대형 14만호 : 전월세형 임대주택 8,1만호 등

- 저소득층부터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소득계

층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 소득 계층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

-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등 공급확대
- 내집마련 가능계층(소득5~6분위)을 위한 분양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중산층(소득 7분위 이상)을 위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 (전월세) 이사철 전세시장 불안 재발 가능성에 선제적 대처

- 공급물량 조기화, 이주수요 발생시기 조절,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의 방안 강구

■ (주택금융) 서민들의 전세자금·임차보증에 대한 지원 확대

-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06년 2.3조원 → '07년 2.7조원)

- 주택금융공사의 서민들에 대한 임차보증한도 상향조정

*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임차보증금 보증한도 확대 (현행 8천만원 → 1억원)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조정을 통해 보증거부 대상자(1~8등급)중 일부를 보증승인 대상으로 전환

3-3. 서민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 (서민금융 활성화) 既마련('06. 12. 22)한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주요 내용 〉

- ①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을 확대하여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제고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공급 확대,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을 확대
 - ② 규제완화, 신규업무 확대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제고하여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
 -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의 수표발행 허용, 직불카드업무 허용,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추진
 -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감위 감독 강화,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등 서민금융기관의 감독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
 - ③ 대안금융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휴면예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활 지원을 활성화
 - ④ 대부업 감독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사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등 관리·감독체계 개선,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단속 및 홍보 강화 등 추진
-
- 서민금융 이용실태 및 활성화 대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
 - (금리부담 등의 완화) 서민들을 과도한 고금리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신중히 검토

- (신용카드 수수료)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유도
 -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
 -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 *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는 매출액의 1.5~4.5% 수준
 -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3.6%로서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2.37%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담합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경쟁여건 조성
- (세제지원) 근로자·장애인·농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을 추가
 - 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를 면제받은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특소세 추징제도 폐지
 - 수용으로 인한 농지 대도시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대체 농지의 취득허용 기간을 연장(농지 수용시부터 1년 이내→2년 이내)
 -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
 -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감

3-4.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근로 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07년부터 형제·자매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약 3.3만명)하고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약 1만명)하는 등 지원범위 확대
-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복지욕구별 지원 강화를 위해 개별급여체제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검토
 - 자산조사기법 및 시스템의 개선, 수급권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자 관리체계를 혁신

■ (기초노령연금) 고령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08년부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추진
 - 전체 노인의 약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08년 8.9만원수준)을 지급할 계획
- '08.1.1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08.7.1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실시 계획
 - * 지원대상 전망 : ('08.상) 200만명 → ('08.하) 300만명
 - * 소요예산 전망 : ('08) 2.4조원 → ('09) 3.3조원

■ (의료급여제도) 저소득층의 적정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재정소요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

- 수요자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함께 외래·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도입('07. 상반기)
 - * 건강생활유지비 선지급(월 4~6천원) 후 소액 본인

부담금 부과

- 다만, 월 2만원 초과시 본인부담금 50% 보상, 월 5만원 초과시 추가분 전액보조
- 공급자 : 선택병의원제도*('07. 상반기), 약물사용의 적정관리 시스템 도입 등 추진
 - *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등 455일, 기타 545일 초과인 자

■ (장애인) 소득보장을 확대하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도입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월7만→13만, 장애아동 부양수당 : 월7만→20만
 - 소득·장애정도와 무관하게 LPG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인 LPG 보조금 지원제도는 단계적 폐지
 - * (현행)모든 장애인 LPG 차량 →신규진입 중단 ('06.11.1), 1~3급 중증장애인에 한정지원('07~'09) →('10)폐지

-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13,365명 대상)에 대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윈스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 '06.7월 1단계(53개 시군구) 시범실시, '07. 1월 2단계(129개 시군구) 조직개편 진행중, '07. 7월 3단계(50개 시군) 시행예정
 - On-line상에서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간 서비스 연계 추진

- * '07. 7월 주민서비스지원 포털 서비스 개통 예정
- 중앙부처의 주민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분석, 유사·중복서비스의 조정 및 지방이양가능 서비스의 이양방안 마련
- * '07. 5~11월중 서비스 조정방안 마련

3-5. 사회투자의 확대

- (아동투자) 미래 인적자원인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저소득 임산부 및 아동에 대해 건강·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시행
 - * '0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희망스타트지원센터 설치
 - 저소득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해 부모(요보호 아동의 경우 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시행
 - * '07년에는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등 요보호아동 26천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 (건강투자) 인적 자본의 필수요소인 국민 건강 수준을 제고
 - 전국민에 대해 생애전환기(16세, 40세, 66세)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에 대한 사전예방적 투자 강화
 - 질병발견 위주의 검진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평가 등 사전 건강관리체계로 전환 검토
- (노후투자) 고령 인력의 활용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유도
 - 고령친화 모델 지역을 설치·운영하여 노인관련 서비스의 집중화·종합화를 유도

- 보건·복지·생활서비스 통합 제공,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고령친화적 주거·교통·요양 인프라 구축 등 추진

4. 경제시스템의 선진화·투명화

◇ 금융시장의 시스템 선진화를 지속 추진

- 자본시장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겸업화·개방 등에 대응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
- 원·달러 이외의 이종통화시장 개설 검토와 함께, 거래량 확대, 거래관행 선진화 등 외환시장 인프라 강화에 노력

◇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추구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 비정규직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사회보험·실업급여 수혜 확대 등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확충

◇ 재정제도와 조세체계를 선진화

- 국가채무 관리체제를 효율화하고 회계·계약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국유재산 부가가치 증대 노력 강화
- 조세 및 감면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착실한 이행을 준비하며, 세원 투명성과 납세자 편의를 지속 제고

◇ 혁신주도형 경제기반을 조성

- R&D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교육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기반을 구축

- RFID 등 다양한 IT기술 활용을 통해 공공·산업·복지 등 각 분야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

4-1. 금융시장 시스템 선진화

4-1-1. 자본시장 시스템의 선진화

- (자본시장 통합법) 자본시장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의 입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
 -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고시·감독규정)도 기능별로 묶어 단일 법령으로 통합·개편 추진
 - * 하위 법령중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와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를 철폐하고, 현재의 업권별 금융감독체제도 기능별로 전환
- (증권제도) 증권 발행·유통시장 및 거래소의 효율성 제고
 -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추진
 - 사모사채에 대한 출연금 부과, 회사채 발행분담금률 인하 등을 통한 공모 회사채 시장 활성화 추진
 - RP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제한 폐지, Call시장과의 역할분담 등을 통한 RP시장 확대방안 마련
 -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역내·외 거래소간 경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IT인프라를 통합

4-1-2. 겸업화·FTA 등에 대응한 제도적 토대 마련

-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해외진출 허용 등을

통해 활성화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있게 정비*
 - * 소규모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 인가대상에서 제외 등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 추진)
- 국내 금융기관의 외국 금융기관 인수 등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금융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추진

- (보험) 보험제도 개편 및 보험사의 건전성 강화
 - 보험상품 심사절차 개선,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보험법령 개정 추진
 - 보험사에 대한 리스크중심 건전성감독 개선방안* 마련
 - *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 규제제도 도입 추진, 리스크평가제도(RAAS: Risk Assessment & Application System) 도입 등

- (금융감독) 금융국제화·FTA 등에 대응한 금융감독 선진화

- 국경간 금융거래 확대 등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비
- 국내외 금융전문가와의 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부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

4-1-3. 금융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예금보험)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 해소·보험료율 체계 개편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추진
 - 장래 예금보험료 부담에 대한 금융기관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목표기금제* 도입방안도 마련

* 예금보험기금 적립금이 사전에 설정한 적정수준에 도달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금보험료를 걷지 않는 제도

■ (회계기준 및 신용정보 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을 추진하고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 회계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 공공요금 성실납부 등 긍정적 신용정보도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신용정보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하여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신용정보법 국회제출(07.상반) 및 동법 시행령안 마련

4-1-4.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공적자금 상환) 차질없는 상환으로 국민부담 최소화

- 「공적자금상환대책(02)」상 전망한 순채무* 목표 이내로 공적자금 채무가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

* 순채무(전망) : (02말) 97.2조원 → (07말) 86.9조

- 은행주 등 예보·캠코 보유 자산의 매각을 지속 추진

- 부실채권정리기금 재계산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3조원)

■ (공적자금 운용) 전산시스템 구축·자산매각 절차 개선을 통해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활용(예보)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으로 취득한 자산관리 효율화
- 자산매각 프로세스 등을 재점검·개선하여 공적자금 회수·운용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효율

성 제고

4-1-5.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 (제도 개선)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여 금융거래 질서와 금융시스템 투명성 확보

- 현재 추진중인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 테러자금조달행위의 범죄화, 테러혐의거래에 대한 동결명령제도 도입 등

**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국제청에 대한 조세포탈 관련 정보제공 등

-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혐의거래보고 기준 금액 조정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심사분석역량 강화) 혐의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분석 토대 마련

- 현재의 분석시스템을 개선하여 혐의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연계분석이 가능한 '통합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

- 보고금융기관에 대한 교육·감독 및 피드백 관리 강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혐의거래 보고의 품질을 제고

■ (국제협력) FATF* 정식 회원국 가입(09년 목표)을 위한 상호평가 준비 및 관련 부처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 각국과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MOU 체결 확대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적인 국제기구(우리나라는 '06. 8월 옵저버로 가입)

4-1-6. 외환시장 인프라 강화 및 자유화 확대

- (외환시장 선진화) 거래구조를 국제관행에 맞게 개선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
 - 원-달러 이외의 이중통화에 대한 거래시장 개설방안 검토
 - 외환시장의 거래량 확대와 기관간 경쟁 촉진 유도
 - 해외 선진외환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장의 관행을 선진화
- (외환자유화 확대) 외환거래 및 시장 자유화를 지속 추진하되, 건전성 감독도 강화
 - '07년중 비거주자의 원화보유·사용 원활화, 자본거래절차의 단계적 완화 등 추진
 - 모니터링 및 건전성 감독 시스템에 대한 보완 장치를 강화하여 불법·편법 자본유출입 등 외환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

4-2.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 (노사관계 선진화) 변경된 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의무 부과 및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 도입 및 형사처벌 폐지, 경영상 해고절차 완화(사전통지기간 60일→50일) 등
- 관련법* 하위법령 개정('07. 상반기) 및 홍보·교육 추진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및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규정(3년간 시행 유예)에 대한 시행방안 등을 논의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및 신규과제 발굴 추진
 - 임금피크제 등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자발적 시간제근로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
 -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확대('06년 예산 59억원→'07년 79억원)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 경영상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전직지원서비스 확대 및 파견근로 대상업종(현행 26개)의 합리적 조정 등 추진
 - 「노동시장 법·제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고용형태의 다양화·유연화 추세에 부합한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원활한 시행('07. 7월) 및 기존대책의 착실한 집행
 - 관련법* 하위법령 제·개정,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 추진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제정), 파견근로자 보호법(개정), 노동위원회법(개정)
 - 既수립한 비정규직 대책*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합리적인 사용관행을 정착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 8),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06.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06. 10) 등
- (취약계층) 사회보험 및 실업급여 수혜 확대 등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확충
 - 영세사업장 등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등 사회보험 수혜 확대
 - * 사회보험료의 통합 징수와 연계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지급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방안 강구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 확대 시행방안 준비(시행령 개정 등)
 -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08~'10년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시행하되, 부담수준은 50~100%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4-3. 재정 · 조세체계의 선진화

4-3-1. 재정제도의 선진화

- (국가채무 · 국채) 중장기적 시각에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07.3/4분기)
 - * 국가채무의 중장기 전망 · 상환계획, 국가채무의 위험분석 · 대응 등을 포함
 - 최초의 물가연동 국채를 발행하고 해외 IR를 개최하는 등 일반국민 · 외국인 등으로 국채시장의 저변을 확대
- (회계 · 계약제도 등)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 복식부기 ·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08년)을 위해 국가회계법령 제정을 완료하는 한편, 국가자산 · 부채를 기관별로 실사(實査)한 후 외부기관을 통해 점검
 - 정부입찰 · 계약제도를 기술력 · 품질력 중심으로 개편
- (국유재산) 국유재산 부가가치 증대 노력 강화
 -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국유재산관리 계획 수

립 추진

- 민간전문기관(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에 위탁관리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위탁기관 평가 ·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 확대, 임대체계 개선, 개발 사업의 활성화 등 국유지의 활용도 제고 노력 강화

4-3-2. 조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제 정비

- (조세제도) 환경변화에 대응한 세제의 선진화 추진
 - 유한책임회사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의 창업 · 운영이 용이하도록 파트너쉽 과세제도* 마련
 - *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파트너쉽을 도관으로 보아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조세조약 남용 및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 개정 및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협정 추진
 - 저작권 통관보류제도*를 강화하여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반덤핑 제도의 객관성 · 효율성 제고
 - * 저작권 침해물품을 관세 통관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수출 · 입 금지
- (조세감면제도) 조세감면비율 한도 설정 등을 통한 감면제도의 효율성 제고
 - '07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16개)로서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이 달성되어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등을 정비
 - 조세감면비율(감면액/(국세+감면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조세지출 항목의 추계모델을 개발하고, 조세지출예산의 전산화 추진

* 세출예산 심의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통합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세지출금액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2010년 국회부터)

- (근로장려세제(EITC)) 저소득근로자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는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시행 준비

-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근로장려금을 '09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적용기준 및 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일용·임시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과약을 제고 노력
-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제도에 대한 친숙도 제고

- (세원투명성)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등 마련

- 1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탈루혐의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탈루행태 분석을 토대로 업종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특히, 무자료 금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면서 금시장을 정상화·투명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강구

- (세제간소화)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조세정보 공개 확대

- 유사한 조세제도를 통합·간소화하고, 세법상 요구되는 각종 서식 감축, 기재사항 축소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
- 선진국 수준의 국제정보 공개 등을 통해 국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국세청, 재정학회, 조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국제정보공개확대 T/F」를 통해 국제통계연보 개선방안 마련

4-4.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조성

4-4-1.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R&D 투자) 기초연구 중심으로 R&D 투자 확대

- 산업부문에 집중된 R&D 구조를 기초연구·원천기술, 공공·복지기술 개발 중심으로 전환

* 기초연구 R&D 투자비중은 '07년 예산의 25% 수준

- 민간 투자가 활발한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정보·전자분야, 해양심층수 사업 등 실용화 단계사업은 민간투자를 유도

- (R&D 효율성) 사전·사후 평가제도 활성화를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

- R&D 예산 배분시 R&D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대규모 연구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본격 실시

* '06년에 대형망원경 구축 등 8개 시범사업을 통해 운용지침서 마련

- 국제특허가 가능한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특허동향조사 사업 확대

* 특허동향조사 대상과제 : (06) 211개 → (07) 261개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 극대화

-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 지능형 자동차, 차세대융합 현대단말기 등 36개 제품군의 193개 기술
- 사업주체간 기술·정보·정책교류 확대로 상호 성과창출 촉진

4-4-2.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기반 구축

■ (산학협력)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대학 평가시 산업계 인사를 포함시키고 교수 채용·평가체제를 개편하는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ector Council)를 중심으로 공과대학 산업 기여도 평가 실시, 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을 상향조정(30~70%→70~100%) 등

- 대학별 특성에 맞는 공학교육프로그램을 설계·적용할 수 있도록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인증대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공학교육인증제를 확대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일몰기간 연장 및 세액공제 비율 상향조정*을 통해 기업의 산학협력 인센티브 강화
- * 일몰기간 3년 연장(06말→09말), 대기업의 중소기업·대학에 대한 공제비율 40%→50%로 상향조정

■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효율성 제고

- 대학교육 수월성 제고방안 마련(07.상반기)
 - 대학평가 개선, 대학특성화 지표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
 - 부처간 대학재정지원 시스템의 조정·통합을 통해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 대학의 수익용 사업 활성화, 대학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재정 확충

- 제주도에 영어교육센터, 초·중·고·대학, 민간 영어교육 시설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유치하여 수업과 생활을 영어로 하는「(가칭)영어 전용타운」건설 추진 (07.상반기중 구체방안 마련)
- 교원승진 제도 개선* 및 교장 공모제 실시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개방형자율학교를 시범운영(07~)하여 초·중등 교육서비스 질을 제고

* 동료 교사 평가 포함, 평정결과 공개, 경력보다 근무성적의 비중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07. 3월)

■ (해외인적자원) 외국 고급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해외 유학생을 효율적으로 활용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환경 개선 및 아르바이트 허용범위 확대 추진

* 유학생이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행사보조요원 등 원어민 보조교사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르바이트 허용

- 대학과 기업간 연계를 통한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산자부의 Gold Card* 제도와 연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과 기업간 Match-making 제공

* 우수한 해외 고급기술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사증발급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출입국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

- 국가차원에서 해외 유학생·고급인력현황을 파악하여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관리 및 고급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재외공관 등과 협조)

4-5. IT 활용을 통한 투명성·생산성 제고

- (공공부문) 국가사회 전반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확산 추진

- RFID 확산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07.3월)
- RFID 도입촉진을 위한 공통인프라 구축(07.4월~12월)
 -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민생분야(식품, 의약품 등) 대상의 RFID 인프라 구축
 - * 식품, 의약품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제품의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문제발생시 즉각 대처하는 등 제품의 안전성 및 유통 투명성 제고
 - 주류, 귀금속·보석 등 유통분야 대상의 RFID 활용방안 검토
- 공공부문*의 업무효율·투명성을 증진하고 향후 자체적인 모델 확산이 가능한 신규과제
 - ** 발굴·추진 지원
 - * 폐기물관리시스템, 항만물류 효율화 등 SOC분야
 - ** 모바일 RFID, RFID기술 적용 수입쇠고기 추적서비스 등
- (산업부문) 기업의 생산성·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설계·생산·재고·물류 등 기업활동 전 분야에서 IT 활용 확대
 -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우선 IT인프라 활용 준비도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혁신 모델 개발 지원(07.4월)
 - * 인터넷을 통한 설계협업, RFID를 활용한 공급망관리 모델 등
 - 주요 산업별 IT 활용 생산성 혁신 방안 수립(07.3/4분기)
 - * 기업의 디지털역량 강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핵심프로세스 통합 등
- (복지부문) IT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안전망을 보완

- 위치기반서비스(LBS) 등을 활용하여 정신지체 장애인 지킴이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보행안내 서비스 등 제공 검토
-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u-Health 시범서비스 발굴·추진

4-6. 소비자주권의 강화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중장기(06년~'10년)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의 단계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문제의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 * 중장기과제 7개분야 83개 중 '07년에는 신규과제 20개, 계속과제 40개 추진
- 부처·기관별 소비자정책 성과분석 및 종합평가 추진
 - 평가범위 선정 및 성과분석·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7.상반)
-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소비자문제 발생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정보제공·안전·피해구제) 정보제공 확대, 소비자안전 확보 및 기업 자율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활성화
 - 중요정보 고시, 에스크로제 마크 도입,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 중점 안전관리 품목(5개 부문, 37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안전체감지수를 측정, 이를 토대로 소비자위해 감소대책 추진
 -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 도입 유도·확산 (25개사 이상)
- (국제·지방소비자행정) 시장개방과 분권화 진전에 따른 국제소비자 및 지방소비자 문제에 적

극 대응

- 소비자정책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포럼 개최(07.상반)
- 지방소비자 시책관련 기관간 업무협력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권역별 분쟁·조정기능을 효율화

5. 대외 개방 및 협력 강화

◇ 각국과의 FTA 체결을 확대

- 한·미간을 포함한 각종 FTA 협상 진행을 가속화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상의 모멘텀 강화
- 既체결된 FTA의 효과·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외국인투자 유치와 함께 해외투자 활성화방안 마련·추진

-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IR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
- 해외 직·간접투자 등에 대한 규제 정비, 정보제공기능 강화 등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수립·시행

◇ 세계 각국과 경제 및 금융협력을 지속 강화

- 선진국과의 대화채널 상시 가동 등을 통해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
- BRICs 국가와의 상호호혜적 경험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협력사업을 통해 국제금융 공조체제를 구축

◇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

속화하고 남북경협도 내실화

-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법률 정비·제도 개선과 함께 물류 중심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물류 선진화를 적극 추진
- 경협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 마련

5-1. FTA 체결 확대

- (한·미 FTA) '07년 상반기내 양국의 관심사항과 민감도를 충분히 반영한 균형된 협상 타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부 피해 우려 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시기·범위 등을 조정하여 피해를 최소화
-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객관적 영향 분석 및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범정부적 국내 보완대책 마련

- (기타 FTA) 진행중인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중장기 추진대상국에 대해서는 협상을 위한 모멘텀 유지·강화

- ASEAN(서비스·투자협정)·캐나다·인도와 '07년내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멕시코·일본과는 협상재개 여건 조성을 지속 유도
- EU와의 협상개시(07.상반) 및 중국과의 산·관·학 공동 연구 출범(07초) 등에 적극 대비
- 공동연구('06말 종료) 결과를 토대로 MERCOSUR와의 협상개시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러시아·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유망국가와도 필요시 FTA 추진 검토

- (FTA 사후관리) FTA별로 발효 이후의 효과 및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관세 철폐·인하에 따른 수출입 규모 및 구조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서비스·투자 등 여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도 평가

5-2. 외자유치·해외투자의 활성화

■ (외국인투자) 투자유치 체계 및 환경 개선, IR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등 외자유치 노력 강화

- 투자유치 담당자가 투자 인센티브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전심사제* 시행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결정 이전에도 인센티브 지원 관련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 旣추진중인 외국인 경영·생활환경과제(151개)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 (06년) 3개 학교 118억원→(07년) 4개 학교 122.5억원

- 국제금융대사 임명 등으로 IR역량을 강화하고 해외IR·인터넷홍보 등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
- S&P·Moody's 등 국제신용평가사와 실시간·쌍방향 협의를 활성화하여 국가신용등급상향의 모멘텀을 마련

■ (해외투자)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민들의 다양한 투자수요에의 부응 등을 위해 해외투자를 활성화

- 전략적 정보 제공, 투자컨설팅 지원, 해외투자종합 포털사이트 확충 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신고수리요건 완화 등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창투사에 대한 해외투자한도 폐지 등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확대

- 해외직접투자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해외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해외간접투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외 포트폴리오투자를 활성화

5-3. 경제 및 금융협력 강화

■ (대선진국 경험) 대화채널의 상시 가동 및 민간 간 교류채널 활성화를 통한 통상현안 해결 및 경제협력 확대 추진

- 미국, 캐나다, EU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양자간 무역·투자장벽의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
- 英·佛·獨 등 선진국과의 경제협의체의 정례 개최를 통해 통상현안 점검 및 협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 추진
- 韓美재계회의, 韓日경제인회의 등 민간 차원의 교류채널활성화를 지원

■ (BRICs 국가)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 확충과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 BRICs 국가와의 고위급 정례회의 개최
* '07년에 인도(5월 예정)·중국(6월 예정)·러시아(일정 미정) 등과 부총리급 경제공동위 개최 예정
- BRICs 포럼, 「BRICs Information Center」 운영 등을 통해 BRICs 관련정보 축적 및 활용의 체계화 추진
- 수출입은행의 수출·해외투자 금융을 활용하여 플랜트 등 대형프로젝트를 중심으로 BRICs 진출을 적극 지원

■ (ODA 확충) '07~'09년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중

기전략계획 수립 및 내실있는 추진

- 통합 ODA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 및 대국민 책임성 강화
- ODA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발협력의 역량을 강화
- 유상원조(EDCF)를 적극 활용하여 대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 한·ASEAN FTA 등과 연계하여 아시아 지원비중*을 제고하되, 자원부국·신흥시장 등을 중점 지원
 - * 아시아지역 EDCF 지원비중 : ('04~'06년) 약 50%→('07~'09년) 약 70%
 - '07년중 EDCF 주요 지원국가*에 대한「국별 협력전략 계획」(Country Program) 수립 추진
 -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 대한 국별협력전략계획은 既수립
- (다자간 금융협력) ASEM·ASEAN+3 및 IMF 등 국제기구에서의 금융협력사업을 통한 국제 금융 공조체제 구축
 - ASEM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 유라시아 금융협력의 모멘텀을 강화
 - 선진 지역금융협력체 구축(CMI의 다자화) 및 아시아 단일통화 창설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인프라 및 제도 수출을 지원
 - IMF 쿼타 추가 증액,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활성화 등 국제금융기구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
- (경제개발 경험 전수) 개도국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국형 경제개발 지식전수」사업의 지속 추진

- * 대상국 : (05) 인니, 터키 (06) 캄보디아, 알제리 (07 계획) 몽골, 아제르바이잔 등
- * 베트남, 우즈베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중심의 후속사업 추진
- 중장기적으로 한국의「경제개발모델」을 개도국에 제시할 수 있는 지식상품으로 발전 추진
- * 재경부 경제개발경험 전수사업의 실무기관인 KDI 산하에「경제협력센터」를 설치('07. 1월)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 도모

5-4.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노력 강화

- (금융허브) 3단계*「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착실히 추진
 - * 1단계 : 금융허브 기반구축(~'07년), 2단계 : 특화금융허브 완성(~'10년), 3단계 : 아시아 3대 금융허브 구현(~'15년)
-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기반 마련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금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관련 법률·시행령 영문화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개도국 금융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
- 금융전문대학원의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의 금융인력 기초통계 및 수급전망보고서 작성·공표를 정례화(년 1회)
- (물류허브) 인프라 확충, 물류 선진화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기반 구축
 - 공항·항만 등의 인프라를 확충
 -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공항철도를 개통(1단계: '07.3)하고, 공항 2단계사업(08년 완공) 및 인천대교(09년 완공) 적기 건설

- 부산항 신항 3선석 및 광양항 4선석을 추가 개장하고, 항만배후지에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

* 항만자유무역지대 확대(부산·광양), 광양항 공동 물류센터 개장(07. 9)

- 효율적 물류시스템을 위한 물류 선진화 도모
 -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개선하고 제3자 물류 활성화
 - 화물운송시장 공급불균형 해소를 지속 추진하고, 불법다단계 근절 등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항만노무공급 상용화체제를 인천·평택항에 확대하고, 국제물류보안서비스 육성방안 마련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공·항만중심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형성
 - 한·중·일 물류회의 등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및 복합수송방안 마련
 -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동북아 물류수요를 선점하고 해외물류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금융시스템 도입

■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및 프로젝트 개발 등 가속화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에 따라 구역청 규약 마련 및 기본운영 규정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자율성 제고
 - 규제개혁장관회의(06.11월)에서 마련한 개선과제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추가적인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 개선

*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의료 분야 규제 완화, 개발관련 권한위임 확대, 행정절차개선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 원활화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개정) 등

-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프로젝트 개발 본격화

- 선도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통한 개발 사업 성과 가시화
- 외자유치 상황을 점검하고, 실시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구체적 개발방향 수립

5-5. 남북경협의 내실화 기반 구축

※ 6자회담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이와 병행하여 추진

■ (남북경협사업) 남북경협사업의 제도적 기반 확충

- 민간경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육상운송과 해로·공로를 통한 물류운송 활성화 추진
-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 남북간 산업표준의 통합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의 지속
- 남북경협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북투자 관리 강화*

*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인 관리지침」 개정 등

■ (개성공단)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조성

- 종합지원센터 건립, 입주기업 금융지원 시행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 관리위원회 중심의 효율적 공단 운영체계 구축 및 시장경제형 노무관리* 확대, 통행·통관절차 간소화 추진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불 조기실시 추진 등

■ (장기전략)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분야 전략 마련

- 남북 경제의 보완구조를 감안한 경제개발방안을 연구하고 상호 비교우위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발전전략 수립

6. 미래에의 대비 강화

◇ 비전 2030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모색

-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의 사회적 공론화 등 차질없는 추진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의 철저한 대비

- 쉽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국민연금 제도 개혁,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등 공적연금·보험제도를 개편

◇ 지속가능한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 확충

- 선진형 고효율 에너지 이용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최저에너지 사용량 정립 등 에너지 복지 방안 마련
-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을 확대

◇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통계인프라를 개선

- 제2단계 국가균형 발전전략을 마련·추진하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부동산·인적자원 분야 등의 통계인프라를 개선

6-1. 비전 2030을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

- (기본방향) 비전 2030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동반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장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 구축

- 교육·고용·복지 등의 사회투자 강화를 통해 사회전체의 성장잠재력이 발휘되는 지속 성장 추진

■ (핵심과제)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50대 핵심 과제의 사회적 공론화 등 차질없는 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방과 후 학교사업 등 '07년 예산에 반영되고 세부계획이 확정된 주요사업의 본격 추진
-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제도개선 노력 강화
- 연구·토론이 필요한 과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 필요시 비전 2030의 구체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과제도 추가 발굴·추진

■ (사회적 공감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비전 2030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수요자 입장에서 비전 2030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홍보를 연계 추진하여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유도

6-2.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의 대비

■ (출산·양육) 쉽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양육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해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

* 보육료·교육비 지원아동 : (06년) 99만명→(07년) 119만명

* 국공립 보육시설 신규 확충 : (06년) 110개소→(07년) 349개소

- 민간 육아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아동수에 비례한 기

본보조금 시범 도입

-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상한선을 인상하여 보육료를 이원화
- 시범사업(06. 9~'08. 2)을 바탕으로 '08년 본사업 시행 및 기본보조금 미지원 시설에 대한 가격규제 예외인정 추진

-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법제화**(08년 시행)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환경을 조성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06년) 월 40만원→(07년) 월 50만원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법'(가칭) 제정 (07년중)

- 출산여성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복귀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기혼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장려금 지급(07년 예산 70억원)

■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고 기금운용을 개선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추진

* 소득대체율 : (현행) 60%→(08년) 50%

* 연금보험료율 : (현행) 9%→(18년) 12.9%, '09년부터 매년 0.39%p씩 인상

- '08년 새로운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을 위해 '07년부터 작업에 착수

* 국민연금은 5년주기로 연금재정을 다시 계산하고 제도개선을 검토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성과 향상 및 국민경제로의 적절한 환류를 위해 기금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 주식·SOC·PEF·해외투자 등 기금의 투자대상 다변화 및 위탁투자 확대 등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한편, 연금 지배구조의 개

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

- 「장기운용전략기획단」을 운영하여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전략을 수립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

-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

*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 급여지출 50%→전체 보험료 수입의 20%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 '07. 1. 1 시행)

- 포지티브(Positive) 방식, 약가협상제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07. 1월 시행)

- 건강보험 혁신을 위해 민·관 합동의「의료보장 미래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비전 수립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해 시범운영* 실시 등 지불체계를 개편하고, 경증질환의 적정진료를 위해 소액 진료 본인부담률의 조정 추진

* '07년 중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모형 및 수가개발을 위해 2~3개 시범의료기관 지정?운영

- 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보험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 등 규제를 완화

- 요양수가 개발을 통한 장기 요양병상 전환 촉진('07. 7월)

-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 보험 활성화 추진

-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비급여 가격계약 등 비급여 중심의 민간보험의 제도적 인프라를 지원

- 보험시장이 비급여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검토

- 소비자 보호 및 상품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손형 보험 상품의 표준화 추진

■ (고령자) 고용연장·촉진 및 노후생활 기반 마련

-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장려금* 신설, 정년후 다년근로계약** 체결장려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지원

*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07년 법령 개정, '08년 시행)

** 다년 근로계약제도는 기업에게는 매년 근로계약 체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에 기여

-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 활성화,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 고용·근무형태의 다양화·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

* 선택적 근무시간제 활성화, 기간제·파견제근로 사용기간 규제 (2년)에 대한 예외 인정(07. 7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 등

- 모집·채용, 훈련, 승진, 해고 등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추진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

-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역모기지제도를 '07년 도입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을 동시에 보장

* 적용연령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이용대상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

* 대출방식 :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 지급 원칙

- 자산운용산업을 활성화하여 연기금·퇴직연금을 통한 소득안정 도모 및 개인의 투자수단을 확대

- 치매·중풍 노인 등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및 노인수발보험의 시행(08. 7월)을 위한 기반 구축

* 요양시설 확충계획(개소) : (06년) 338→(07년) 311→(08년) 477

- (고용·산재보험)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영의 내실화 추진

- 고용보험사업의 성과평가제도 강화, 보험요율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

- 노사정이 합의(06. 12)한 포괄적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

*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 관리운영 등 산재보험 전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에 합의(06.12 노사정위원회)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통합)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의 운용 효율성 제고

-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하고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의 공통업무인 보험관계 적용** 및 보험료 징수를 통합***

* '07년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위원회」를 구성, '09. 1. 1. 업무 수행

** 보험가입자(사업장) 가입, 변경, 탈퇴 등 관리

*** 4대 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을 통일하고, 4대 보험료 일괄고지·납부

- 국세청 소득자료의 공유로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형평성 제고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의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지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고용·산재 혜택 향상 등 기대

- (외국인력) 장기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도입 기반 확충

-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필요한 외국인력을 원활히 공급

- 단순외국인력 도입제도가 '07.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산업연수제 폐지)되는 만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

- * 산업인력공단외에 기존 산업연수 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추가지정. 대행기관 업무 범위 조정, 지정·취소, 평가, 운영기준 마련(07.3 시행령 개정 추진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 외투기업에 대해 내국인 고용분만큼 외국인 추가고용(50명 한도)을 허용
 -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심의 결과에 따라 '07년 상반기 시행
- 3D업종인 제조업·건설업·농어업 분야의 숙련기능인력 부족문제 해소방안 검토
-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성 방안과 농축산업·어업 분야의 외국인력 수급방안을 마련
-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방문취업(H-2)비자 신설) 시행('07년초)
 -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절차 간소화로 취업기회 확대, 사용자의 고용허가절차 완화로 필요인력 신속 공급

6-3.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 확충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국가에너지위원회의 본격 가동
 - 국가에너지위원회(06. 11월 출범)를 통해 원자력 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장기정책 방향 정립
 -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수립·확정(07 하반기)
- (에너지이용) 선진형 고효율 에너지 이용체제 확립
 -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05~'07)을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7~'11) 수립으로 통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대기전력저감프

- 로그래프 확대·강화 등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 고효율에너지기기 대상품목 확대·보급 촉진 및 고효율에너지기기 개발전략(THE 7 Runners Program) 본격 추진
- (해외자원·신재생에너지)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 자원개발 지속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자원개발펀드 지속 출시, 인력양성 및 R&D 본격 추진등 인프라 확충
 - 신재생에너지의 국산 설비 보급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국가 연구개발제품의 시범보급 추진
 - * 중대형 국산 풍력발전기(강원,제주), 축산분뇨 이용 바이오가스발전소 30kW급(전북) 등
 -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실용화사업단 발족 및 설계 착수

■ (에너지복지) 고효율 난방기기보급 등 에너지 복지 확충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난방기기 보급 사업 추진
 - * '07년중 고효율난방시설 보급사업을 실시('07년 100억원, 향후 5년간 10만호 지원)
- 저소득층이 양질의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천연가스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

6-4. 균형적인 국가발전 도모

-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의 적극 추진
 - 그간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제2단계 국가균형

발전전략 추진

- 교육·의료·보육 등 종업원 정주여건 개선
- 지방 창업 및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인력·토지·재정 등의 측면에서 유인책 마련(07. 상반기)
-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계획 수립(07. 상반기)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07. 12)를 통해 전남 등 남해안권 균형발전 기반 조성

■ (지역 발전) 지역특구 지정·지방 R&D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설명회, 예산연계방안 등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쉽게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 지정된 지역특구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예산 인센티브(포상금)를 부여
- 지역 혁신역량 증대를 위해 지방 R&D 투자를 확대*

* 정부 R&D예산 지방투자(%) : (05)34→(06)36→(07)40

■ (농어촌 지원) 농수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시행

- 영세 소농구조를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경영체제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농식품·농촌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07. 상반기)
- 가공·유통부문 육성 등으로 수산업의 자생력을 조기 확보하고 어촌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과 경영안정기반 확충
- 투융자계획(농업·농촌 119조, 수산업·어촌 12.4조)도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융자 우선순위 조정

6-5. 통계 인프라의 개선

■ (부동산통계) 부동산시장의 수급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체제 개선

- 주택분양승인 및 준공(입주) 통계의 작성을 통해 사업승인 중심의 기존 주택공급통계 보완
- 실거래가 통계의 공개주기 단축 등을 통해 거래상황을 신속히 파악

■ (인적자원통계) 청년층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를 위해 국가인력수급전망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분류체계 통일성을 유지하여 국가인력수급전망의 정합성과 신뢰성 확보
- 인력수급 전문위원회* 및 인력수급전망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운영

* 관계부처(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노동부, 통계청 등) 국장 및 해당분야 전문가(한국고용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장)로 구성

** 노동수급 관련 부문별·총량 전망 연구기관들의 협의체

■ (국민계정 보완) 사회정책의 효과분석 제고를 위해 사회계정*(Social Accounting Matrix) 통계의 도입방안 검토

- '07년중 한은·통계청 등 유관기관과 관련부처들이 T/F를 구성하여 도입 및 활용방안을 공동 연구

* 한 국가의 생산·소비·분배 등과 관련된 거래들을 행렬로 나타내어 각 계정간 수입과 지출관계를 명료하게 보여주므로 소득분배·인적자본 투자 등 사회정책 효과 분석에 용이

V. 2007년 우리 경제의 모습

- (성장) 2006년보다 낮은 연간 4.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며 하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아지는 상저하고의 흐름 예상
 - 민간소비는 고용 등 가계소득 여건의 개선이 미흡하고 가계저축률도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4% 내외로 증가세 둔화 전망
 - 설비투자는 양호한 선행지표 추이 등을 감안할 때, 6%대 중반의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
 - 건설투자는 2006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나 민간 건설수주 부진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에 큰 폭 개선은 어려울 가능성
 - 수출은 2007년에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증가율은 2006년보다 둔화된 10% 내외로 예상
- (고용) 장기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 전망
 -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률도 낮아지는 등 2007년 고용 여건은 2006년보다 좋지 않을 전망이나
 - 재정을 통한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감안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의 취업자 증가 예상
- (소비자 물가) 2%대 후반(2.7% 내외)에서 안정 예상
 - 그간의 내수회복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06년보다 상승률이 높아지겠지만, 3% 이내의 안정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 균형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

- 상품수지 흑자폭은 '06년과 비슷하겠으나, 서비스수지를 중심으로 상품외수지 적자 규모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는 거의 균형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종합 평가) 2007년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요인이 있기는 하나,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06년 실적	'07년 전망
• 경제 성장률	5% 수준	4.5% 내외
• 취업자 증가	30만명 내외	30만명 내외
• 소비자 물가	2.2%	2.7% 내외
• 경상 수지	60억불 수준	10억불 내외

<참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합의 전망(Consensus forecast)

: 평균(Mean) 전망치 4.4%, 중위(Median) 전망치 4.4%

- 국내외 주요 전망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2007년 성장률을 4%대 초·중반으로 예상

IMF (06.9)	OECD (06.11)	World Bank (06.11)	ADB (06.12)	한국은행 (06.12)
4.3	4.4	4.5	4.6	4.4

KDI (06.12)	예산정책처 (06.10)	금융研 (06.10)	삼성研 (06.11)	LG研 (06.12)
4.4	4.3	4.2	4.3	4.2

주) 합의 전망치는 국내외 전망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의 성장 전망치 중에서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의 단순 평균치와 중위치를 사용

내년도 예산 국회 통과

* 이 자료는 2006년 12월 27일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 국회 통과, 1.4조원 순삭감, 국채발행규모 0.7조원 축소」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회는 12.27일(화) 176.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308.3조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음
- 예산안 심사결과 전체 규모는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
 -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1.4조원 순삭감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8조원 순삭감되었음

<주요 조정 내역>

	정부안	순삭감		최종
		삭감	증액	
예산	178.1	△1.4	△2.8	176.8
기금	310.1	△1.8	△1.9	308.3

- 이에 따라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0.7조원 축소

* 일반회계 국채 : ('06예산) 9.3 → ('07정부안) 8.7

→ ('07최종) 8.0조원

-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6.1%(정부안)에서 5.1%로 조정

■ 분야별 주요 감액 내역은,

- ① 담배값 미인상 등에 따라 복지분야 투자 축소 : △1,005억원
 - 응급의료기금 미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재이관
- ②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 등에 따라 국방분야 투자규모축소 : △1,984억원
 - 다만 북핵 사태 등에 대비한 전력투자는 증액(392억원)
- ③ 북핵 사태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확성실 등을 감안 대북 협력사업 지원 축소 : △1,500억원
- ④ 사업집행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축소 : △1,500억원

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3,061억원, 예비비 △3,000억원 축소

■ 주요 세출 증액 내역은,

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 지원 강화
· SOC 투자 1,984억원, 지역전략산업진흥 등 국가균형발전 857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300억원, 중규모용수개발 300억원 등

② 사전 재해예방투자 확대
·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수계치수 사업 100억원, 국가하천정비 5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50억원 등

③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 조기 해소(08년 → '07년) : 665억원

④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연구활성화 90억원, 차세대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30억원

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사업 150억원,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41억원

■ 내년도 예산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예산배정계획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

참고 1 예산안 조정 내역

■ 순계규모 : △1조 3,555억원 감소
· 총 삭감 △2조 7,766억원, 증액 1조 4,211억원

■ 일반회계 △1조 4,696억원 순감(158.0 → 156.5조원), 특별회계 1,141억원 순증

(단위 : 억원)

세입		세출	
■세입증액	2,078	■세출감액	△27,766
[일반회계]	927	· 농림해양수산	△3,900
· 국세수입	-	· 사회복지	△2,122
· 세외수입	927	· 교육(교육교부금 포함)	△2,118
- 기타민간용자회수	381	· 국방	△3,460
- 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7	·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	△1,828
- 토지매각대	257	· 문화 및 관광	△331
- 전년도이월금	126	· 과학기술 및 통신	△598
- 기 타	36	· 기 타	△13,409
[특별회계]	1,141	- 지방교부금	△1,550
· 농어촌특별세(농특)	306	- 국제이자	△1,705
· 전년도이월금	462	· 예비비	△3,000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200	· 남북협력기금 출연	△1,500
· 기 타	173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1,800
■세입감액	△15,633	■세출증액	14,211
[일반회계]	△15,633	· 농림해양수산	3,811
· 국세수입	△8,492	· 사회복지	1,131
· 세외수입	△141	· 교육	409
· 공자기금 예수금	△7,000	· 국방	1,466
[특별회계]		·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	3,832
		· 문화 및 관광	625
		· 과학기술 및 통신	448
		· 산업·중소기업	912
		· 기타	1,578
합 계	△13,555	합 계	△13,555

참고 2 기금안 조정 내역

- 운용규모 : △17,530억원 감소
-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9개 기금에서 △1조 8,661억원 감소
- 응급의료기금 및 농신보기금등 3개 기금에서 1,131억원 증가

(단위 : 억원)

기금	정부안	증감	수정안
· 청소년육성기금	2,064	△2	2,062
· 보훈기금	3,104	△19	3,085
· 공공자금관리기금	835,767	△7,474	828,293
· 과학기술진흥기금	6,057	△100	5,957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2,465	488	12,953
· 남북협력기금	18,364	△1,460	16,904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13,724	△3,610	10,114
· 신문발전기금	264	△50	214
· 국민건강증진기금	23,295	△5,746	17,549
· 응급의료기금	-	613	613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65,656	30	65,686
· 국민주택기금	233,647	△200	233,447
소 계	1,214,407	△17,530	1,196,877
총 계(58개)	3,100,895	△17,530	3,083,365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 계획

* 이 자료는 2006년 12월 29일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에서 발표한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① 할당관세 운용계획

◇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원활한 물자수급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07년도에 30개 품목*에 대하여 기본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운용할 계획임

* '06년에는 89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운용하였으나 철광석, 원목 등 63개 품목은 내년 기본관세율 개편안에 반영(기본관세율이 할당관세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내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대폭 축소

- 주요 대상품목은 기초원자재(원유), 사료용 원료(옥수수 등 8개), 중소기업용품(폴리에틸렌 등 5개), 첨단산업 지원용품(LCD 장비 2개), 품목간 세율불균형 시정물품(정제당 등 4개),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화 필요품목(아몬드 등 10개) 등임
- 이들 품목에는 전년대비 50% 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유당, 귀금속 회), AI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사료용 원료(대두박) 등 6개가 신규로 포함

◇ 이번 조치로 약 4,600억원 정도의 세수지원 효과(6월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② 조정관세 운용계획

◇ '07년도에는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운용되는 조정관세를 16개 품목에 대하여 운용할 계획임

- '06년에는 18개 품목에 조정관세가 적용되었으나 내년에는 대외통상마찰 예방 등을 위한 조정관세 축소 운용방침 등에 따라 2개 품목(바나나·냉동홍어)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냉동민어 등 7개 품목은 세율을 인하

◇ 이번 조치로 약 1,000억원 정도의 세수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③ 적용 기한

- ◇ 할당관세 운용안은 '07년 1월 1일부터 '07년 6월 30일(조정관세 운용안은 07. 12. 31)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

■ '07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

- *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되는 탄력관세

기본운용방향

- ◇ 복지수요 확충 등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에 따라 필요최소한 지원 범위내에서 운용

〈할당관세 적용 품목선정 기준〉

- ① 전년대비 수입가격이 급등하여 수급애로가 있거나 물가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 ② 축산농가, 중소기업, 첨단핵심산업 등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품목
- ③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이 현저하여 시정이 필요한 품목
- ④ 가격안정 품목, 국내생산업체 보호 필요 품목 등은 제외

〈할당관세율 책정 기준〉

- '07년 실행세율의 50% 범위내에서 할당세율 운용

〈할당관세 적용 품목 현황〉

- 총 30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운용

'06년	제외	'07년 운용안 (30개 품목)				적용 기간
		세율인하	세율인상	현행유지	신규	
89	65	1*	0	23	6*	'07.1.1 ~6.30

* 세율인하(1개): 설탕(할당 40→35%)

* 신규(6개): 대두박, 아크릴로니트릴, 천연가스, 귀금속회, 유연처리 원피, 유당

[30개 할당관세 품목 현황]

구분	적용품목 및 세율(%)
기초원자재(2)	납사용 원유(3⇨0) 일반원유(3⇨1)
산업 경쟁력 강화 (16)	농·축산업 지원(8) 겉보리(사료용, 5⇨2) 근채류(사료용 및 버섯재배용, 5/20⇨2) 대두(채유또는 탈지 대두박용, 3⇨1) 유장과변성유장(20⇨4) 매니옥펠리트(7⇨1) 옥수수(사료용)(3⇨0) 브라인슈림프알(8⇨4) 대두박(1.8⇨1)
	중소기업지원(4) 저밀도폴리에틸렌(8⇨4) 고밀도폴리에틸렌(8⇨4) 폴리라탁산(8⇨4) 아크릴로니트릴(8⇨3)
	첨단산업지원(2) 건식식각기(8⇨2.5) 증착기(8⇨2.5)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 (10)	매니옥칩(20⇨10) 맥아(30⇨10) 맥주맥(30⇨20) 밀(제분용)(3⇨1) 옥수수(가공용)(3⇨2) 향료(8⇨5) 아몬드(8⇨5) 귀금속회(2⇨1) LPG(3⇨1.5) 천연가스(3⇨1)
	세율불균형시정·기타(4) 정제당(40⇨35) 동의 박(8⇨4) 유연처리원피(5⇨3) 유당(20⇨10)

* () 내는 '07기본세율 → '07할당세율

* 굵은글씨(밑줄 친 부분) : '07년 할당관세 신규 적용 품목

■ '07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

- *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기본운용방향

◇ 대외통상마찰 예방, 국내 소비자 후생증진 등을 위한 단계적 조정관세 축소 운용방침에 따라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조정관세율을 인하

<조정관세 적용 품목선정 기준>

- ① 조정관세의 단계적 축소방침에 따라 신규품목은 배제
- ② 기존품목(18개)중 양식어민 보호, 관세율 및 내외가격차로 변칙 수입 가능성이 크거나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품목
- ③ 기존 품목중 대외통상마찰 우려가 크거나 국내 산업에 주는 영향이 크지않은 품목은 제외

<조정관세율 책정 기준>

- 현행 조정관세율의 10% 범위내에서 인하
- 다만, 조정관세가 과보호 수준인 경우 추가인하하거나 해외어장 개척 등 원양어업 보호 필요성이 있거나 대외 통상마찰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는 현행유지

<조정관세 적용 품목 현황>

'06년	제외	'07년 운용안 (16개 품목)		적용기간
		세율인하	세율인상	
18	2	7	9	'07.1.1 ~12.31

[16개 조정관세 품목 현황]

구분	적용품목 및 세율(%)		
농산물 (5)	표고버섯(30→45→45 또는 1,625원/kg), 메주(8→18→16 또는 64원/kg) 혼합조미료(8→45→45) 당면(8→45→45 또는 355원/kg) 찐쌀(8→50→50) * 바나나 : 조정관세 제외(조정40→기본 30)		
	수산물 (9)	활돔(10→45→40 또는 2,781원/kg) 활농어(10→40→38) 냉동오징어(10→24→22) 활뱀장어(10→30→30 또는 1,908원/kg), 활민어(10→36→36) 냉동명태(10→30→30) 냉동공치(10→36→34), 냉동민어(10→63→57) 새우젓(20→50→50 또는 363원/kg) * 냉동홍어 : 조정관세 제외(조정 27→기본 10)	
		공산품 (2)	합판(8→12→11) 전자부품장착기(8→16→16)
			합 계 : 16

※ 조정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신규로 추가한 품목은 없음
 ※ ()내는 '07실행세율→'06조정관세→'07조정관세 순서임
 ※ 굵은글씨는 세율인하품목(7개)
 ※ 기존품목(18개) 중 제외품목(2개) : 바나나, 냉동홍어

[참고 1]

할당관세 신·구세율 대비표의 계속

(단위 : %)

할당관세 신·구세율 대비표

(단위 : %)

관세율표번호		품 명	'07년 기본관세	할당관세		
호	소호			'06년	'07년	증감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20	4	4	-
0511	91	브라인 슈림프알(치어 먹이용)	8	4	4	-
0601	10	백 합 인 경	4	4	-	(제외)
0713	10	완 두(사료용)	0	0	-	(제외)
0714	10	매 니 옥 칩(주정용)	20	10	10	-
0714	10	매 니 옥 펠 리 트(사료용)	7	1	1	-
0802	12	아몬드(탈각한 것)	8	5	5	-
1001	90	밀(사 료 용)	0	0	-	(제외)
1001	90	밀(제 분 용)	1.8	1	1	-
1003	00	맥 주 맥	30	20	20	-
1003	00	겉 보 리(사료용)	5	2	2	-
1005	90	옥 수 수(사료용)	3	0	0	-
1005	90	옥 수 수(가공용)	3	2	2	-
1107	10] 맥 아(주정용)	30	10	10	-
1107	20					
1201	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3	1	1	-
1214	10	알 팔 파(사 료 용)	1	1	-	(제외)
1214	90] 근채류(사료용 및 버섯재배용)	20	2	2	-
2308	00					
1514	91	유채조유	8	8	-	(제외)
1514	99	유채정제유	10	10	-	(제외)
1701	91	정제당	40	40	35	-5
1702	11	유 당	20	-	10	(신규)
2302	30	밀기울(사료용)	2	2	-	(제외)
2304	00	대두박(사료용)	1.8	-	1	(신규)
2306	10	면실박(사료용)	2	2	-	(제외)
2306	50	아자박(사료용)	2	2	-	(제외)
2306	60	팜 박(사 료 용)	2	2	-	(제외)
2510	10	천 연 인 산 칼 슨	0	0	-	(제외)
2601	11	철 광 석	0	0	-	(제외)
2602	00	망 간 광	0	0	-	(제외)
2603	00	동 광	0	0	-	(제외)

관세율표번호		품 명	'07년 기본관세	할당관세		
호	소호			'06년	'07년	증감
2607	00	연 광	0	0	-	(제외)
2608	00	아 연 광	0	0	-	(제외)
2701	11	석 탄	0	0	-	(제외)
2704	00	코 크 스	3	3	-	(제외)
2709	00	원 유	3	1	1	-
2709	00	원유(나프타용)	3	0	0	-
2710	11	휘 발 유	5	5	-	(제외)
2710	19	등 유	5	5	-	(제외)
2710	19	경 유	5	5	-	(제외)
2710	19	중 유	5	5	-	(제외)
2710	11	나 프 타	0	0	-	(제외)
2710	11	천연가스액(N.G.L.)	0	0	-	(제외)
2711.	11] 천연가스	3	-	1	
2711	21					
2711	12	LPG(프로판 및 부탄)	3	1.5	1.5	-
2814	10	무 수 암 모 니 아	1	1	-	(제외)
2822	00	산 화 코 발 트	4	4	-	(제외)
2825	90	산 화 텡 스 텐	1	1	-	(제외)
2825외		농 약 원 제	2	2	-	(제외)
2905	31	에 틸 렌 글 리 콜	3	3	-	(제외)
2914	12	메 틸 에 틸 케 톤	3	3	-	(제외)
2922	21	H - 산	3	3	-	(제외)
2924	29	이 오 프 로 마 이 드	0	0	-	(제외)
2924	29	이 오 파 미 돌	0	0	-	(제외)
2924	29	이 오 메 프 롤	0	0	-	(제외)
2926	10	아크릴로니트릴	8	-	3	(신규)
2933	71	6 - 핵 산 락 탐	3	3	-	(제외)
3102	10	요 소	2	2	-	(제외)
3204	11	염료(프레스케익)	4	4	-	(제외)
3204	11	분산성 염료	8	6	-	(제외)
3302	10	방 향 성 물 질 의 혼 합 물	8	5	5	-
3501	10	카 세 인 · 카 세 인 산 염	8	8	-	(제외)
3506	10	이방전도성필름	8	4	-	(제외)
3701	30	블 랭 크 마 스 크	3	3	-	(제외)

할당관세 신·구세율 대비표의 계속

(단위 : %)

관세율표번호		품 명	'07년 기본관세	할당관세		
호	소호			'06년	'07년	증감
3801	10	전 지 용 흑 연	4	4	-	(제외)
3901	10	저밀도폴리에틸렌	8	4	4	-
3901	20	고밀도폴리에틸렌	8	4	4	-
3907	70	폴리(락트산)	8	4	4	-
3920	99	폴 리 이 미 드 필 림	4	4	-	(제외)
3921	19	격 리 막	4	4	-	(제외)
4001	10	천 연 고 무	0	0	-	(제외)
4101	20	원 피	1	1	-	(제외)
4102	10					
4103	10					
4104	11					
4104	19	유 연 처 리 원 피	5	-	3	(신규)
4104	41					
4104	49					
4401	22	목 재 칩	0	0	-	(제외)
4403	10	원 목	0	0	-	(제외)
4408	10	합 판 용 단 판	3	3	-	(제외)
4408	10	무 닐 목	3	3	-	(제외)
5002	00	생 사	3	3	-	(제외)
5101 ~ 5105		양 모	0	0	-	(제외)
5201 ~ 5203		원 면	0	0	-	(제외)
5205		면 사	4	4	-	(제외)
5403	10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2	2	-	(제외)
5504	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2	2	-	(제외)
7002	10] 석 영 유리	3	3	-	(제외)
7020	00					
7002	10	경 질 유리 관	4	4	-	(제외)
7006	00	PDP 전용 유리	4	4	-	(제외)
7006	00	블 랑 크 마 스 크 용 유리	3	3	-	(제외)
7006	00	유 기 EL 전용 유리	4	4	-	(제외)

할당관세 신·구세율 대비표의 계속

(단위 : %)

관세율표번호		품 명	'07년 기본관세	할당관세		
호	소호			'06년	'07년	증감
7112	30	귀 금 속 회	2	-	1	(신규)
7201	10	선 철	0	0	-	(제외)
7203	10	직 접 환 원 철	0	0	-	(제외)
7204	10	고 철	0	0	-	(제외)
7410	21	동의 박	8	4	4	-
7501	20	산 화 니 켈	0	0	-	(제외)
7502	20	니 켈 과	3	1	-	(제외)
7601	10	알 루 미 늬 과	1	1	-	(제외)
7601	20	알 루 미 늬 빌 레 트	3	3	-	(제외)
7602	00	알 루 미 늬 설	0	0	-	(제외)
8108	20	티 타 늬 과	3	3	-	(제외)
8486	30	건 식 식 각 기	8	2.5	2.5	-
8486	30	증 착 기	8	2.5	2.5	-8
486	30	도 포 · 현 상 기	8	2.5	-	(제외)
8529	90	PDP용 데이터전극 구동모듈	8	4	-	(제외)
8542	31	복 합 구 조 칩	0	0	-	(제외)

[참고2]

할당관세 신·구세율 대비표의 계속

(단위 : %)

관세율표번호		품 명	'07년 기본관세	할당관세		
호	소호			'06년	'07년	증감
0301	92	활 뱀 장 어	10	30	30	-
0301	99	활 돔	10	45	40	-5
0301	99	활 농 어	10	40	38	-2
0301	99	활 민 어	10	36	36	-
0303	79	냉 동 명 태	10	30	30	-
0303	79	냉 동 공 치	10	36	34	-2
0303	79	냉 동 홍 어	10	27	-	(제외)
0303	79	냉 동 민 어	10	63	57	-6
0306	23	새 우 젖	20	50	50	-
0307	49	냉 동 오 징 어	10	24	22	-2
0709	59] 표 고 버 섯	30	45	45	-
0712	39					
0803	00	바 나 나	30	40	-	(제외)
1902	19	당 면	8	45	45	-
1904	90	찐 쌀	8	50	50	-
2103	20] 혼 합 조 미 료(고추장)	8	45	45	-2
2103	90					
2103	90	메 주	8	18	16	-2
4412	31] 합 판	8	12	11	-1
4412	32					
4412	39					
4412	99					
8479	89	전 자 부 품 장 착 기	8	16	16	-

건물 기준시가

* 이 자료는 2006년 12월 30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2007.1.1 시행 건물기준시가 고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실지거래 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되는 「2007.1.1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함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건물기준시가 = m²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m²)
- m²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 별잔가율 × 개별특성조정률*

*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세·증여세에만 적용하고 양도세 과세시에는 미적용

■ 고시대상

- 토지·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주택, 상업용건물,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 일반건물

■ 주요내용

- 2007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현행 47만원에서 2만원 상향 조정하여 49만원으로 하였음
 - 건설교통부의 표준건축비 등 건물 신축단가의 상승분을 감안하여 결정

※ 연도별 m²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단위 : 만원)

연도	2001	2002	2003~2005	2006	2007
신축가격기준액	40	42	46	47	49

- 건물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적용지수」는 건물 기준시가 운용의 안정성과 적용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지수만 조정함
 - 최근 고급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장례식장은 지수를 상향조정하고
 - m²당 개별공시지가가 30백만원 이상인 경우의 위치지수를 신설하여 세분화 상향조정하였으며

- 상속·증여세 관련 재산평가시 적용하는 개별특성조정률 중 5층 이하 건물의 지하2층 이상의 지수를 세분화 하향조정함

〈적용지수 조정내역〉

(단위 : 만원)

현 행		조 정	
항 목	지수	항 목	지수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90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00
• 위치지수 세분화(11단계) - 10백만원 이상	130	• 위치지수 세분화(11→12단계)	
		- 10백만원 이상~30백만원 미만	130
		- 30백만원 이상	135
• 개별건물특성조정률 -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층	80	•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세분화	
		-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1층	80
		-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2층 이상	70

- 이번에 고시할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이 활용함
 -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됨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frac{\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속·증여재산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 2007.1.1(월)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하단 기준시가를 클릭하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적용일

- 2007.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 재정통계 |

■ OECD 국가의 GDP,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0%

〈표 1〉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Canada	1.4	3.0	3.2	3.3	4.4	4.4	5.0	4.9	5.3	5.1
Mexico				2.3	1.9	2.3	2.8	3.0	3.2	3.1
United States	3.3	4.3	5.2	5.8	6.4	6.9	6.9	6.9	6.8	6.7
Australia	-	-	-	-	-	-	-	-	-	-
Japan	4.0	4.4	6.1	7.4	8.3	7.7	9.0	9.5	9.9	10.0
Korea			0.1	0.2	0.2	1.0	1.4	3.9	4.9	5.1
New Zealand	-	-	-	-	-	-	-	-	-	-
Austria	8.4	8.6	10.1	12.1	13.0	13.0	14.8	14.6	14.5	14.4
Belgium	9.8	9.8	11.9	11.9	14.0	14.0	14.3	13.9	14.4	14.1
Czech Republic							15.5	15.9	16.4	16.2
Denmark	1.6	1.5	0.5	0.8	1.7	0.9	1.1	1.8	1.2	1.2
Finland	2.1	2.8	7.5	8.4	8.8	11.3	14.1	12.0	11.9	11.9
France	11.8	12.2	14.4	17.2	18.3	18.6	18.4	16.0	16.3	16.1
Germany	8.5	9.8	12.0	12.9	13.6	13.4	14.5	14.5	14.4	14.1
Greece	6.2	6.6	6.3	7.8	10.0	8.7	10.3	11.5	13.0	12.1
Hungary							15.0	11.4	11.6	11.5
Iceland	2.1	2.3	0.8	0.6	0.7	1.0	2.5	3.0	3.3	3.2
Ireland	1.6	2.3	4.0	4.4	5.1	4.9	4.7	4.2	4.2	4.5
Italy	8.7	9.7	11.6	11.3	11.7	12.4	12.6	12.1	12.4	12.5
Luxembourg	8.9	6.7	9.6	10.2	10.3	9.6	9.8	10.0	10.8	10.7
Netherlands	10.1	12.0	15.2	15.9	18.2	15.4	16.9	15.4	13.4	13.8
Norway	3.5	5.5	9.8	9.0	8.9	10.9	9.7	9.0	9.8	9.5
Poland							11.3	9.5	14.5	14.0
Portugal	3.5	4.4	6.8	6.8	6.5	7.5	9.5	10.3	11.1	11.0
Slovak Republic								13.2	12.7	11.9
Spain	4.2	6.0	8.8	11.0	11.2	11.5	11.6	11.9	12.1	12.1
Sweden	4.2	5.7	8.1	13.5	11.9	14.4	13.3	14.7	14.6	14.3
Switzerland	2.6	3.2	5.4	5.9	5.9	6.1	7.5	7.4	7.5	7.1
Turkey	0.6	0.8	1.5	2.5	2.2	3.9	2.7	6.1	6.8	7.5
United Kingdom	4.7	5.2	6.2	5.9	6.7	6.2	6.2	6.3	6.5	6.8
OECD Total ¹⁾	4.7	5.3	6.6	7.2	7.7	7.9	9.0	9.1	9.5	9.4
OECD America ¹⁾	2.4	3.7	4.2	3.8	4.2	4.5	4.9	4.9	5.1	5.0
OECD Pacific ¹⁾	1.3	1.5	1.5	1.9	2.1	2.2	2.6	3.4	3.7	3.8
OECD Europe ¹⁾	5.4	6.1	7.9	8.8	9.4	9.7	10.7	10.6	11.0	10.9
EU 19 ¹⁾	6.3	6.9	8.9	10.0	10.7	10.8	11.9	11.5	11.9	11.7
EU 15 ¹⁾	6.3	6.9	8.9	10.0	10.7	10.8	11.5	11.3	11.4	11.3

주: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2006.

〈표 2〉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Canada	5.6	9.7	10.0	10.5	13.5	12.1	14.0	13.6	15.7	15.2
Mexico				14.1	11.3	13.4	16.6	16.5	16.9	16.5
United States	13.3	16.1	20.5	21.9	25.2	25.1	24.8	23.2	26.5	26.3
Australia	-	-	-	-	-	-	-	-	-	-
Japan	21.8	22.3	29.0	29.1	30.3	26.4	33.5	35.1	38.5	37.7
Korea			0.9	1.1	1.5	5.1	7.0	16.7	19.5	20.7
New Zealand	-	-	-	-	-	-	-	-	-	-
Austria	24.9	25.4	27.6	30.9	31.8	32.9	36.0	34.2	33.7	33.9
Belgium	31.4	28.8	30.2	28.9	31.6	33.2	32.9	31.0	32.2	31.3
Czech Republic							41.3	44.2	43.6	42.3
Denmark	5.4	4.0	1.3	1.8	3.7	2.0	2.2	3.6	2.5	2.4
Finland	6.8	8.9	20.4	23.3	21.9	25.6	30.8	25.2	26.7	26.8
France	34.2	36.3	40.6	42.7	43.3	44.1	42.9	36.0	37.7	37.1
Germany	26.8	30.3	34.0	34.3	36.5	37.5	39.0	39.0	40.5	40.7
Greece	31.6	30.0	29.5	32.9	35.6	30.2	32.4	30.8	35.8	34.7
Hungary							35.6	29.3	30.5	30.1
Iceland	8.1	8.3	2.7	2.2	2.4	3.1	8.1	7.8	8.7	8.3
Ireland	6.5	8.2	13.8	14.3	14.8	14.8	14.4	13.2	14.8	15.0
Italy	34.2	37.8	45.9	38.0	34.7	32.9	31.5	28.6	29.6	30.3
Luxembourg	32.3	28.7	29.4	28.7	26.2	27.0	26.4	25.7	28.2	28.3
Netherlands	30.8	35.1	38.4	38.1	44.3	37.4	41.9	38.9	36.3	36.9
Norway	11.9	16.1	24.8	21.1	20.8	26.3	23.5	20.8	22.9	21.6
Poland							30.4	29.2	41.5	40.9
Portugal	21.9	23.9	34.6	29.5	25.9	27.2	30.1	30.3	31.8	31.8
Slovak Republic								40.0	40.8	39.4
Spain	28.3	37.4	47.5	48.6	41.3	35.4	36.2	34.9	35.3	34.8
Sweden	12.1	14.9	19.5	28.8	25.0	27.2	27.6	27.5	29.1	28.4
Switzerland	14.9	16.0	22.0	23.4	22.7	23.4	27.0	24.3	25.5	24.4
Turkey	5.9	6.3	9.5	14.0	14.3	19.7	12.1	18.7	20.8	23.9
United Kingdom	15.4	13.9	17.5	16.7	17.8	16.9	17.7	17.0	18.3	18.8
OECD Total ¹⁾	17.7	19.1	22.0	22.1	22.2	22.3	24.7	24.5	26.1	25.9
OECD America ¹⁾	9.4	12.9	15.3	15.5	16.6	16.9	18.5	17.8	19.7	19.3
OECD Pacific ¹⁾	7.3	7.4	7.5	7.6	7.9	7.9	10.1	13.0	14.5	14.6
OECD Europe ¹⁾	20.2	21.6	25.7	26.2	26.0	26.2	28.2	27.4	29.0	28.8
EU 19 ¹⁾	22.8	24.2	28.7	29.2	29.0	28.3	30.5	29.4	31.0	30.7
EU 15 ¹⁾	22.8	24.2	28.7	29.2	29.0	28.3	29.5	27.7	28.8	28.7

주 :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2006.

〈표 3〉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Canada	0.5	1.3	1.2	1.2	1.5	1.6	1.8	2.0	2.2	2.1
Mexico										
United States	1.2	1.9	2.2	2.4	2.7	3.0	3.0	3.1	3.0	3.0
Australia	-	-	-	-	-	-	-	-	-	-
Japan	1.3	1.7	2.2	2.6	3.0	3.1	3.7	4.0	4.3	4.3
Korea			0.0	0.0	0.0	0.3	0.4	2.2	3.0	3.0
New Zealand	-	-	-	-	-	-	-	-	-	-
Austria	3.7	3.8	4.2	5.0	5.4	5.5	6.3	6.0	5.9	5.9
Belgium	2.8	3.0	3.5	3.4	4.5	4.3	4.4	4.3	4.5	4.5
Czech Republic							3.7	3.6	3.7	3.7
Denmark	1.1	1.1	0.2	0.5	0.9	0.9	1.1	1.8	1.2	1.1
Finland	0.0	0.2	1.6	1.2	1.5	1.3	2.6	2.2	2.1	2.1
France	2.3	2.3	3.1	4.5	5.0	5.6	5.7	4.0	4.1	4.0
Germany	3.7	4.4	5.2	5.7	5.9	5.8	6.4	6.4	6.3	6.1
Greece	2.5	2.8	2.6	3.4	4.4	4.3	4.2	4.5	5.2	4.9
Hungary							2.4	2.1	2.3	2.4
Iceland	-	-	-	-	0.0	0.1	0.1	0.1	0.1	0.1
Ireland	0.8	1.1	1.6	1.5	1.8	1.7	1.6	1.3	1.3	1.4
Italy			2.3	2.1	2.3	2.4	2.7	2.3	2.3	2.3
Luxembourg	3.3	2.7	3.7	4.0	3.8	3.7	3.9	4.5	4.8	4.7
Netherlands	5.0	5.2	6.5	6.6	8.1	9.5	10.7	7.7	6.4	6.8
Norway	-	-	1.9	2.1	2.4	3.5	3.4	3.1	3.3	3.2
Poland										
Portugal	1.4	1.7	2.6	2.6	2.6	2.7	3.1	3.2	3.2	3.2
Slovak Republic								3.1	2.8	2.8
Spain	1.0	1.2	1.7	2.4	2.0	1.9	1.9	1.9	1.9	1.9
Sweden	0.6	0.8	-	0.0	0.1	0.1	1.6	2.8	2.9	2.8
Switzerland	1.1	1.4	2.4	2.6	2.7	2.8	3.5	3.4	3.5	3.3
Turkey	0.3	0.3	0.5	0.9	0.7	1.5	1.1	2.2	2.4	2.6
United Kingdom	2.1	2.3	2.4	2.3	3.2	2.4	2.6	2.5	2.6	2.8
OECD Total ¹⁾	1.5	1.7	2.1	2.3	2.6	2.7	3.0	3.0	3.0	3.0
OECD America ¹⁾	0.9	1.6	1.7	1.8	2.1	2.3	2.4	2.5	2.6	2.5
OECD Pacific ¹⁾	0.4	0.6	0.6	0.6	0.7	0.8	1.0	1.5	1.8	1.8
OECD Europe ¹⁾	1.8	1.9	2.4	2.7	3.0	3.2	3.5	3.3	3.3	3.3
EU 19 ¹⁾	2.2	2.3	2.7	3.0	3.4	3.5	3.8	3.6	3.5	3.5
EU 15 ¹⁾	2.2	2.3	2.7	3.0	3.4	3.5	3.9	3.7	3.6	3.6

주: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2006.

〈표 4〉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Canada	2.1	4.1	3.7	3.7	4.7	4.4	5.2	5.5	6.4	6.2
Mexico										
United States	5.1	6.9	8.8	9.2	10.5	11.0	10.8	10.4	11.8	11.6
Australia	-	-	-	-	-	-	-	-	-	-
Japan	7.2	8.5	10.8	10.2	10.8	10.7	13.8	14.7	16.6	16.2
Korea			0.0	0.0	0.0	1.4	2.0	9.3	11.7	12.1
New Zealand	-	-	-	-	-	-	-	-	-	-
Austria	11.1	11.3	11.6	12.7	13.2	13.9	15.2	14.0	13.8	13.8
Belgium	8.9	8.9	8.7	8.3	10.2	10.1	10.2	9.7	10.1	9.9
Czech Republic				1.1			9.9	10.0	9.9	9.5
Denmark	3.8	3.0	0.6	3.3	2.0	2.0	2.2	3.6	2.4	2.3
Finland	0.0	0.6	4.2		3.7	2.9	5.8	4.7	4.8	4.8
France	6.6	6.9	8.6	11.1	11.8	13.2	13.4	8.9	9.5	9.3
Germany	11.8	13.6	14.9	15.3	15.8	16.2	17.1	17.2	17.7	17.6
Greece	13.0	13.0	12.4	14.5	15.8	15.1	13.3	12.1	14.2	13.9
Hungary							5.7	5.4	6.1	6.3
Iceland	-	-	-	-	0.2	0.3	0.3	0.2	0.3	0.2
Ireland	3.2	3.8	5.5	4.7	5.2	5.2	4.8	4.1	4.7	4.8
Italy			9.0	6.9	6.8	6.3	6.6	5.4	5.5	5.5
Luxembourg	11.9	11.5	11.3	11.3	9.7	10.4	10.6	11.4	12.5	12.4
Netherlands	15.3	15.3	16.4	15.7	19.8	23.1	26.6	19.4	17.4	18.3
Norway	-	-	4.9	5.0	5.6	8.4	8.2	7.1	7.8	7.3
Poland										
Portugal	8.6	9.0	13.3	11.3	10.1	9.9	9.8	9.3	9.3	9.3
Slovak Republic								9.3	9.1	9.4
Spain	6.5	7.5	9.1	10.8	7.3	5.8	5.8	5.6	5.6	5.4
Sweden	1.9	2.0		0.1	0.1	0.1	3.4	5.3	5.7	5.6
Switzerland	6.4	6.9	9.7	10.4	10.3	10.7	12.6	11.2	12.0	11.4
Turkey	2.6	2.4	3.2	5.1	4.7	7.4	4.7	6.7	7.3	8.4
United Kingdom	7.0	6.1	6.9	6.4	8.4	6.5	7.4	6.8	7.4	7.7
OECD Total ¹⁾	5.8	6.1	7.2	7.1	7.5	7.8	8.3	8.1	8.5	8.5
OECD America ¹⁾	3.6	5.5	6.2	6.4	7.6	7.7	8.0	7.9	9.1	8.9
OECD Pacific ¹⁾	2.4	2.8	2.7	2.6	2.7	3.0	3.9	6.0	7.1	7.1
OECD Europe ¹⁾	6.6	6.8	8.4	8.1	8.5	8.8	9.2	8.5	8.8	8.8
EU 19 ¹⁾	7.8	8.0	9.5	8.9	9.3	9.4	9.9	9.0	9.2	9.2
EU 15 ¹⁾	7.8	8.0	9.5	8.9	9.3	9.4	10.2	9.2	9.4	9.4

주 :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2006.

〈표 5〉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Canada	0.9	1.6	2.0	2.1	2.8	2.7	3.0	2.8	3.0	2.9
Mexico										
United States	1.9	2.3	2.8	3.1	3.5	3.5	3.5	3.5	3.4	3.4
Australia	-	-	-	-	-	-	-	-	-	-
Japan	1.7	2.3	3.2	3.8	4.2	3.7	4.3	4.4	4.5	4.5
Korea			0.1	0.2	0.2	0.7	1.0	1.8	2.0	2.1
New Zealand	-	-	-	-	-	-	-	-	-	-
Austria	3.9	4.0	5.0	6.0	6.5	6.4	7.3	7.0	6.8	6.7
Belgium	6.4	6.1	7.4	7.5	8.2	8.8	8.6	8.4	8.6	8.4
Czech Republic							10.1	10.2	10.5	10.4
Denmark	0.5	0.4	0.3	0.3	0.8	0.0	0.0	0.0	0.0	0.0
Finland	2.1	2.6	5.5	6.7	6.6	9.1	9.9	8.8	9.0	9.0
France	8.7	9.0	10.4	11.4	11.9	11.5	11.3	11.0	11.1	11.0
Germany	4.6	5.2	6.5	6.9	7.0	6.8	7.2	7.1	7.1	6.9
Greece	2.4	2.6	2.6	3.4	4.2	4.3	4.7	5.4	6.0	5.6
Hungary							12.1	9.1	9.2	8.9
Iceland	2.1	2.3	0.8	0.6	0.6	0.9	2.4	2.9	3.2	3.1
Ireland	0.8	1.3	2.4	2.9	3.3	3.0	2.9	2.7	2.7	2.8
Italy			9.3	8.4	8.3	8.9	8.3	8.4	8.7	8.7
Luxembourg	5.1	3.6	5.3	5.6	5.1	4.7	4.5	4.4	4.8	4.8
Netherlands	4.1	5.6	7.0	7.4	7.3	3.1	2.7	4.4	4.3	4.2
Norway	3.0	4.8	7.3	6.5	6.2	6.9	5.7	5.4	5.9	5.7
Poland										
Portugal	2.1	2.7	4.1	4.1	3.8	4.5	6.0	6.7	7.5	7.4
Slovak Republic								9.5	8.6	8.5
Spain	3.2	4.8	7.1	8.5	8.4	8.3	8.0	8.3	8.5	8.5
Sweden	3.1	4.5	7.6	12.9	11.4	13.7	11.4	11.5	11.5	11.3
Switzerland	1.2	1.4	2.4	2.7	2.7	2.7	3.4	3.4	3.4	3.2
Turkey	0.3	0.5	1.0	1.5	1.3	2.2	1.4	2.9	3.1	3.3
United Kingdom	2.3	2.6	3.8	3.6	3.4	3.6	3.4	3.6	3.6	3.7
OECD Total ¹⁾	2.6	3.0	4.2	4.6	4.7	4.8	5.3	5.5	5.6	5.5
OECD America ¹⁾	1.4	2.0	2.4	2.6	3.2	3.1	3.3	3.1	3.2	3.1
OECD Pacific ¹⁾	0.6	0.8	0.8	1.0	1.1	1.1	1.3	1.6	1.6	1.7
OECD Europe ¹⁾	3.1	3.5	5.0	5.6	5.6	5.8	6.3	6.4	6.5	6.5
EU 19 ¹⁾	3.5	3.9	5.6	6.4	6.4	6.4	7.0	7.0	7.1	7.0
EU 15 ¹⁾	3.5	3.9	5.6	6.4	6.4	6.4	6.4	6.5	6.7	6.6

주 :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2006.

〈표 6〉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사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Canada	3.5	5.3	6.1	6.6	8.6	7.6	8.5	7.8	8.8	8.5
Mexico										
United States	7.6	8.5	10.9	11.9	13.7	12.9	12.7	11.6	13.4	13.3
Australia	-	-	-	-	-	-	-	-	-	-
Japan	9.5	11.6	15.1	14.8	15.4	12.7	16.0	16.4	17.5	17.1
Korea			0.8	1.1	1.5	3.7	5.0	7.5	7.9	8.6
New Zealand	-	-	-	-	-	-	-	-	-	-
Austria	11.6	11.7	13.6	15.3	15.9	16.2	17.8	16.4	15.9	15.8
Belgium	20.5	17.9	18.8	18.2	18.6	20.9	19.8	18.7	19.4	18.6
Czech Republic							27.0	28.5	28.0	27.0
Denmark	1.7	1.0	0.7	0.7	1.7	0.0	0.0	0.0	0.1	0.1
Finland	6.8	8.4	15.0	18.7	16.6	20.8	21.6	18.5	20.1	20.3
France	25.3	26.6	29.3	28.4	28.0	27.2	26.4	24.8	25.8	25.3
Germany	14.4	16.1	18.3	18.4	18.9	19.1	19.3	19.2	19.9	19.8
Greece	12.2	11.7	12.3	14.4	14.9	15.1	14.8	14.3	16.5	16.0
Hungary							28.7	23.6	24.1	23.4
Iceland	8.1	8.3	2.7	2.2	2.3	2.9	7.8	7.6	8.4	8.1
Ireland	3.3	4.5	8.2	9.4	9.4	9.0	8.9	8.4	9.2	9.3
Italy			36.8	28.4	24.8	23.6	20.7	19.9	20.7	21.1
Luxembourg	18.6	15.3	16.2	15.8	12.8	13.2	12.2	11.2	12.5	12.6
Netherlands	12.6	16.5	17.6	17.8	17.7	7.5	6.7	11.3	11.6	11.2
Norway	10.2	13.8	18.5	15.3	14.4	16.6	13.8	12.5	13.8	13.0
Poland										
Portugal	13.3	14.7	20.8	17.7	14.9	16.3	18.9	19.6	21.4	21.4
Slovak Republic								28.7	27.7	28.0
Spain	21.7	30.0	38.4	37.8	31.1	25.5	25.0	24.4	24.9	24.4
Sweden	8.9	11.7	18.3	27.6	23.8	26.0	23.7	21.6	22.9	22.5
Switzerland	6.6	7.0	9.8	10.6	10.3	10.5	12.3	11.2	11.6	11.0
Turkey	3.3	3.9	6.3	8.1	8.3	11.0	6.3	9.0	9.5	10.7
United Kingdom	7.6	7.1	10.9	10.1	9.2	9.8	9.6	9.6	10.2	10.4
OECD Total ¹⁾	9.9	10.9	13.8	14.0	13.3	13.1	14.2	14.4	15.1	14.9
OECD America ¹⁾	5.6	6.9	8.5	9.3	11.2	10.2	10.6	9.7	11.1	10.9
OECD Pacific ¹⁾	3.2	3.9	4.0	4.0	4.2	4.1	5.3	6.0	6.3	6.4
OECD Europe ¹⁾	11.5	12.6	16.5	16.6	15.5	15.3	16.2	16.3	17.0	16.8
EU 19 ¹⁾	12.7	13.8	18.4	18.6	17.2	16.7	17.7	17.7	18.4	18.2
EU 15 ¹⁾	12.7	13.8	18.4	18.6	17.2	16.7	16.4	15.9	16.7	16.6

주 :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200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2007 부동산 시장에 거는 기대

기대와 '전망'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게다. 어쩌면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할 때 하는 것이 기대인지도 모르겠다. 지난해에는 연초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을 비롯하거나 하듯 일부 지역의 땅값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전문가들의 전망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전망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또다른 요인들, 예컨대 서울 은평발 고분양가 등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분야는 토지·주택·상가·오피스텔·오피스빌딩·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또 지역적으로는 도시권과 비도시권,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도 강남권과 강북권으로 구분해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호재이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요

인 변수는 각종 도시개발(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영종도 개발, 기타 지역 개발)에 따른 높은 수용 보상가와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재유입, 수도권에서 개발되는 뉴타운 지역 전세 이주자의 전세 수요, 공급 감소에 따른 신규 공급 물량의 감소, 대선과 연계된 부동산 시장의 경기진작 정책과 각종 개발공약 등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요인으로는 지난해의 가격 폭등에 따른 반발 매도세와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론(개인소득 및 총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투자수익률), 담보대출 제한,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이런 요인 등으로 말미암은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심리 등이 있겠다.

'부동산이 아니면 큰돈을 벌 수 없다'는 한국적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험과 환경론적 혹은 생태론적으로 터득된 지혜는 '전국토의 투기장화' '전국민의 투자자화'를 만들어 왔고, 이러한 경험적 행태는 부동산 투자자금

은 투기성 부동산으로 항상 먼저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왔다. '2007 부동산 시장 전망'은 새해에도 나홀로 생존을 모색해 가야 하는 우리 소시민이나 경제인들에게는 가장 급박하고 현실적인 화두임이 틀림 없다.

부동산 가격, 특히 수도권의 주택 가격에는 거품이 있다는 일반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론을 부인할 수는 없다. 토지시장의 과다한 보상비는 구조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정부의 토지수용 정책과 법제에 기인하며, 뉴타운 지역의 고분양가는 뉴타운을 기획하고 분양승인을 허가한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 무주택 서민들과 이른바 상대적 위화감을 갖는 비강남권, 비수도권의 주민들은 거품이 꺼지는 것이 새해의 소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생활전선에서 저축한 자금으로 내집 마련도 하고, 이제는 부동산 때문에 상실감 같은 것을 갖지 않는 상식적인 세상을 살고 싶어하기도 한다.

새해에는 마구간도 없는 초가집에

돼지꿈 안 꾸어도 좋으니 ‘집’ 때문에 더는 낙심하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부동산 뉴스에 채널 돌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며, 이제 집터보다는 일터에 관심을 두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경기가 이제는 선거에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고,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손빠른 투자자와 관련한 일부 보도처럼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으면 하며, 부동산 특히 주택이 공개념적 성격을 갖는다는 정책론자가 정책을 주관할 수 있었으면 하고, 서민주택을 좀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현실로 나타났으면 하며, 그래서 내년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라는 글에 더는 관심 갖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김용희(서울사이버대 교수 · 부동산학파)
(한겨레 2007년 1월 8일자 ‘기고’)

아파트 원가공개正道 아니다

경제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 가격을 통제하거나 방해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증적 사례를 들어가며 배운다.

그 예로 다루는 것이 바로 임대료

통제인데, “임대료가 통제되면 낮은 임대료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지므로 신축 건물이 감소하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역시 세를 놓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주택 소유자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 등으로 집을 구하려고 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위험의 비용까지 추가돼 자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훨씬 높게 된다. 게다가 세를 놓은 사람들도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지 및 보수(補修)에 투자하지 않게 되므로 주택의 질적 저하가 초래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그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결국 그들은 더욱 비좁고 형편없는 주택에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결과는 낳는다”고 모든 경제학 원론에 빠짐없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임대료 통제를 했던 미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근간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실질적인 아파트 분양가격 통제다. 택지 비용을 비롯한 건축원가를 공개하고 거기에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것은 분양가를 원가에 연동시켜 일정하게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수요를 무시한 정책이다.

재화(財貨)의 가격은 원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제품에 동일한 원가를 들였다 하더라도 그 재화의 디자인, 색깔, 분위기, 판매자의 서비스 및 홍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가격은 달라진다. 다른 가격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국 소비자의 결정이다. 비록 원가가 동일한 두 개의 제품일지라도 소비자는 어떤 한 제품의 디자인이나 색깔, 또는 홍보가 마음에 들면 그 제품의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기꺼이 구입한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모든 건설사가 비록 동일한 자재와 동일한 노동력을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실내의 배치나 장식 등 건설사의 아이디어에 가치를 부여하면 얼마든지 아파트 분양가는 달라질 수 있다. 분양원가 공개 규제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획일적인 것으로 건설사의 창의적인 노력을 쇠퇴시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을 후퇴시킬 것이다.

한편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원가절감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법이다.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건설사들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질이 좋은 시멘트, 목재, 철근 등의 원자재를 확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사의 이러한 유인(誘因)을 박탈함으로써 아파트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것이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가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수요가 증가해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건설사들은 상승한 가

격을 보고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다. 신규 아파트가 공급됨에 따라 올랐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떨어진다. 만일 분양가를 공개해 주변 의 동일, 또는 유사한 아파트 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한다면 아파트의 공급이 증가하지 않아 올랐던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유지된다. 벌써 건설사들은 국내의 아파트 건축보다는 해외건설과 규제가 없는 리모델링 사업 쪽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의 정책의도와는 정반대로 아파트 값을 상승시킬 것이며, 경제원론에 나오는 임대료 통제와 동일한 결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어쩌면 한국의 분양원가 공개 정책이 케이스 스터디로 다뤄져 경제원론의 개정판에 수록될지도 모르겠다.

분양원가 공개를 다시 재고(再考)해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일일 것이다.

안재욱(경희대 교수 · 경제학)

〈한국경제 2007년 1월 15일자 '시론'〉

공무원연금 개혁 늦출 일 아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지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

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은 196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안정되게 운영돼 오면서 공무원들의 급여가 민간기업 종사자들에 비해 때 상대적으로 박봉이었음에도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공직에 봉사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의 우려로 먼저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제도가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다뤄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30년 후면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40년 후면 기금이 소진되리라는 통계적 예측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요율은 올리고 급여수준은 낮추자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다.

여기에 비해 때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2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 국고보조로 그 적자를 보전해 오고 있다. 2005년 6,096억원, 지난해 8,450억원에 이른 데 이어, 올해 1조 4779억원, 2011년 3조 3,000억원 이상 등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앞으로 몇 십년

뒤에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우려하여 서둘러 개혁을 추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급여수준이 줄어드는 개혁안이 이미 통과됐다. 하지만 수년 전에 기금이 고갈돼 엄청난 액수의 국민 세금으로 그 적자를 보전해 오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을 미루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상정 일정을 올 상반기에 매듭짓겠다고 하다가 최근 그 시기를 '연내'라고 개혁 추진 일정을 미루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우려된다.

현 정부는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의 조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장래의 재정적인 곤란에 대비하자는 정부의 설득을 받아들여 보험요율은 올리고 급여는 줄이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오래 전에 기금이 고갈됐음에도 급여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엄청난 액수의 국민 세금으로 그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매우 부도덕한 처사다.

올해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므로 공무원 표를 의식하는 후보들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쉽사리 공약으로 내걸기 어려울 것이다. 개혁안을

준비해오던 주무부처의 장관이 태도를 바꿔 추진 일정을 늦추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비친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체제를 겪고 난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실업과 고용불안으로 다수의 국민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소박한 꿈을 실현하기도 매우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자제일 것이다.

(권오용 · 변호사, 기윤실 사회복지지원)
(문화일보 2007년 1월 6일자 '포럼')

‘환율’이라는 경제 신호등

요 며칠 동안 환율이 안정세 또는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혹시 이것이 원화강세 현상의 끝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내 소비자 시장 통계들이 발표되자 혹시 경기호

전의 신호가 아닌가 하여 달러화가 잠시 강세를 보였을 뿐이다.

현재 미국 내 학계나 정부 관계부처 그리고 연방은행 등에서는 달러화가 더 절하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다.

그 이유는 당연하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작년 한 해 동안 9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자그마치 7%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가 큰 위기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 몇 년 안 가 세계경제 전체의 구매력이 커다란 위축이 오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불황이 아닌 대공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환율로 환산한 전세계 구매력의 5%가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장기적인 달러하락 대비

만일 미국 경제가 세계경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이를 대처할 만한 세계경제의 구심점이 아직은 없다는 사실도 보통 일이 아니다. 만일 미국과 같은 개방경제가 아닌 19세기식 중상주의 경제가 중심역할을 담당한다면 세계경제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미국의 경상적자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때 세계 금

용시장에 대한 충격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미국의 국가 채무는 크게 늘어날 것이고 전 세계 금리는 크게 오를 것이며 따라서 주식시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제질서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보질서에 큰 혼란이 오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는 미국 중심의 평화질서가 물론 완전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과거 반세기 넘게 전 세계로 하여금 큰 전쟁 없이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하도록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모든 면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는 물론 주요국 정부들은 환율체계를 서서히라도 재편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오닐 같은 전문가는 향후 10년에 걸쳐 달러화가 8%에서 25%까지 평가절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율조정과 더불어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운용을 균형 쪽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미국은 수출증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며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은 수입 증대에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

또한 각국 정부는 적자재정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특히 GDP의 3%에 달하는 미국의 재정적자는 가급적 이른 기간 안에 줄여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 경제가 속히 회복세를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 EU도

복지중심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 적자 재정도 줄이고 발빠른 성장세로 돌아 서야 한다. 아시아 주요국들의 대응적 인 협력도 필수적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환율 및 무역정책은 자국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경제 전반의 흐름에 보정적(補正的) 요소가 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율 및 무역 정책은 어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앞으로 10년 안에 환율이 달러당 800원 선까지 하락할 지도 모른다는 가정은 세워 두어야 한다. 앞에서 8~25% 하락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니 결코 허황된 가정은 아니라고 본다.

세계화가 최고의 환율전략

이에 대한 대책으로 네 가지를 제안한다. 금융기관이나 기업들 모두가 외화에 대한 장기 헤지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원화를 국제 결제화로 승격시켜 환율 변동을 중화시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에 특단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기술개발, 신상품개발에 사활을 걸고 투자해야 한다.

셋째, 수출산업구조의 선진화도 시급하다. 지식집약적·두뇌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고 고급 서비스를 수출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의 해외거점 확보에도 노력하고 세계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을 과감하게 영입하는 정책

도 펴야 한다.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환율변동을 중화시킬 수 있는 최고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율 불안은 단순히 수출·수입에 관련된 재산성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신호등이라는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유장희(이화여대 명예교수)

〈매일경제 2007년 1월 12일자 '매경의窓'〉

금융위기 대책은 있다

연초부터 부동산가격 급락 가능성과 이로 인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온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꼭 10년째 되는 해인 올해 초에 다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많은 국민의 염려를 자아내고 있다. 과연 경제위기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2002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가격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특히 2006년에는 주택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

함에 따라 정부가 11월에 또다시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최근에는 금융기관들도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앞으로 주택 등 부동산가격 급락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금융기관 부실화가 초래되고 또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일본·북유럽 타산지석 삼아야

참고로 2006년 11월 말 현재 은행권과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말보다 32조 5,000억원 증가하여 2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가계 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2000년 말 93.9%에서 2005년 말 139.6%로 상승하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됐다.

또한 개인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41.2%에서 52.9%로 상승해 가계가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원금 일시상환방식 대출 비중이 70% 수준으로 높고,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부 대출로 되어 있어 원금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며, 금리상승시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강화됐고 연체율도 최근 1%에 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위기관리 시스템도 10년 전 위기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됐기 때문에 단순히 가계부채 증가만으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기우로 보인다.

물론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부동산대출 급증과 거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일본과 북유럽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는 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의 대폭 절상으로 경기 위축이 염려됨에 따라 정부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동성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1986년 이후 주가와 지가가 약 3배씩 상승하는 거품이 형성되었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정부가 각종 규제조치와 함께 대출총량 규제조치를 취하면서 단기간에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2.5%~6%)함으로써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해 부동산 가격 급락, 금융기관 부실채권 급증, 자금증개기능 위축 및 실물경제 침체라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초래됐다.

북유럽 3국도 1980년대 중반 금융자유화 여파로 국외차입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하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세계적인 경

기침체 및 금융긴축기조와 함께 국내적으로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한 규제 및 급격한 금리인상 조치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던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부동산가격 안정이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이와 관련한 기존 정책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가격 연착륙 유도 필요

다만 주택가격 급락과 가계부채 부실화 같은 급격한 경제적 충격이 초래되지 않으면서 부동산가격이 서서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을 상시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 대응 수립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특히 과잉 유동성 흡수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고 DTI 및 LTV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이 과정에서 주택매입 실수오자와 자금능력이 약한 서민들이 급격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운영상 신축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외국 예에서 보듯이 콜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거시적 충격요법은 전체 자산시장과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켜 정책의도와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정책수단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박재해(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매일경제 2007년 1월 17일자 '테마진단')

외환위기 10년, 변한 것과 안 변한 것

2007년이 밝았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 바로 외환위기이다. 혹자는 이를 IMF 위기라고 하지만 IMF가 위기를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의 외환이 바닥나는 위기를 맞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IMF가 무작정 돈을 꿔줄 리 만무했다.

우리에게 극심한 통화 긴축, 재정 긴축과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급증했으며,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국경제 활력 왜 안 살아나나

결국 경제성장이 크게 후퇴하였다. IMF 구제금융과 외국에 팔 수 있는 기업을 팔아 급한 불을 끄고 경제의 틀을 새롭게 짜기 시작했다. 관치금융, 재벌의 족벌경영, 대결적 노사관계, 정부주도 경제운영 등 개발경제 시대의 유물로는 세계화의 경쟁에서 생존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이 기능하는 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구조조정이었다. 그 구조조정의 10년 동안 무엇이 변했고 또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

먼저 금융이 달라졌다. 은행이 대형화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져 보인다. 해외 자본이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주주가 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해외의 경영 기법도 들여와 리스크를 관리하며 안전성 중심의 경영을 추구한다. 여러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하였으며 또 각기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기관들이 통합되었다.

기업들도 달라졌다. 족벌경영을 막기 위해 회사 지배구조를 변화시켰다. 사외이사를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게 하여 소수 주주들의 권익이 보호받게 하였으며, 보다 투명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게 하였다. 회사의 부채비율이 크게 줄었다. 400퍼센트가 넘는 부채비율이 100퍼센트대로 급격히 내려갔다.

회사의 안전성이 그만큼 확보된 셈이다. 과거 규모 확대에 혈안이 되었던 재벌체제의 경영목표와는 달리 이윤 중심의 보수적 경영태도가 정립되었다. 금융이나 기업에 모두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가 도입된 셈이다.

금융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여했던 정부는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낮았던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니 이제 시장이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과거 우리 경제가 지녔던 활력은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 기업은 많은 자금을 움켜쥐고서 투자할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은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에 집중하여 자칫 가계부채 대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한다. 정부의 부채가 커지니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내수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지 않으니 고용이 늘지 않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아질 리 없다.

구조조정 형식적, 무늬만 '글로벌'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이다. 우선 우리의 구조조정이 형식적인 구조조정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사외이사 자리에 기업 총수의 친구를 앉힌 다든지, 금융감독을 독립시켰다면서 속으로는 관료들의 자리 마련에 급급했을 수도 있다. 겉모양은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속 내용은 구태의연한 모습은 유지하고 있지나 않은지?

또 다른 이유는 기업환경일 것이다. 기업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지? 바로 정부개혁의 문제이다. 예상할 수 있는 원칙과 법에 의한 정책이 구사되며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규제들이 폐기되었는지? 무엇보다도 미래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 이룩되고 있는지?

아직 변한 것보다 변하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기업과 금융이 변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변하지 않았다면 구조조정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외환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변해야 할 것을 빨리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영선(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일보 2007년 11월 8일자 아침을 열며〉

재정포럼

2007년 1월호 통권 제127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위원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간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7년 1월 15일 발행 / 제12권 제호(통권 제12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pub@kipf.re.kr
- 주소: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